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2017. 9

이기형 · 이규성

머 리 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제조자, 수입업자, 판매자 등이 공급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제3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인적손해와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보상한다. 동 보험은 2002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크게 활성화되어 2015년 현재 보험료가 1,130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고, 다수의 손해보험회사가 상품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시장이 외형적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상품이나 요율산출 등 보험인수기능 측면에서 보면 PL법 시행 시와 비교하여 진전되지 못한 상태이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으로 제조물책임법에 결함추정조항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신설되어 2018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소비자는 물론이고 제조자 등 책임부담자들도 제조물책임법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향후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리스크폴링기능, 손해배상에 대한 보전기능, 리스크관리 촉진기능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계약 및 사고에 대한 기초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소비자의 제조물책임법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손해보험회사가 2018년에 시행될 제조물책임법과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율자동차시대 도래 등에 대비하여 보험상품 개발과 요율산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보험의 현황분석과 논리전개에 필요한 계약 및 사고 통계자료를 제공해 준 보험개발원과 관계자에게 감사드리며,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7년 9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한 기 정

■ 목차

요약 / 1

I. 서론 / 13

1. 연구 목적 / 13
2. 선행연구 / 16
3. 연구방법 및 구성 / 17

II. PL보험의 운영 및 역할 현황 / 19

1. PL리스크의 특성 / 19
2. PL보험 운영현황 / 22
3. PL보험의 역할 / 37

III. 소비자의 PL법과 보험에 대한 인식 / 55

1. 조사방법 / 55
2. PL법 인식 및 제품구매 행태 / 57
3. 최근 5년간 PL사고 경험 / 62
4. PL보험 인식 / 66
5. PL보험 역할 제고 측면 시사점 / 70

IV. 일본 PL보험 운영현황과 시사점 / 73

1. PL보험시장 규모 / 73
2. 보험상품 운영현황 / 74
3. 보험 가입방식 / 82
4. 보험회사의 서비스 제공 / 88
5. 시사점 / 89

V. PL보험의 역할 제고 방안 / 91

1. 리스크폴링기능 강화 / 91
2. 손해보전기능 강화 / 109

■ 목차

3. 리스크관리 촉진 역할 확대 / 118

4. PL보험의 마케팅 활용 / 123

Ⅵ. 결론 / 125

| 참고문헌 | / 127

| 부 록 |

부록: Ⅰ. 일본의 PL법 최근 동향 / 131

부록: Ⅱ.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 144

■ 표 차례

- 〈표 II -1〉 PL리스크의 Long Tail Risk / 22
- 〈표 II -2〉 PL사고의 손해발생 구분과 내용 / 23
- 〈표 II -3〉 PL 관련 보험종류 / 24
- 〈표 II -4〉 PL보험약관의 종류 / 26
- 〈표 II -5〉 PL보험약관별 사용 비중 / 26
- 〈표 II -6〉 PL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 28
- 〈표 II -7〉 PL보험의 특별약관 종류 / 30
- 〈표 II -8〉 PL보험의 원수보험료 및 성장률 추이 / 31
- 〈표 II -9〉 한국과 미국의 PL보험 시장 비교 / 32
- 〈표 II -10〉 PL보험 손해율 및 사고 특성 / 35
- 〈표 II -11〉 단체계약과 개별계약의 손해율 및 사고심도 비교 / 36
- 〈표 II -12〉 PL보험의 업종별 손해율(2008~2015) / 37
- 〈표 II -13〉 PL담보 보험약관별 계약 건수 추이 / 39
- 〈표 II -14〉 PL보험상품 제공방식의 장·단점 / 40
- 〈표 II -15〉 PL보험의 단체계약 비중 추이 / 42
- 〈표 II -16〉 부보기업의 매출액별 대인배상 한도액별 계약 건수(5년 평균) / 43
- 〈표 II -17〉 부보기업의 매출액별 대물배상 한도액별 계약 건수(5년 평균) / 44
- 〈표 II -18〉 사고발생률 및 지급보험금 추이 / 45
- 〈표 II -19〉 최근 2년간 국내 중소기업의 PL보험 지급률 / 46
- 〈표 II -20〉 PL담보 보험약관별 계약 건수 추이 / 52
- 〈표 II -21〉 미국 PL보험 증권별 구성비 및 손해율(2005~2014) / 53
- 〈표 II -22〉 인증마크 할인율 적용 계약 / 54
- 〈표 III -1〉 설문조사 표본 구성 내역 / 56
- 〈표 III -2〉 PL보험 가입방식의 인식(n = 395) / 67
- 〈표 IV -1〉 일본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추이 / 73
- 〈표 IV -2〉 미쯔이스미토모사의 PL보험료 및 보험금 추이 / 74
- 〈표 IV -3〉 미쯔이스미토모사 기업종합배상책임 상품 / 76
- 〈표 IV -4〉 일본 손해보험회사의 생산물배상책임담보 특약 / 77

■ 표 차례

- 〈표 IV-5〉 일본 PL보험약관 과제 및 개선 추이 / 80
- 〈표 IV-6〉 중소기업 PL보험요율(2017년 6월 현재) / 86
- 〈표 IV-7〉 중소기업 PL보험 시장 추이 / 87
- 〈표 V-1〉 주요국의 PL보험 침투도 및 증감률 비교(2015) / 91
- 〈표 V-2〉 한국과 일본의 PL보험의 특약담보위험 비교 / 92
- 〈표 V-3〉 주요국 리콜보험의 침투도 및 증감률 비교(2015) / 93
- 〈표 V-4〉 국내 리콜 추이 및 세부 내역 / 95
- 〈표 V-5〉 국내 기업의 리콜제도 운영실태 / 96
- 〈표 V-6〉 PL보험의 국문약관과 영문약관 비교(손해사고기준) / 99
- 〈표 V-7〉 주요국 초과배상책임보험의 침투도 및 증감률 비교(2015) / 100
- 〈표 V-8〉 초과보험 및 포괄보험 운영체계 / 101
- 〈표 V-9〉 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 시 PL보험증권 요구현황 / 105
- 〈표 V-10〉 표준하도급계약서의 PL책임 및 PL보험 가입조항 필요 업종 / 107
- 〈표 V-11〉 중소기업의 손해배상액 중 보험금 지급률 현황 / 109
- 〈표 V-12〉 미국 PL보험의 지급보험금 중 방어비용 비율 추이 / 110
- 〈표 V-13〉 1사고당 대인 및 대물 보상한도액별 누적분포 및 손해율 / 111
- 〈표 V-14〉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보험담보 여부별 손해율 격차 / 116
- 〈표 V-15〉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보험담보화 방안 / 117
- 〈표 V-16〉 PL보험 요율체계 운영방안 제시 / 120
- 〈표 V-17〉 5년 평균 계약자 매출액별 계약 건수 및 보험료 / 121
- 〈표 V-18〉 5년 평균 업종별 보험료와 보험금 비중 및 손해율 / 122

■ 그림 차례

- 〈그림 Ⅱ-1〉 PL보험의 시장 집중도 추이 / 34
- 〈그림 Ⅱ-2〉 PL보험의 계약당 평균보험료 및 보험금 추이 / 38
- 〈그림 Ⅱ-3〉 위해제품의 부상률 및 사망자율 추이 / 48
- 〈그림 Ⅱ-4〉 PL보험 가입제품의 가격 상승 용인 의향 / 50
- 〈그림 Ⅲ-1〉 PL법 인지(n = 1,208) 및 인지수준(n = 395) / 57
- 〈그림 Ⅲ-2〉 PL법 인지 경로(n = 395) / 58
- 〈그림 Ⅲ-3〉 제품 구매 시 경고표시의 경험(n = 395) 및 확인 여부(n = 369) / 58
- 〈그림 Ⅲ-4〉 제품 구매 시 안전사용 경고표시의 미확인 이유(n = 147) / 59
- 〈그림 Ⅲ-5〉 PL법 시행 이후 경고표시 대책 강화 여부(n = 395) / 60
- 〈그림 Ⅲ-6〉 제조물의 구매 고려요인 및 안전 유무 영향(n = 1,208) / 61
- 〈그림 Ⅲ-7〉 경고표시 부착제품 구매영향 및 인증마크부착 확인 여부
(n = 1,208) / 62
- 〈그림 Ⅲ-8〉 PL사고 피해경험(n = 1,208) 및 피해유형(n = 162) / 63
- 〈그림 Ⅲ-9〉 피해 제조물 종류 및 심각성(n = 162) / 64
- 〈그림 Ⅲ-10〉 PL사고 피해원인 및 논쟁 유무(n = 162) / 65
- 〈그림 Ⅲ-11〉 PL사고 손해배상 여부(n = 162) 및 배상경로(n = 16) / 65
- 〈그림 Ⅲ-12〉 PL사고 손해배상의 만족도(n = 16) / 66
- 〈그림 Ⅲ-13〉 PL보험 가입 여부 확인(n = 1,208) 및 미확인 이유(n = 1,001) / 68
- 〈그림 Ⅲ-14〉 제조물 구매 시 보험 가입제품 선호도 및 구매의향(n = 1,208) / 69
- 〈그림 Ⅲ-15〉 PL보험금 지급 시 서비스 만족도(n = 16) 및 제3자청구권 인지도
(n = 1,208) / 70
- 〈그림 Ⅳ-1〉 일본 소비생활용품안전법 체계 / 83
- 〈그림 Ⅳ-2〉 중소기업 PL보험의 건당 보험료 및 사고율 추이 / 88
- 〈그림 Ⅴ-1〉 리콜 건수 및 리콜률 추이 / 96
- 〈그림 Ⅴ-2〉 PL보험의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 건수, 보험료, 손해율 추이 / 98
- 〈그림 Ⅴ-3〉 의무보험 도입 찬반 및 효과(n = 1,208) / 102
- 〈그림 Ⅴ-4〉 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한 제품(n = 1,208) / 103
- 〈그림 Ⅴ-5〉 중소기업의 업종별 하도급 거래 시 PL보험증권 요구현황 / 106

■ 그림 차례

- 〈그림 V-6〉 연도별 단체계약 건수 및 보험료 비중 / 108
- 〈그림 V-7〉 PL사고 피해액 대비 보험금 수준 / 112
- 〈그림 V-8〉 PL보험 가입제품의 가격 상승 용인 의향 / 113
- 〈그림 V-9〉 징벌적 손해배상금 도입 필요성과 이유 / 114
- 〈그림 V-10〉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배상주체 / 115
- 〈그림 V-11〉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 의향 / 124

A Study on Function Activation of Product Liability Insurance

PL insurance covers liability for personal injury and property damage caused by a defect in the product supplied by the manufacturer, importer, seller, etc.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PL Act in 2002, the insurance has become very active and the premium has grown to KRW113 billion in 2015, and many non-life insurers provide products competitively. However, despite the external growth of the insurance market, the underwriting functions such as insurance products and rate calculation still have not progressed compared to the PL law.

Recently, the presumption of defects and liability for punitive damages have been newly established in the PL Law due to the accident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and it will be implemented from April 2018. As a result, consumers, as well as manufacturers, are expected to increase their interest in the future role of product liability insurance and product liability insurance. This study analyzed basic statistical data about contracts and accidents provided by the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and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consumers' perception on product liability law and product liability insurance. Based on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m,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role of PL insurance.

First, for the risk pooling function of product liability insurance, we extend the risk such as recall cost security and propose the same insurance product operation. Second, the limit of liability amount is adequate to actual liability loss so that paid amounts can be used as actual damages in the event of a product accident. Finally, the insurer are to be use the experience rating plan or the schedule rating plan at the currently operating class rate to promote customers' risk manag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insights on the development of insurance products and the calculation of the rate in preparation for the coming of the era of autonomous vehicles and PL Act to be implemented in 2018.

요 약

I. 서론

- 생산물배상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 이하 'PL보험')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제조물책임법(이하 'PL법')상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이하 'PL')을 부담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임
 - PL보험은 PL법 시행 후 보험료가 1,000억 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하였음
 - PL보험 운영의 근간이 되는 PL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으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7년에 입증책임의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본 연구는 PL법 시행 이후 큰 시장으로 성장한 PL보험의 시장 상황과 역할을 평가하여 향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국내 시장과 유사한 일본 PL보험시장을 조사하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PL법과 PL보험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아울러 PL보험시장의 리스크폴링기능, 손해보전기능, 리스크관리 촉진 역할을 경험통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II. PL보험의 운영 및 역할 현황

1. PL보험 운영현황

- PL법 시행 전에는 손보사가 재산종합보험(기본담보), 영업배상책임보험·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특약담보)으로 PL보험을 판매해왔지만, PL법 시행

후에는 단독상품(Stand alone policy)형태인 PL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PL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 등과 다르게 담보기준(Coverage trigger)을 손해 사고기준(Occurrence basis trigger)과 배상청구기준(Claims made basis trigger)을 두어 담보제한을 하고 있음

– 배상청구기준은 주로 북미 등 국가에 대한 수출품에 적용하고 있음

○ 현재는 손해보험회사들이 단독형 PL보험과 패키지보험으로 PL담보를 주로 제공하고 있음

■ PL보험의 보험료는 PL법 시행 전인 2001년의 경우 손보 전체의 0.2%, 일반손해보험의 0.6%, 배상책임보험의 5.1%에 불과하였지만, PL법 시행 이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 손보 전체의 0.4%, 일반손해보험의 1.6%, 배상책임보험의 16.5%를 차지하고 있음

○ 보험료 규모는 미국과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수요 정도를 의미하는 침투도나 밀도는 미국과 큰 차이가 있음

○ 미국 이외 국가의 PL시장과 비교하는 경우 침투도가 훨씬 낮아 수요가 증가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는 국가별 법률환경이 다른 측면이 있어 직접 비교는 곤란함

■ PL보험시장의 집중도는 PL법 시행 이전에 비해 중소형 및 외국사의 참여로 완화되고, 경쟁도도 크게 증가하였음

○ 2015년 현재 CR1 29.0%, 허핀달 지수 2,035로 2002년 51.3%, 3,122에 비해 큰 변화가 있음

■ PL보험의 경과손해율은 50% 이내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손해율 추세는 PL보험에서 대규모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단체보험 등을 통한 인수여건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수도 있고 기업들의 PL리스크관리가 상당히 진전된 결과일 수도 있음

- 업종별 최근 7년간(2008~2015) 누적 경과손해율은 음식물류 31.8%, 생산물류 49.2%, 완성작업위험 61.8%로 나타났다. 생산물류의 손해율은 조립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품이 92.2%로 가장 높고, 기타제조업 71.0%, 나무목재업이 48.4%로 높은 상황임

2. PL보험의 역할

- (리스크폴링) 시행 초기에 비해 계약 건수의 증가(폴링)로 인해 낮은 보험료로 높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리스크폴링 효과가 발생함
 - 건당 보험료는 PL법 시행 초기 4백만 원까지 상승하였다가 2015년 3백만 원 이하로 낮아졌으며, 건당 보험금은 초기 2백만 원에서 점차 증가해 2015년 8.5백만 원으로 상승함
- (손해배상의 보전기능) 계약자가 잠재리스크를 모두 전가하는 경우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낮은 보상한도액으로 전가를 하고 있어 실제 사고 시 손해배상보전을 충분하게 다하지 못할 상태인 것으로 추정됨
 - PL보험 가입 기업들의 4년 평균 1사고당 대인 및 대물 보상한도액은 대부분 10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기업규모에 무관하게 낮은 보상한도액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PL보험은 최근 들어 보험금 지급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PL보험금은 2002년에 7.8억 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36.7% 증가하여 2015년 현재 457억 원을 지급함
 - 그러나 PL보험은 PL사고의 손해배상액을 100% 보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경우 2015~2016년 동안 PL사고 손해배상액을 PL보험금으로 지급한 비율은 업종 전체의 79.1%이며 PL리스크 부담이 큰 제조업은 74.7%에 불과함

- (리스크관리 촉진기능) 기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금액(S)이 높아질수록 사고발생률 $Pr(s)$ 및 손해배상비용(L)은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약관(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 보상조건)과 보험요율체계를 통해 계약자의 리스크관리를 촉진하게 됨
 - PL법 시행 이후 위해제품의 사고접수건 중 부상자, 사망자 발생비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져 기업의 안전투자 등 리스크관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PL보험의 요율체계는 성과요율체계(Bonus/Malus rating plan)가 없이 안전마크인증 할인요율제도만 운영하고 있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임

Ⅲ. 소비자의 PL법과 보험에 대한 인식

1. 조사방법

- 소비자들의 PL법과 보험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 1,208명을 대상으로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의 표본은 성, 연령, 지역에 따른 표본층화 추출하였음
 - 설문문항은 PL법에 대한 인식 11개 문항, 소비자의 제조물 소비행태 8개 문항, 제조물사고 피해 및 피해배상경험 10개 문항, PL보험 인지 및 선호도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2. 조사결과

- 응답자의 67.3%는 PL법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32.7%(395명)만 PL법 시행 여부를 인지하고 있지만, 그중 세부적인 내용까지 아는 사람은 27.7%에 불과하였음

- PL법 시행을 인지한 소비자 중 52.2%는 PL시행 이후 경고표시 부착 등 사고 예방이 강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안전인증 마크 부착표시는 응답자의 53.8%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 PL법 시행 이후 최근 5년 동안 소비자 또는 소비자 가족의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n = 1,208)의 13.4%가 PL사고 피해를 경험함
 - PL피해를 경험한 소비자가 생각하는 사고원인은 제조사의 결함이라고 61.2%가 응답했으며, 피해자 162명 중 9.6%만 손해배상을 받았으며, 90.4%는 배상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손해배상을 받은 피해자(16명) 중 52.6%는 손해배상 만족도에 대해 '만족하였다'라고 응답, 33.4%는 기대한 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였지만, 14.0%의 피해보상자는 손해배상에 대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 PL법 시행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 중 26.0%만 PL보험이 임의보험임을 인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르거나(29.6%)나 의무보험으로 인식(44.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7.2%의 소비자만 제조물 구매 시에 PL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82.8%의 소비자는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61.4%의 소비자는 제조물 구매 시 PL보험 가입 제조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4.4%는 가입 여부에 관심이 없으며, 4.2%만이 보험 가입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서비스는 '불만족하였다'(34.1%)가 '만족하였다'(33.1%)보다 1.0%p 높게 나타남

3. PL보험 역량 제고 측면 시사점

- 보험회사는 다수의 소비자가 PL법 시행과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므로 보험교육 프로그램에 PL법과 PL보험을 추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안전마크인증 할인요율제도 외에도 기업의 전반적인 PL리스크관리와 연계할 수 있는 경험요율과 예정요율제도 도입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 PL보험은 제3자청구권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 소비자가 실시할 의향이 매우 높으므로 보험금 지급 관련 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PL보험의 제3자는 현재나 미래의 잠재 보험소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자사의 홍보 전략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IV. 일본 PL보험 운영현황과 시사점

1. PL보험 운영현황

- 일본의 2015년 원수 손해보험료는 9조 635억 엔으로 매년 0.68% 성장하고 있으며 이 중 배상책임보험이 5.9%를 점유하고 있음
 - 미쓰이시미토모사의 PL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손보 전체 PL보험료를 추정하여 본 결과, 2015년 기준으로 1,218억 엔 정도일 것으로 추정됨
-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1995년 PL법 시행 이후 독립적인 PL보험을 개발하지 않

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PL담보 특약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 또한 PL담보를 포함한 기업의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미쯔이스미토모사의 비즈니스프로바이더 기업종합배상책임이 이에 해당됨

■ 보험료의 결정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제품, 판매지역, 매출액 규모, 사고이력, 고객의 리스크 대응 구조 등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음

- 주리히 손해보험사의 경우 제조회사의 안내, 제품 카탈로그, 종업원 수 및 임금총액, 업무내용(직업분류), 제조물의 종류와 제품별 매출액, 과거 5년간 사고이력 등을 제출받아 보험료를 산정함
- 미쯔이스미토모사는 해외수출보험에서 계약자가 리스크 실태를 충실하게 고지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예정요율(Schedule rating plan)을 운영하고 있음

■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보험 가입은 임의가입방식이지만, 소비생활용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일부 위해가능성이 높은 소비용품에 한정하여 제조자 및 수입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이행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음

- 피해자 1인당 1,000만 엔 이상, 연간 3,000만 엔 이상의 한도를 담보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PSCS 마크제도라고 함

■ 3단체(일본상공회의소, 전국 상공업연합회, 전국 중소기업단체중앙회)에 소속된 중소기업(판매업, 음식점, 공사업, 하청업도 포함)은 단체계약으로 중소기업 PL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 PL보험 계약의 최저보험료는 1,000엔을 적용하며 리콜보험 특약을 부대한 경우에는 동 특약단독의 최저보험료로 3만 엔을 적용함
- 중소기업 PL보험은 보상한도액을 정형화하여 제공하고 있음
 - PL담보는 보상한도액(1사고당, 보험기간 중, 대인 및 대물 합산)을 5,000만

엔(S형), 1억 엔(A형), 2억 엔(B형), 3억 엔(C형)으로 운영하고 자기부담금을 1청구당 3만 엔을 적용함

- 보험요율은 가입대상 업종별, 보상한도액에 따라 분류된 등급요율(Class rate)로 되어 있으며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에 대하여 적용함

- 일본 손해보험사는 계약자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및 해외수출업체 계약자에 대해서 소송 관련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2. 시사점

- 일본 PL보험을 포함한 배상책임보험시장은 손해보험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되고 있음
 - 특히 제조물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리콜보험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종합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 독립적인 PL보험상품을 개발하지 않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PL 특약과 추가특약을 부대함
 - 부대하는 추가특약은 보통약관의 면책위험을 담보하는 리콜 특약, 제품자체 손해담보, 포괄배상책임담보 특약 등임
- 보험요율을 원보험사가 직접 산출하여 적용함
 - 일본은 보험요율을 자체 통계에 기초하여 산출 및 적용하며, 계약자의 리스크에 부합한 보험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손해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PL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제조물책임사고 예방과 손실 축소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국에 두고 있는 손해보험 자사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PL 관련 사고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약자의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고 있음

V. PL보험의 역할 제고 방안

1. 리스크폴링기능 강화

- PL보험이 PL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함
 -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상품은 제조물결합사고와 관련되어 파생하는 리스크를 담보하는 리콜담보 특약, 제품자체보상 특약, 결함사고에 따른 간접손해담보 특약 등임
 -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는 PL보험약관을 통일화하여 보험회사의 자체 요율산출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PL리스크를 포함한 배상책임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초과배상책임보험(Excess liability insurance)이나 포괄배상책임보험(Umbrella liability insurance)을 공급할 필요가 있음
- 최소 보험료비용으로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리스크폴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산업융합촉진법(이하 ‘산촉법’)상의 보험 가입규정을 활용하여 보험 가입 촉진 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표준하도급계약서나 표준약관에 PL책임을 규정하지 아니한 다른 표준계약서에 PL책임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PL책임 이행이 되도록 “PL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를 신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경우 2017년 6월 현재 41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중 9개 업종만이 PL책임부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1개 업종(조선제조임가공업)만이 수급업자에게 PL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음

■ 개별 기업별 규모나 리스크 상황에 따라 판매채널을 달리하여 리스크풀링을 할 필요가 있음

- PL보험의 판매채널을 관련협회 등을 통한 단체계약방식과 대리점과 중개사 채널을 이용한 판매방식을 확대하여 리스크 평가를 통한 언더라이팅이 제고 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축적된 경험통계를 통해 PL보험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2. 손해보전기능 강화

■ PL보험이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상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전부보험으로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PL리스크는 개별 기업이 안고 있는 리스크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청약 시에 개별 기업의 PL 리스크를 평가하여 측정된 손해배상액에 방어비용을 합산하여 보상한도액이 되도록 권유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국내 소비자들은 실제 피해액 대비 배상액 수준이 낮은 PL보험 가입에 따른 가격 상승을 일정한도까지 용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적절한 보상한도액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소비자들은 제품의 가격이 평균 16.4% 상승하더라도 PL보험에 가입한 제품을 구매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18년 시행될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특약으로 개발하여 선별적으로 운영한 뒤에 손해율 상승 정도와 변동성을 분석하여 보통약관 담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담보하는 주(Insurable state)는 담보하지

않는 주보다 손해율과 보험영업이익률도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3. 리스크관리 촉진 역할 확대

- PL보험이 큰 시장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율체계가 등급요율(Rating plan)과 안전마크할인제도로 되어 있어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촉진유인이 되도록 요율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도 담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성과요율제도(경험요율, 예정요율)를 도입하여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해야 함
 - 보험회사는 단독 PL보험 운영이 15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자사요율 산출체 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기업 규모별로, 업종별로 PL리스크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PL리스크관리 서비스 매뉴얼을 작성하여 기업 특성에 따른 PL리스크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기업성 보험에 대한 언더라이팅 기능을 강화한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PL리스크를 포함한 기업성 보험에 대한 리스크컨설팅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음

4. PL보험의 마케팅 활용

- 보험회사는 가입하는 제품에 자사의 이름과 상품명칭, 보험금 청구방법 등을 명시하여 홍보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PL보험이 제3자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보험금 청구가 되는 경우 신속한 보험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절차를 이행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PL보험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여 보험회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VI. 결론

- PL법 시행 이후 15년간의 PL보험의 역할을 리스크폴링기능, 손해보전기능, 리스크 촉진 역할 측면에서 분석해 본 결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향후 PL보험의 수요가 더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PL리스크에 부합한 다양한 위험담보 상품 개발과 자사요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손해보전기능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리스크 조사와 평가에 기초한 보상한도액 설정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계약자의 리스크관리를 촉진하도록 경험요율과 예정요율을 가미한 성과요율 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자별 노출된 PL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컨설팅을 보험회사가 제공할 필요가 있음
- PL보험의 역할 제고 방안이 구축되는 경우 국내 리스크에 부합한 상품운영과 요율산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다른 보험으로 확산되어 일반보험 역할과 전문성 확대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자율자동차를 비롯한 4차 산업이 확산되면 새로운 PL리스크 증가가 수반되므로 PL보험 수요에 부응한 역할 수행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됨

I. 서론

1. 연구 목적

생산물배상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 이하 'PL보험')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법률 방어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PL보험은 제조물책임법(이하 'PL법')상의 제조자, 판매자가 공급 또는 판매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이하 'PL')을 부담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함과 더불어 시공한 완성품이나 농수산물 식품 등의 제조물 손해도 포괄하여 담보한다.¹⁾

PL법상의 PL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이 제조, 판매한 제조물의 설계상, 제조상, 표시상의 결함,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말한다(PL법 제3조). 2002년 PL법 시행 이전에는 PL사고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Tort law)과 계약책임(Contract liability)에 의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여 왔다. 그러나 고도의 과학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제조되고 유통과정이 다기화됨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판매와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를 확인하고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게 됨에 따라 PL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최초의 PL법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PL법상의 제조물뿐만 아니라 농수산물까지를 포함하고, 시공한 완성품까지 포함하고 있어 PL법상의 제조물책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음. 일본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Product Liability 또는 Manufacturer's Liability Insurance로 부르고 있음

을 제정한 미국의 경우 1963년 무과실책임에 의한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최고재판소 판례(*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²⁾가 제시된 이후 1965년에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인먼트(The second restatement of torts) 제402 A 조로 명문화된 PL법이 시행되었다.³⁾ 미국에 이어 EU가 1985년 7월에 PL에 관한 지침(Directive 85/374/EEC -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⁴⁾을 채택하였으며, 일본⁵⁾은 1995년 7월 1일에 시행되었고, 우리나라도 일본 PL법과 유사한 내용의 PL법을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PL법은 제조물의 범위, 책임부담 범위, 책임부담자, 소멸시효 등 책임부담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어 PL보험 운영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PL법과 PL보험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이를 통합하여 PL보험제도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PL보험시장의 성장을 통해 알 수 있다. PL보험은 2002년 PL법이 시행되기 전에 원수보험료가 200억 원 이하였지만, 법 시행 이후 급속히 성장하여 2015년 현재 원수보험료가 1,300억 원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2006년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 크고 작은 PL사고로 인하여 PL법 개정안이 20회나 제기되었고, 2번의 개정이 있었다. 첫 번째 2012년의 개정은 법조문을 한글로 순화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으며, 2017년 개정에서는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2)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59 Cal. 2d 57, 377 P.2d 897(1963)

3)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인먼트는 소비자 기대기준(Consumer expectation test)을 근거한 법률이라서 PL책임을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이 주장되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8년에 설계상의 결함과 경고상의 결함에 대해 위험-효용기준(Risk-utility test)를 채택한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인먼트(The restatement of torts, third: products liability)가 도입되었음. Sterrett Lauren(2015), Product liability: Advancements in European Union Products Law and A Comparison between The EU and U.S. Regime, Michigan State International Law Review Vol.23.3, pp. 893-895 및 윤진수(2011), p. 3

4) EU는 PL지침 채택 이후 5년마다 회원국가의 이행상황을 검토하여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1985년의 지침은 1995년 1차 검토보고서에서 제시된 바에 따라 농업·수산업·제조업·서비스업의 범위로 확대하는 지침(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으로 개정되었음. 1차 보고서 이후 2001년, 2006년, 2011년까지 4차 검토보고서가 나왔음. 銀泉株式会社(2014), p. 8

5) 中村雅人(2015), p. 1

과 제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되 시행시기를 2018년 4월 19일로 하였다.⁶⁾ 가슴기 살균제 사고의 경우 제조사가 PL보험을 가입하였지만,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피해자 보상보다는 소송이나 변호사비용 등 방어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에 PL보험이 PL법상 손해배상에 대비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PL법 시행 이후 PL보험이 큰 폭으로 성장하였지만, PL보험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PL보험이 PL법 시행 된지 15년이 지난 이후 큰 시장으로 성장하는 동안 배상책임보험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하고자 한다. 보험은 손해보상 등 기본적인 역할과 부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본적인 역할은 보험이 경제주체의 사고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사회주체들이 신뢰성을 갖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극대화한다. 또한 사고 시의 손해로부터 보호를 해주며, PL리스크의 풀링을 통하여 계약자 간 위험분산 및 공유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부수적으로 보험은 경제주체의 사고 방지 및 손해 경감 등의 리스크관리를 촉진하고, 축적된 자본을 이용한 투자를 복돋아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보험의 역할을 PL보험과 연계시켜 볼 때 기본적인 역할은 존재하며, 부수적으로 리스크관리 촉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L보험의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PL보험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PL보험의 기본적인 역할은 상법과 보험약관에서 찾을 수 있다. 상법은 PL보험을 포함하여 모든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보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약관에서는 손해의 보상기능에 추가하여 피보험자의 법률비용 등 방어비용과 손해방지비용도 추가로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PL보험의 리스크풀링기능,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손해보전기능, 사고 방어나 손해 경감 등의 리스크관리 촉진 역할을 평가하여 사회전반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PL보험의 역할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6) 황현아(2017), 「제조물 책임법 개정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변화 방향」,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2. 선행연구

PL보험의 선행연구는 PL법 제정 이전에 PL법 제정을 위한 논리 전개와 손해배상 수단을 제공하는 보험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하였고, PL법 시행 이후에는 PL보험 활성화를 위한 소수의 연구가 있다. 이기형(1996)은 PL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PL법의 도입과 PL보험 시장규모 추정, 보험약관 정비 및 단체보험상품 개발, 보험요율의 정비(국내요율), 준비금 적립의 체계화, 재보험거래(신용리스크, 출재방법),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전문화 및 관련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PL법 시행 이후에는 차일권(2007)⁷⁾과 전영주(2010)⁸⁾의 연구가 있다. 차일권(2007)은 PL법 도입 이후 보험 가입률이 2.6%로 매우 미약한 상태로 진단하고, 표준약관 및 하도급계약서상(기계, 섬유, S/W, 자동차, 전기, 전자, 조선)등에 보험 가입조항 신설, 기업의 신용도 평가 시 보험 가입 여부의 반영 필요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위해가능성이 큰 품목에 대해 보험 가입 의무화, 적용범위를 모든 제조물로 확대, ADR 도입 및 결함 원인 규명기관 운영에 대해 PL법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영주(2010)는 안전마크 제품의 보험 가입 의무화, 분쟁해결기구설치, 할인할증 등 보험요율체제 정비 및 단체보험 활성화, 전문언더라이터 양성을 제시했다.

PL보험의 담보위험을 규정하는 PL법 개정에 대한 연구는 윤진수(2011)⁹⁾에서부터 이은영(2014)¹⁰⁾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연구가 있었다. 연구의 대부분은 제조물의 범위 확대, 입증책임의 전환, 개발위험의 항변 조항 삭제, 의무보험 도입 등의 내용이 다양하다. 그리고 2017년 PL법 개정이 PL보험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황현아(2017)¹¹⁾는 위험성이 큰 제조물에 대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보험보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7) 차일권(2007), "PL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보험개발원 Workshop 자료

8) 전영주(2010),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9집, pp. 303~307

9) 윤진수(2011), 「제조물책임의 주요쟁점」, 『법학연구』, p.17

10) 이은영(2014), 「소비자안전법제의 기본구조와 개선방향」, 『소비자문제연구』, p. 17

11) 황현아(2017), 「제조물 책임법 개정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변화 방향」,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본 연구는 PL보험의 활성화에 초점이 되어 있는 차일권(2009), 전영주(2010)의 연구와 달리 향후 PL보험의 역할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는 PL법 시행 이후 세부적인 계약 및 사고자료와 소비자 설문조사, 일본의 PL보험을 비교하여 PL보험 운영현황을 시장구조, 행태, 성과 측면에서의 분석과 보험역할을 평가 및 진단하고, PL 보험역할 제고 방안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3.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2002년 7월 PL법 시행 이후 PL보험의 리스크폴링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손해배상의 보전기능 등 기본적 역할과 리스크관리 촉진과 같은 부수적 역할을 평가하기 위하여 최근 8년간(2008년~2015년) PL보험의 계약 및 사고자료를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PL법 도입 시행 이후 PL사고 경험 여부와 피해의 PL사고 경험 및 보험의 보상경험, PL법 인지 여부 및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소비자들의 PL보험 활용도 및 이해도를 감안하여 PL 역할 평가에 참조하였다.

또한 국내의 PL보험시장과 유사한 일본 PL보험시장을 살펴보기 위해 일본 출장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일본은 PL보험은 보험의 근간이 되는 PL법이 1995년에 도입되었으나 법조문체계 및 내용이 국내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PL보험시장은 다양한 상품이나 담보를 제공하고 관련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일본의 변화상황을 국내 보험시장과 비교하여 한국 PL 보험역할 제고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PL법 도입 이후 크게 성장하여 하나의 보험종목이 된 PL보험의 역할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서론을 포함한 6개의 장과 부록(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일본 PL법 최근 동향)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은 PL보험의 운영 및 역할 현황을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자료와 공개된 자료

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PL보험 운영현황은 PL법 도입 이후 원수보험료의 성장 추이와 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 시장 집중도 등 경쟁상황, 시장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보험의 역할은 리스크폴링기능, 손해배상의 보전기능, 사고발생 및 손실축소 촉진기능을 포함한 리스크관리 역할에 대해 PL보험 계약 및 사고 세부통계자료와 시장현황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은 소비자의 PL법과 PL보험에 기초한 제조물 소비인식 여부, PL사고 경험과 보험보상 경험과 관련한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보험계약자 및 보험회사의 보험 가입이나 보험상품 서비스 개선 등 보험역할 제고에 필요한 고려요인을 조사하였다.

제4장은 PL법이 국내보다 8년 빨리 도입되고, 한국의 PL법조문과 내용이 유사한 일본을 출장하여 조사된 보험 운영현황과 국내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조사내용은 PL법 도입 이후 PL보험상품의 운영체계 및 변화요인, 리스크폴링의 방법, 계약자의 서비스 제공 내용이다. 제5장은 PL보험이 단일종목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한 만큼 향후 PL법 목적과 보험의 본래 기능이나 소비자 인식 등에 부합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스크폴링기능을 다양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보상 및 전부보험 가입 등 손해보전기능 강화와 리스크관리 촉진 역할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결론과 연구한계를 기술하였으며 본 연구의 기초가 되었던 소비자설문조사 결과와 일본 PL법 최근 동향을 부록에 첨부하였다.

Ⅱ. PL보험의 운영 및 역할 현황

1. PL리스크의 특성

PL리스크는 제조자, 수입업자, 판매자 등이 제조, 수입, 유통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인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부담할 가능성이다. 따라서 PL리스크는 기업 등이 리스크 통제와 리스크 전가 등 리스크관리를 수행하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PL리스크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처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조물 중심으로 PL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보 리스크와 다른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가. 동일사고의 다발 가능성

제품의 생산 및 유통방식은 동일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전문적인 유통 및 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의 PL리스크가 한번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소비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결함 제품으로부터 위해가 발생할 때까지 잠복기간이 긴 경우에는 해당 기업들이 PL 리스크를 간과하거나 리스크관리에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동일한 제품의 사고가 다발할 가능성이 큰 제조물은 사용 용도가 특정인에게 제한된 제조물보다는 일상 생활용품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조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대표적인 PL사고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경우 PL사고책임과 관련된 회사는 7개의 제조회사와 옥시 등 10여 개 이상의 판매사이며, 피해자는 982명에 해당하며 이 중에서 219명이 사망했고, 763명이 부상치료를 받고 있다.¹²⁾

나. 사고발생장소의 광역성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내수시장보다는 해외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전 세계 국가에 수출하여 수많은 국가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다. 물론 소비자가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PL리스크가 우리나라에만 한정되겠지만, 해외 수출과 내수용 제품을 병행하여 제조하는 기업은 PL리스크가 다양한 국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PL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PL사고의 처리가 용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해외 수출용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은 PL리스크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 대규모 손해배상액 부담 가능성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명 및 재산손해를 야기하는 분야의 경우 손해배상책임한도액을 1인당 또는 1사고당 규정을 두어 사고책임자의 부담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자동차책임보험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사망과 후유장해는 1인당 1.5억 원, 부상은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1사고당 한도는 없다.¹³⁾ 이에 비해 대물배상사고는 1사고당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위험도에 따라 손해배상한도를 차등(고위험군 최대 2,000억 원, 중위험군 1,500억 원, 저위험군 500억 원)하여 오염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¹⁴⁾

이에 비해 PL법 제3조(제조물 책임)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12) 국회환경보건위원회(2017. 3. 27), “제3차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 및 정부지원안”

13)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1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배상책임한도) 및 시행령 제4조(배상책임한도) 별표 2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PL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업체 등 책임부담자는 1인당 한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당 한도도 없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PL사고 발생가능성이 큰 제조물을 생산하는 기업은 PL리스크관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적절한 보상한도액의 보험 가입으로 대비가 필요하다.

라. Long Tail Risk

PL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인적피해와 재산손해로 구분된다. 재산피해는 PL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피해가 확인되고 손해액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인적피해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약품 등의 요인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 수년 후에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PL리스크를 인수한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담보한 제조물에서 PL사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기간까지 장기간에 걸쳐 청구된 보험사고건은 지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준비금이 부족할 가능성과 정확한 보험료 산정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를 ‘Long Tail Risk’라 한다.¹⁵⁾ PL리스크의 Long Tail Risk 특성을 우리나라의 통계로는 확인할 수 없어 미국의 통계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보험회사들이 미국의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Schedule P part 2R에 수록된 PL보험의 손해사고증권의 연도별 발생손해액 집계표를 보면, 인수한 계약의 1차 연도에 발생하는 손해액은 2.2%로 매우 적고 5차 연도에도 29.7%에 불과하여 Long Tail Risk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15)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PL리스크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많은 보험회사가 파산하고 큰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여 보험 가입이 어렵게 되는 배상책임보험 위기(Liability insurance crisis)가 발생하였음. 保険毎日新聞社(1987), アメリカの賠償責任保険の危機とその解決への道, pp. 1~8

〈표 II-1〉 PL리스크의 Long Tail Risk

(단위: 백만 달러, %)

발생연도	당해연도 발생손해액	비중	누적발생손해액	비중
1차 연도	1,697	2.2	1,697	2.2
2차 연도	3,359	4.3	5,057	6.4
3차 연도	4,795	6.1	9,852	12.5
4차 연도	6,142	7.8	15,994	20.3
5차 연도	7,385	9.4	23,379	29.7
6차 연도	8,590	10.9	31,969	40.6
7차 연도	9,824	12.5	41,793	53.0
8차 연도	10,822	13.7	52,615	66.8
9차 연도	12,484	15.8	65,099	82.6
10차 연도	13,693	17.4	78,792	100.0

주: 손해사고증권의 2005~2014년 실적임

자료: AM BEST(2016), BEST'S AGGREGATES & AVERAGES Property/Casualty United States & Canada, p. 61

2. PL보험 운영현황

가. 보험상품

1) 보험약관 종류

PL보험은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PL)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함)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조물책임의 부담자는 제조자는 물론이고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한 자이며, 제조자나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PL법의 적용대상 제조물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에만 한정되며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제조자 등은 제조물의 결함 등 PL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접적인 손해와 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하며, PL보험상품은 이러한 손해를 보상한다. PL사고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는 제조물의 설계상, 제조상, 경고상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산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손해(The third party liability)와 사고의 소송 및 변호사비용 등 법률비용(Legal expense)이 발생한다.

〈표 II -2〉 PL사고의 손해발생 구분과 내용

손해발생 구분		손해 부담 내용
직접손해	손해배상금	제3자의 인적손해, 재산손해
		징벌적 배상금
	분쟁해결비용	법률비용(소송비용, 변호사보수), 기타비용
간접손해	경제적 손실	제품 회수 등 사후조치비용, 제품보증교환 및 수리비용, 영업이익 상실 등 휴업손해
	비경제적 손실	소비자 신뢰 저하, 노동의욕 감퇴 등

자료: 이기형 외 2인(1996), p. 16

PL사고에 따른 기업의 간접적인 손해는 안전성 등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제품 회수비용, 제품보증에 따른 교환비용, 영업중단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신뢰 저하나 종업원들의 노동의욕 감퇴 등의 비경제적 손해도 발생한다. 2017년 4월 18일 공표된 PL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기업의 직접적인 손해에 해당된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PL사고에 따른 기업의 손해부담 내용에 맞추어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PL보험상품은 직접적인 손해를 담보하며, 제품 회수비용보험(Recall expense insurance)은 안전성 결여 상품의 회수에 따른 비용을 보상한다. 또한 제조물의 품질이나 안전성 등의 보증하자가 생긴 경우에 대비하여 생산물보증보험(Product guarantee insurance)이 있다. 여기서 PL보험은 소비자 등 제3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인 반면에 후자 2개 보험은 제조업체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이다. 이들 보험 모두를 제조물책임 관련 보험이라고 하며 PL책임과 관련한 직접적인 보험은 PL보험만 해당된다.

PL보험은 다른 배상책임보험과 다르게 담보기준(Coverage trigger)을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 trigger)¹⁶⁾과 배상청구기준(Claims made basis trigger)¹⁷⁾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도입은 70, 80년대 미국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위기로 많은 보험회사가 파산하게 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과 준비금 적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상청구기준을 도입하였으며 다른 국가의 보험회사도 사용하게 되었다.

〈표 II-3〉 PL 관련 보험종류

보험종류 \ 담보손해	생산물자체의 수리, 교환비용		생산물 회수비용	제3자손해 배상책임 (TPL)	제3자손해배상 책임에 기인한 휴업손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	○	○
생산물보증보험	○	×(회수)	×	×	×
회수비용보험	△(회수에 한정)		○	×	×

자료: 이기형 외 2인(1996), p. 17

손해사고기준은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 보상해야 하며, 배상청구기준은 담보하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손해사고기준은 보험사고 이후에 소멸시효 기간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해야하지만 배상청구기준은 보험기간 이전 또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청구가 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의 지급 범위가 축소되는 배상청구기준 증권에 대해 보험료를 10% 내외로 할인해주고 있고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¹⁸⁾ 보고연

16) PL보험 보통약관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부담손해를 보상함(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Ⅰ) 손해사고기준 약관 제5조)

17)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로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 소급담보일자 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Ⅰ) 배상청구기준 약관 제5조)

18) 소급담보일자는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고의 발생일자를 보험기간 이전의 특정일자 이후로 제한하는 것을 말함. 지수현(2002), p. 194

장담보기간(Extended reporting period)¹⁹⁾ 등의 조건을 첨부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내 PL보험상품은 PL법 시행 이전에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생산물배상책임담보 특약을 첨부하거나 재산종합보험(Property all risk policy)의 배상책임 담보부분에서 담보하여 왔고, 지방자치단체의 PL리스크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에 생산물배상책임담보 특약(손해사고기준)을 첨부하여 담보하여 왔다.

2002년 PL법 시행 이후 보험회사들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독립상품(Stand alone policy)인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국문약관), 생산물/완성작업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 영문약관)을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국문약관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PL담보 특약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나 영문약관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PL 특약담보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PL보험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국문,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의 PL 특약, 재산종합보험, 지방자치단체보험 4종이다.

19) 국내 PL보험의 배상청구기준 증권은 손해사고기준과 달리 보험기간 종료된 경우에 보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고연장담보기간을 운영함. 이에선 계약자의 의사표시없이 운영되는 자동연장담보기관과 추가보험료를 납부하고 연장하는 선택담보 연장담보기간이 있음. 자동연장담보기간은 60일(Mini tail, 단기)과 5년(Midi tail, 중기)이 있으며, Mini tail 60일은 소급담보일자 이후 보험기간 만기일에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60일까지 배상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함. Midi tail 5년은 소급담보일자 이후 보험기간 만기일 내에 사고가 발생하고, 만기 다음날 이후 60일 이내에 손해발생 사실이 통보된 후, 손해배상청구가 만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된 경우에 보상하는 방식임. 선택보고연장담보기간은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무기한 담보하는 방식임. 지수현 (2002), p. 196

〈표 II-4〉 PL보험약관의 종류

약관 내용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		생산물/완성작업배상책임보험(Products/ 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	
	I	II	I	II
사용언어	· 국문약관		· 영문약관	
계약방식	· 독립적인 증권으로 보험계약 체결			
담보제조물	· 국내 판매 제조물		· 해외수출품, 외국법인 피보험자	
가입업자	· 완성품 제조업체, OEM 업체		· 재료, 부품 제조 · 공급업체	
	· 수입업체, 판매업체(백화점, 도 · 소매상인 등)		· 부품, 완성품 조립업체	
배상청구기준 추가조건	· 부품, 완성품 조립업체		·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수리업체 등	
	· 소급담보일자			
	· 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60일, 5년)			
	· 선택보고연장담보기간(무기한)			

주: 1) 보통약관 I 은 담보기준이 손해사건기준(occurrence basis)이고, 보통약관 II 는 배상청구기준(claims made basis)임

PL보험약관은 손해사건기준과 배상청구기준의 담보기준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영문 PL약관은 미국 ISO 약관을 준용한 형태로 부보 제조물이 해외 수출품이거나 외국법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 사용하고 있으며 국문약관은 국내 제조 판매용 생산물에 적용하고 있다. PL보험상품별 계약 현황을 보면 보험회사는 PL법 시행 시에 개발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 전체 계약 건수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 PL보험약관별 사용 비중

(단위: %)

연도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의 PL 특약(영문)		지자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의 PL 특약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국문 + 영문)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2008	0.31	4.03	0.38	0.01	99.31	95.96
2009	0.25	2.51	0.52	0.02	99.22	97.47
2010	0.02	0.13	0.51	0.02	99.47	99.84
2011	0.04	0.18	0.69	0.03	99.27	99.79
2012	0.03	0.18	0.72	0.03	99.26	99.79
2013	0.04	2.57	0.75	0.03	99.22	97.39
2014	0.04	2.29	0.87	0.04	99.09	97.67
2015	0.05	1.76	0.85	0.04	99.09	98.21
합계	0.09	1.67	0.67	0.03	99.24	98.30

주: 1) 재산종합보험 실적은 통계가 작성되지 않고 있어 반영하지 못하였음

2) PL보험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임

자료: 보험개발원

2) 보상하는 손해²⁰⁾

PL보험의 보상손해는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²¹⁾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장해(상해, 질병, 사망)나 재물손해(물리적 직접손해,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으로써 입은 손해를 증권상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로 보상한다.

여기서 우연한 사고는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가 해당된다. 또한 1회의 사고는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간주한다. 그리고 법률상의 배상책임은 약관에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나 PL법상의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경고표시상의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PL책임이 해당된다.

PL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지연배상금 포함), 손해방지·경감비용,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방어비용(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 또는 조정비용), 공탁보증보험료가 해당된다.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은 증권상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에 상관없이 전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송 및 변호사비용, 공탁보증보험료는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상한다. 그러나 PL보험은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환경오염 손해, 생산물 또는 구성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 품질 하락 손해, 벌금 및 징벌적 손해, 생산물 그 자체 재물손해, 손상재물의 사용불능 또는 가치 하락 손해, 생산물의 성질, 하자의 손해배상, 결함제품의

20) 국내의 PL보험상품의 대부분이 독립된 PL보험상품이고 재산종합보험은 All Risk 형태이므로 독립보험상품만 살펴보았음

21) 약관의 생산물의 정의는 PL법상의 제조물 정의와 달리 피보험자가 제조, 가공 또는 공급한 생산물 및 시공한 작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회수, 검사, 수리, 대체비용, 사용손실, 전자파, 전자장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

〈표 II-6〉 PL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약관 내용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		생산물/완성작업배상책임보험(Products/ 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	
	I	II	I	II
담보 손해	•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경감비용, 대위권 보전 또는 행사비용, 보험회사 협력비용, 소송(중재·화해 또는 조정)비용, 변호사비용, 공탁보증보험료를 보상한도액내로 보상		• 신체장해 및 재산손해의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경감비용, 대위권 보전 또는 행사비용, 보험회사 협력비용 및 일당 \$100 소득 상실, 소송(중재·화해 또는 조정)비용, 변호사비용, 공탁보증보험료를 보상한도액 내로 지급, 판결액 이자(보상한도액 초과하여 지급)	
부담보 손해	• 계약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 가중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종사 중 신체장해 • 생산물 및 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 품질 하락 • 생산물자체의 재물손해/사용불능손해와 사용가치 하락 손해 •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따른 생산물자체 손해 • 결함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대체비용, 사용손실		• 계약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 가중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을 취하게 하거나 기여, 법령상 음주제공 금지자에게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종사 중 신체장해	
	• 양도된 생산물로 피보험자 구내에서 발생한 손해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 전자파, 전자장으로 생긴 손해 • 원자핵물질의 방사선		• 결함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대체비용, 사용손실	

주: 1) 보통약관 I 은 담보기준이 손해사건기준(Occurrence basis)이고, 보통약관 II 는 배상청구기준(Claims made basis)임

3) 특약종류

PL보험의 특별약관은 2002년 이후 새로운 약관이 개발되지 않고 현재까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약약관은 담보위험을 제한/확대하는 특약과 보험계약 방법이나 보험료 적용과 관련한 특약으로 구분된다. PL보험의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을 비교하여 보면 담보위험특약과 계약조건 및 보험료 적용 특약은 유사하나 영문약관이 다양한 부담보위험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약관의 구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먼저, 생산물의 품질과 관련한 부담보위험 특약은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에 모두 다뤄진다. 국문약관의 경우 의약품 등, 농약, 식품, 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 비료 및 부산물비료, 사료에 대해 직·간접을 불문하고 의도된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효능불발휘 부담보 특약(Inefficacy clause)을 운영한다. 이에 비해 영문약관은 대상 제조물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제조물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가 의도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손해를 면책으로 하고 있다.

최근 2017년 PL법 개정의 큰 이슈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부담에 대해 국문약관은 보통약관에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영문약관은 벌과금 부담보 특약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영문약관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품 회수비용과 간접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사이버 위험에 대해서는 국문약관은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영문약관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

또한 영문약관만 별도의 특약으로 운영하는 것은 보통약관이 종합담보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특약으로 전자장, 오염손해 부담보, 석면 부담보, 핵위험 부담보 등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문약관은 자기부담금과 관련한 특약을 규정하여 사고 시 자기부담금 적용방법을 약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문약관은 보통약관에서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배상금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PL보험의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은 각각 약관의 구성과 내용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검토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II-7〉 PL보험의 특별약관 종류

약관 내용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		생산물/완성작업배상책임보험(Products/ 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	
	I	II	I	II
부담보 특약	•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추가약관 • 전기공급차질 부담보 추가약관 • 효능불발취 부담보 특약 • 정보기술 특약(사이버위험 부담보) • 비브리오팀, 패혈증, 광우병, 구제역 부담보 특약		•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추가약관 • 벌과금 부담보 특약 • 생산물 효능불발취 부담보 특약 • 전자장, 전자파 손해 면책 특약 •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손해 부담보, 오염 부담보, 석면 부담보, 테러 행위 부담보 • 항공기부품 및 관련 손해 부담보, 납 손해 부담보, 핵위험 부담보, 간접손실 부담보, 보증위험 부담보 특약 • 회수비용 부담보 특약/계약상가중 책임 부담보 특약	
담보 특약	• 판매인추가특약 • 도급업자 특약 • 인격침해담보 특약 • 교차배상책임 특약 • 대위권 포기 특약		• 추가 피보험자(명의사용인) 특약 • 추가피보험자(판매인) 특약 • 교차배상책임 특약 • 대위권 포기 특약	
계약조건 및 보험료 적용 특약	• 인증기관마크계약 특약 • 단체계약 특약 • 적용환율/보험료정산/공동보험/보험료분납 특약		• 보험료조정/적용환율/자기부담금 특약/공동보험/보험료분납 특약 • 중재 특약/ 보험계약 리뷰 특약/사고처리협조 조항	

주: 1) 보통약관 I 은 담보기준이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이고, 보통약관 II 는 배상청구기준(Claims made basis)임

나. 보험료 규모

PL보험시장은 PL법 시행 이전에는 해외 수출용 제조물 중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보험 가입 수요가 있는 관계로 연간보험료가 200억 원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PL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수요가 크게 증가해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과 같은 하나의 보험종목으로 볼 수 있는 시장규모로까지 성장하였다. 2015년 현재 PL보험의 원수보험료는 1,132억 원으로 PL법 시행 이후 매년 8.4% 성장하고 있다.

PL보험시장은 PL법 시행 전인 2001년의 경우 손해보험 전체의 0.2%, 일반손해보

험의 0.6%, 배상책임보험의 5.1%에 불과했다. PL법 시행 이후 리스크관리 필요성의 증가에 힘입어 2015년 현재 PL보험료는 손해보험 전체의 0.4%, 일반손해보험의 1.6%를 차지하는 규모로 증가하였고, 배상책임보험에서도 16.5%를 차지하고 있어 배상책임보험시장의 주요 성장종목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표 II-8〉 PL보험의 원수보험료 및 성장률 추이

(단위: 억 원, %)

연도별	원수보험료				PL보험료 비중			PL보험료 성장률
	손보 전체	일반손보	배상책임	PL보험	손보대비	일반대비	배상대비	
2001	105,655	28,208	3,399	172	0.2	0.6	5.1	-
2002	119,718	33,602	4,385	397	0.3	1.2	9.1	131.3
2003	121,366	33,697	4,663	461	0.4	1.4	9.9	16.2
2004	129,310	35,850	4,863	643	0.5	1.8	13.2	39.3
2005	136,095	37,989	4,514	764	0.6	2.0	16.9	18.9
2006	148,497	40,956	4,265	719	0.5	1.8	16.9	-5.8
2007	167,014	43,518	4,512	661	0.4	1.5	14.7	-8.1
2008	178,805	51,689	4,722	967	0.5	1.9	20.5	46.1
2009	193,933	52,477	4,904	930	0.5	1.8	19.0	-3.7
2010	227,612	55,786	5,270	1,103	0.5	2.0	20.9	18.5
2011	254,857	64,172	5,562	1,110	0.4	1.7	20.0	0.6
2012	269,707	73,550	5,846	1,192	0.4	1.6	20.4	7.4
2013	268,829	68,510	6,419	1,200	0.4	1.8	18.7	0.7
2014	299,448	65,782	6,420	1,043	0.3	1.6	16.3	-13.0
2015	316,291	69,837	6,858	1,132	0.4	1.6	16.5	8.5
CAGR	7.8	5.8	3.5	8.4	0.6	2.5	4.7	

주: 1) 손보 전체는 장기(개인연금) 제외, 일반손보는 자동차보험 제외한 것임. 배상책임에는 종합보험의 배상책임담보부분 제외된 것임

2) PL보험료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만이며, 영업배상책임보험,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재산종합보험의 생산물 및 완성위험담보 보험료를 제외된 것임

3) CAGR은 2001년대비 2015년 누적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를 참조하여 작성

이렇게 성장한 우리나라의 PL보험료를 미국²²⁾과 비교하여 보면, PL보험료가 손해 보험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PL보험 비중이 손해보험시장에 차지하는 비중만큼 대등한 규모로 성장하였다.

〈표 II-9〉 한국과 미국의 PL보험 시장 비교

(단위: 원, %)

연도	한국 PL보험				미국 PL보험			
	PL 보험료		특성치		PL 보험료		특성치	
	억 원	비중	침투도	밀도	억 달러	비중	침투도	밀도
2001	172	0.2	0.0025	362	20	0.7	0.0192	7,836
2002	397	0.3	0.0052	834	18	0.5	0.0163	6,816
2003	461	0.4	0.0057	963	27	0.7	0.0237	10,307
2004	643	0.5	0.0073	1,336	34	0.9	0.0277	12,748
2005	764	0.6	0.0083	1,586	36	0.9	0.0272	13,228
2006	719	0.5	0.0074	1,485	36	0.9	0.0261	13,330
2007	661	0.4	0.0063	1,359	33	0.8	0.0226	11,906
2008	967	0.5	0.0088	1,971	28	0.7	0.0189	10,035
2009	930	0.5	0.0081	1,887	24	0.6	0.0164	8,470
2010	1,103	0.5	0.0087	2,226	21	0.5	0.0137	7,279
2011	1,110	0.4	0.0083	2,222	23	0.6	0.0150	8,171
2012	1,192	0.4	0.0087	2,374	26	0.6	0.0159	8,999
2013	1,200	0.4	0.0084	2,379	27	0.6	0.0163	9,431
2014	1,043	0.3	0.0070	2,056	27	0.6	0.0154	9,208
2015	1,132	0.4	0.0072	2,218	28	0.6	0.0155	9,561
CAGR	8.4	0.6	2.6	7.8	3.5	0.9	-0.4	2.6

주: 1) 비중은 손보 전체(한국은 장기 및 개인연금 제외, 미국은 산재를 제외)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임

2) 침투도 = PL보험료 / GDP, 밀도 = PL보험료 / 인구수(미국 1\$ = 1,100원으로 환산)

3) CAGR은 2002년대비 2015년까지의 누적연평균 증가율임

4) 한국은 원수보험료기준이고, 미국은 보유보험료 기준이라서 차이가 있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미국은 III, *Fact Book*, Am Best(2016), "Best's Aggregates and Averages" 참조 작성

22) 다른 국가들은 PL보험료를 공표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PL보험료를 공표하고 있어 비교가 가능했기 때문에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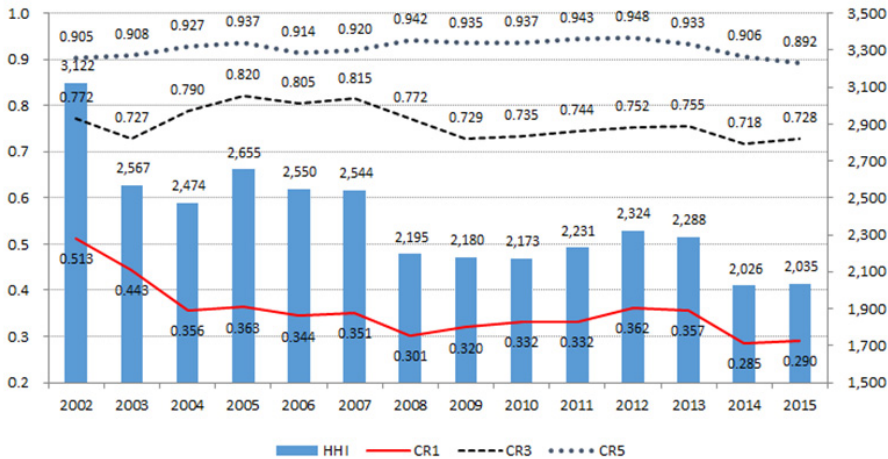
한국의 PL보험료는 PL법 시행 전인 2001년에 손해보험 전체의 0.2%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0.4%까지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PL보험료가 2001년에 산재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 전체의 0.7%였으며, 그 이후에도 변화가 크지 않다. 이와 같이 보험료 규모면에서는 미국과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보험시장의 침투도나 밀도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이는 미국의 불법행위비용 지출이 한국보다 크기 때문에 보험수요가 더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현재 한국의 PL보험 침투도는 0.0072%이나 미국은 0.0155%로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2015년 한국의 PL보험 밀도는 2,218원으로 미국의 9,561원에 비해 월등히 낮은 상태이다.

다. 시장집중도 및 경쟁도

2002년은 PL법이 시행된 해이기도 하지만 손해보험회사의 순보험료 결정에 대한 자유화가 이루어진 해이다. 손해보험회사는 자율적으로 보험종목별 예정손해율과 예정사업비, 예정이익률을 결정하여 가격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는 PL법 시행으로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독립적인 PL보험상품을 개발하였고 여기에 가격과 서비스 등의 경쟁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쟁요소가 갖추어짐에 따라 PL보험시장에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지점도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이는 PL보험시장의 점유비와 허핀달 지수를 보면 알 수 있다. PL법 시행 이전에는 대형사 중심으로 수출 제조물에 대하여 PL보험을 선별적으로 인수하였기 때문에 보험시장 집중도가 매우 높았다. 시행 초기인 2002년의 경우 상위 1사 점유비(CR1)는 51.3%이고, CR3는 77%였다. 이후 점진적으로 중형사와 외국사들이 PL보험시장에 참여하여 집중도가 완화되어 왔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2015년 현재로 보면 CR1과 CR3는 29.0%, 72.8%로 크게 낮아졌지만 CR5는 변화가 적은 편이다. 이는 상위 대형사 중심의 PL보험시장이 중형사도 중심이 되는 시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I-1〉 PL보험의 시장 집중도 추이



주: 1) PL보험약관 적용 시장만 고려한 것임(영업배상책임 특약 제외)

2) $HHI < 100$: 매우 경쟁시장, $100 \leq HHI < 1,500$: 집중되지 않은 시장, $1,500 \leq HHI < 2,500$: 집중시장, $2,500 \leq HHI$: 매우 집중된 시장

자료: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각 연도를 사용하여 작성함

PL보험시장의 시장 집중도 변화를 허핀달 지수로 추이를 검토하여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다. 2002년의 허핀달 지수는 3,122로 매우 집중된 시장(Highly concentrated)이었다.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경쟁이 증가하여 지수가 조금 낮아졌지만 1,500 이상의 집중시장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2015년의 허핀달 지수는 2,035로 2002년에 비해 1,000 이상 낮아져 경쟁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손해율

PL보험의 경과손해율은 예정손해율보다 낮은 50% 이내로 안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PL법 시행 이후 보험료의 높은 증가세에 힘입어 손해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행 이후에는 보험사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손해율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손해율의 추세는 PL보험에서 대규모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단체보험 등을 통한 인수여건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들의 PL리스크관리가 상당히 진전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를 경험통계로 분석하여

보면 사고빈도보다는 사고심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빈도의 경우 PL법 시행 이후 가입 건수의 증가로 20%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CAGR 9.7%). 그러나 사고심도는 2002년에 169.9만 원이었으나 2015년 현재는 818.2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고빈도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CAGR 12.9%).

〈표 II-10〉 PL보험 손해율 및 사고 특성

(단위: 억 원, %)

연도	계약 건수	원수 보험료	경과 보험료	지급 건수	지급 보험금	발생 손해액	손해율	사고특성	
								빈도	심도(천 원)
2002	12,383	397	154	464	8	25	16.4	3.7	1,699
2003	14,976	461	491	1,265	23	53	10.8	8.4	1,850
2004	15,336	643	588	2,428	125	275	46.8	15.8	5,138
2005	17,709	764	632	2,040	98	34	5.4	11.5	4,785
2006	19,202	719	746	2,338	130	154	20.7	12.2	5,540
2007	19,688	661	710	2,516	224	224	31.5	12.8	8,911
2008	21,523	967	795	3,163	184	260	32.7	14.7	5,805
2009	24,252	930	971	3,420	213	262	27.0	14.1	6,235
2010	26,376	1,103	1,010	4,424	253	254	25.2	16.8	5,727
2011	28,215	1,110	1,068	4,279	286	463	43.4	15.2	6,674
2012	29,831	1,192	1,185	4,476	329	132	11.1	15.0	7,352
2013	32,062	1,200	1,192	4,696	243	261	21.9	14.6	5,168
2014	35,175	1,043	1,145	6,027	341	575	50.3	17.1	5,660
2015	44,857	1,132	1,142	5,590	457	396	34.6	12.5	8,182
CAGR	10.4	8.4	16.7	21.1	36.7	23.6	5.9	9.7	12.9

주: 1) 손해율은 경과기준(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빈도: 지급건수 / 계약 건수, 심도: 지급보험금 / 지급건수

2) CAGR은 2002년대비 2015년 누적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를 참조하여 작성

또한 단체보험계약과 개별계약의 손해율(보험금/보험료)은 시행 초기에는 차이가 적었지만 최근에 올수록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단체계약과 개별 계약의 손해율은 각각 18.3%, 19.6%였으나, 2015년에는 각각 31.2%, 66.5%로 개별 계약의 손해율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은 사고심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표 II-11〉 참조).

〈표 II-11〉 단체계약과 개별계약의 손해율 및 사고심도 비교

(단위: %, 백만 원)

연도	손해율(보험금/보험료)			사고심도(보험금/지급 건수)		
	단체	개별	전체	단체	개별	전체
2008	18.3	19.6	18.7	4.79	7.83	5.43
2009	23.0	27.6	24.3	5.84	11.59	6.96
2010	22.0	27.0	23.3	4.76	11.21	5.75
2011	25.7	19.0	24.1	6.27	6.54	6.32
2012	29.1	28.0	28.8	7.33	7.21	7.30
2013	18.4	26.7	20.2	4.76	6.50	5.17
2014	26.5	51.3	32.8	4.42	9.26	5.57
2015	31.2	66.5	40.5	6.36	12.75	8.12

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만의 실적임. 사고심도 = 보험금 / 지급건수

자료: 보험개발원

또한 부보기업의 영위업종별 손해율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PL법의 적용대상 제조물은 부동산을 제외한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이므로 다양한 업종이 PL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PL보험은 영위업종에 따라 PL리스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종별 등급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업종별 최근 7개년의 누적 경과손해율을 음식물류 31.8%, 생산물류 49.2%, 완성작업위험 61.8%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물 제조업종별 손해율을 세부적으로 보면 섬유/의류 제조업이 2.9%로 가장 낮으며 조립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업과 기타 제조업이 각각 92.2%, 71.0%로 가장 높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조립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업, 기타 제조업, 완성작업에 대한 손해율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12〉 PL보험의 업종별 손해율(2008~2015)

(단위: 건, 백만 원, %)

업종별	계약 건수	보험료	경과 보험료	사고 건수	보험금	손해액	손해율
음식물류	42,367	24,300	25,603	4,671	7,243	8,138	31.8
소계	4,183	22,870	22,439	30	10,888	11,045	49.2
섬유/의복 등	2,209	690	657	123	13	19	2.9
나무제품 제조업	6,402	775	810	489	525	392	48.4
화학물/석유/석탄 등	1,343	3,227	3,162	91	875	833	26.3
비금속광물 제조업	479	390	374	63	113	113	30.1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제품	11,144	383	391	1,068	474	361	92.2
전기 및 전자기기제품	1,105	8,583	8,307	161	3,446	3,204	38.6
자동차 제조업	15,502	390	381	2,646	131	124	32.6
기타 제조업	7,756	8,432	8,361	2,452	5,311	5,940	71.0
완성작업위험	318,823	10,763	10,194	18,773	6,119	6,298	61.8
업종계	365,373	57,933	58,236	23,474	24,250	25,481	43.8

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만의 실적임

자료: 보험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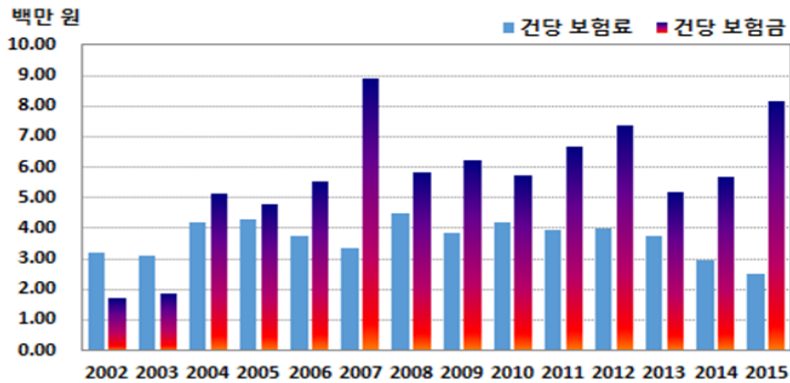
3. PL보험의 역할

가. 리스크풀링기능

손해보험회사는 다수의 동질인 PL리스크를 풀링하고, 풀링된 리스크를 계약자에게 분산 및 공유시켜 보험료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손해보험회사는 적정한 리스크전가비용을 이용한 계약자의 PL리스크관리에 기여한다. 리스크풀링기능은 사고발생빈도가 적고 사고심도가 큰 기업성 보험종목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PL보험의 경우를 보면 PL법 시행 초기 계약건당 보험료는 3백만 원 정도였으나, 최근에 들어 3백만 원 이하로 전가비용이 낮아 졌다. 반면에 PL사고의 보험금은 시행 초기에 건당 2백만 원이었지만 점차 증가하여 2007년에는 9백만 원까지 상승하였다. 2015년의 경우 계약 건당 보험료는 2.5백만 원이지만 평균 보험금은 8.5백

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PL보험의 리스크풀링은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2〉 PL보험의 계약당 평균보험료 및 보험금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각 연도를 이용하여 작성

PL보험의 리스크풀링을 위해 보험회사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의 PL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 판매 촉진, 판매채널 확보 등의 마케팅 전략 요소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손해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보험상품의 구성방식과 판매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 구성방식

손해보험회사들은 기업의 PL리스크를 풀링하기 위하여 보험상품 설계방식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이 안고 있는 PL리스크를 포함한 모든 리스크를 하나의 증권으로 제공하는 방식과 배상책임 리스크별로 독립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의 포괄증권방식의 보험상품은 하나의 증권으로 기업이 안고 있는 시설이나 건물의 소유, 점유, 사용에 부수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PL보험담보, 환경책임담보 등을 부가하여 인수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일본의 손해보험회

사들은 동 방식을 사용하여 기업의 배상책임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PL 시행 전에 미국과 동일한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에서만 생산물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운영하고 있다. 후자의 방식은 PL 법 시행과 더불어 개발한 단독증권 방식의 PL보험상품이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손해보험회사들은 PL리스크 인수계약의 99.2%를 독립 보험상품으로 인수하였다.

〈표 II-13〉 PL담보 보험약관별 계약 건수 추이

(단위: 건)

구분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의 특약				PL독립약관	합계
	영업배상책임보험			지자체배상 책임보험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국문	영문	계			
2008	10	56	66	81	21,089	21,236
2009	6	53	59	121	23,042	23,222
2010	5	-	5	133	26,119	26,257
2011	7	2	9	165	23,578	23,752
2012	5	2	7	176	24,401	24,584
2013	2	8	10	203	26,929	27,142
2014	2	9	11	228	26,002	26,241
2015	0	15	15	237	27,507	27,759
합계	37	145	182	1,344	198,667	200,193
비중	0.02	0.07	0.09	0.67	99.24	100.00

자료: 보험개발원

포괄위험 담보증권방식과 단독증권방식의 PL보험 운영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에게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단독증권방식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약관내용의 이해가 포괄증권방식에 비해 쉽고, 단일 위험을 담보하기 때문에 낮은 보험료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특정 담보리스크만을 전가받을 때 용이한 구조이다.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배상책임리스크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자에 대한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약관을 분리하여 발급하므로 상품관리는 단순할 수 있으나 비용 처리는 개별 증권별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유지관리 비용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에 비해 포괄증권방식의 보험상품인 경우에는 약관구조가 다소 복잡하여 계약자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고,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담보에 따른 고정비 감소로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여 계약자는 개별 증권가입방식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지출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포괄적인 위험인수와 리스크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하나의 증권으로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하므로 유지관리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에 포괄적인 위험을 인수함에 따라 부보 리스크에 대한 위험평가와 언더라이팅 전문성이 필요하고, 담보력에 부합한 보유 및 출재 전략을 운영해야 한다.

〈표 II-14〉 PL보험상품 제공방식의 장·단점

구분	단독증권방식	포괄증권방식
계약자	• 약관내용 이해 및 설명 용이 • 담보위험당 보험료 부담으로 인식 • 보험회사의 고정비용 부담에 따른 보험료 상승	• 약관구조 복잡해 이해 곤란 • 패키지화인 등으로 경제적인 보험료 부담 가능
보험회사	• 계약자의 포괄적인 위험인수 곤란 • 리스크관리 서비스 제공 곤란 • 상품관리는 단순할 수 있으나 유지관리비용은 증가	• 계약자의 포괄적인 위험 인수 및 리스크 관리 서비스 제공 가능 • 언더라이팅 및 리스크 평가 능력 필요 • 보험회사의 보유 및 출재 전략 필요 • 보험회사의 유지관리 비용 감소(증권, 안내장, 전산비용)
해당상품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Products/Completed operation liability insurance	• 영업배상책임보험 • 지자체배상책임보험 • 재산종합보험

2) 보험 마케팅

PL보험은 부보 제조물이 해외 또는 국내인가에 따라 마케팅의 4P전략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우선 해외수출용 제조물인 경우에는 상품과 가격은 국내외 재보험회사와 보험중개사가 협상하여 결정하고 프로모션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수출용 제조물의 인수에 사용하는 보험약관은 재산종합보험이나 영문 생산물배상책임보험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이다. 이에 비해 국내 제조물은 회사별로 차별성이 적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체의 단체를 통한 보험계약을 차별적인 가격으로 인수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용과 마찬가지로 프로모션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PL보험의 단체보험계약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산업기술시험원, 기계공제조합,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산업진흥회, 전기제품안전진흥원, 한국동물약품협회 등 산업의 단체가 회원 기업들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대표 손해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동 계약은 일반계약보다 보험료가 25% 내외로 낮고 손해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구조이다.

PL보험의 단체계약 비중은 PL법 시행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시행 초기인 2002년의 단체계약의 가입률은 2.8%(2,749개 업체)이고 보험료도 9.0%(63억 원)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 들어 가입률이 4.3%(4,339개 업체), 보험료는 12.6%(111억 원)로 증가했다. 이후 단체계약의 증가세는 더욱 증가하여 2015년 현재 가입률은 83.9%, 보험료는 73.7%나 된다. 최근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단체계약 건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2.8%나 되며 이는 전체 계약 건수의 증가율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²³⁾

부보기업의 분포를 보면 중소기업이 30%~4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중소기업의 PL보험계약 건수는 32.5%이고 보험료는 23.8%로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3) 중소기업의 단체계약은 PL법이 먼저 시행한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지만 미쯔이스미토모사의 출장에서 조사해 본 결과 단체보험계약의 보험료 비중은 10%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 II-15〉 PL보험의 단체계약 비중 추이

(단위: 건, 백만 원, %)

연도	단체계약				중소기업 계약			
	계약실적		점유비		계약실적		점유비	
	계약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계약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2008	16,181	77,749	76.7	86.3	8,052	12,360	38.2	13.7
2009	18,187	71,855	77.1	75.7	9,314	23,038	39.5	24.3
2010	19,960	71,186	76.8	67.9	10,512	33,729	40.4	32.1
2011	21,482	78,062	76.7	67.9	11,291	36,940	40.3	32.1
2012	22,974	79,907	78.7	70.0	12,362	34,203	42.3	30.0
2013	25,641	80,523	80.0	67.1	13,593	39,447	42.4	32.9
2014	28,264	77,415	80.4	74.2	13,973	26,932	39.7	25.8
2015	37,621	86,174	83.9	76.2	14,595	26,976	32.5	23.8
CAGR	12.8	1.5	1.3	-1.8	8.9	11.8	-2.3	8.2

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만의 실적임

자료: 보험개발원

나. 손해배상의 보전기능

기업이 가입하는 PL보험은 제조사 등이 보험기간 중에 판매한 제조물로부터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경고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적 손해나 재산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한다.²⁴⁾ 그리고 PL법은 자동차 사고와 같이 배상책임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은 무한하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PL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정확한 PL 사고율과 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규모를 분석하여 PL리스크를 전부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전가하고 나머지 배상책임을 자가보유하여 잉여금 등으로 보전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완전한 리스크 전가를 하는 경우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전부보험의 리스크 전가보다는 부분적인 전가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보전기능이 미약한 상태로 추정된다.

24) PL보험은 2015년 457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최근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최근 5년 동안 기업들이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연평균 1사고당 대인배상 한도액과 대물배상한도액을 보면 더욱 일부보험 현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II-16〉 참조). 대인배상한도액의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37%의 기업이 2억 원에 가입하고 있고 24.1%의 기업은 보상한도액이 가장 적은 0.1억 원에 가입하고 있다.

〈표 II-16〉 부보기업의 매출액별 대인배상 한도액별 계약 건수(5년 평균)

(단위: 건)

매출액	대인배상 1사고당 한도액										
	0.1억	0.3억	0.5억	1억	2억	3억	5억	10억	20억	30억	50억
5억 이하	6,072	920	611	1,612	11,211	4,297	1,884	804	3	6	2
10억 이하	1,905	131	82	207	2,422	1,597	747	359	3	0	-
50억 이하	1,479	102	66	190	1,947	1,328	691	423	4	2	3
100억 이하	362	30	16	41	436	284	156	103	2	2	0
200억 이하	192	14	6	14	142	118	65	56	2	0	1
500억 이하	258	4	1	2	15	10	6	4	2	1	1
1,000억 이하	108	2	1	1	8	1	1	3	1	-	2
1,000억 초과	175	1	-	-	5	1	2	3	0	2	9
합계	10,550	1,203	782	2,065	16,186	7,636	3,551	1,754	16	13	18
비중	24.1	2.7	1.8	4.7	37.0	17.4	8.1	4.0	0.0	0.0	0.0

주: 생산물배상책임보험만의 실적의 2011~2015년간의 평균치임

자료: 보험개발원

기업 간 보상한도액의 격차를 보면,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이 큰 기업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배상한도액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매출액 1,000억 원 초과한 기업의 경우 보상한도액 0.1억에 가입한 비율이 87%인 반면에 매출액 10억 원 이하 기업은 23%에 불과하고 더 큰 보상한도액에 가입하고 있다.²⁵⁾

25) 최창희(2017)는 보험회사로부터 외감기업 806개사를 조사한 결과, 1억 원 보상한도액을 가입한 기업은 85개사(10.5%), 1억 원~10억 원 이하를 가입한 기업이 282개사(35%)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나, PL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되지 못할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조업체는 PL보험의 보상한도액의 충분성을 확인하고 정부는 PL책임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 확보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국내 기업들은 PL사고로 인한 대물배상책임의 예상손해액이 대인배상책임의 예상손해액보다 낮게 평가하여 낮은 보상한도액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요인은 대물배상이 제품의 결함에 의해 제품자체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라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부보기업의 대물배상 보상한도액을 0.1억 원으로 가입한 기업은 부보기업 전체의 96%가 된다. 또한 대인배상과 유사하게 매출액이 적은 기업이 큰 보상한도액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7〉 부보기업의 매출액별 대물배상 한도액별 계약 건수(5년 평균)

(단위: 건)

매출액	대물배상 1사고당 한도액										
	0.1억	0.3억	0.5억	1억	2억	3억	5억	10억	20억	30억	50억
5억 이하	26,437	111	35	66	615	65	57	25	3	6	3
10억 이하	7,091	46	19	30	203	30	22	10	3	-	-
50억 이하	5,987	28	9	18	136	15	20	12	4	2	2
100억 이하	1,373	7	3	2	31	5	2	4	3	2	0
200억 이하	580	2	1	1	12	5	3	2	2	0	1
500억 이하	279	1	0	1	5	5	5	3	2	1	1
1,000억 이하	114	2	-	0	4	1	1	3	1	-	2
1,000억 초과	177	0	-	-	4	1	2	3	0	2	9
합계	42,038	196	66	118	1,009	128	111	62	17	13	18
비중	96.0	0.4	0.1	0.3	2.3	0.3	0.3	0.1	0.0	0.0	0.0

주: 생산물배상책임보험만의 실적의 2011~2015년간의 평균치임

자료: 보험개발원

국내의 PL보험이 PL사고에 대한 손해보전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실제 사고 시 손해배상액에 대한 보험금을 충분하게 지급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봐야 하나 자료의 한계상 하지 못하고 사례를 통해 유추하고자 한다. 먼저, PL보험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의 보험금 지급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PL보험금은 PL법 시행연도인 2002년에 7.8억 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36.7% 증가하여 2015년 현재 457억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2015년의 건당 지급보험금도 2002년에 비해 매년 12.9% 증가한 8.2백만 원을 보이고 있다.

〈표 II-18〉 사고발생률 및 지급보험금 추이

(단위: 건, 백만 원, %, 배)

연도별	지급 건수	보험금	건당 보험금	사고발생률		
				한국①	일본②	격차①/②
2002	464	788	1.70	3.75	1.20	3.1
2003	1,265	2,340	1.85	8.45	1.20	7.1
2004	2,428	12,475	5.14	15.83	1.37	11.6
2005	2,040	9,761	4.78	11.52	1.27	9.1
2006	2,338	12,952	5.54	12.18	1.41	8.6
2007	2,516	22,421	8.91	12.78	1.60	8.0
2008	3,163	18,362	5.81	14.70	1.50	9.8
2009	3,420	21,324	6.24	14.10	1.47	9.6
2010	4,424	25,338	5.73	16.77	1.48	11.4
2011	4,279	28,556	6.67	15.17	1.47	10.3
2012	4,476	32,907	7.35	15.00	1.66	9.0
2013	4,696	24,268	5.17	14.65	1.47	10.0
2014	6,027	34,111	5.66	17.13	1.44	11.9
2015	5,590	45,737	8.18	12.46	1.37	9.1
CAGR	21.1	36.7	12.9	9.7	1.0	9.9

자료: 1)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2) 일본은 중소기업중앙회 출장 시 제공받은 자료에 기초함

이러한 보험금 규모의 증가는 계약 건수의 증가에 비례할 수 있지만, PL법 시행 이후의 사고율의 증가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보험사고율은 시행 초년도에 3.75%에 불과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 15%에 도달했고 그 이후에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보험계약을 100건 체결하면 10건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우 높은 사고율에 해당된다. 실제 일본의 사고율과 비교하여 볼 때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본보다 사고발생률이 수배나 높지만 손해율이 예정가격 이내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이 낮은 보상한도액을 가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표 II-19〉 최근 2년간 국내 중소기업의 PL보험 지급률

(단위: 만 원, %)

업종별	손해배상액	보험금	보험지급률
제조업	1,694	1,265	74.7
도소매업	693	638	92.1
기타업	10,000	7,900	79.0
업종계	12,387	9,803	79.1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6), 『제품사고 피해대응에 대한 조사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용역보고서, p. 211

둘째, 기업들의 PL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보험은 100% 보전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6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 동안 PL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PL보험금으로 지급한 비율은 업종 전체의 79.1%이며 PL리스크 부담이 큰 제조업은 74.7%로 가장 낮다. 보험이 100% 보전을 하지 못하는 것은 기업이 큰 보상한도액으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사고당 자기부담금 규모가 높아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셋째, 실제 손해배상액에 비해 손해배상 보전기능이 적은 것은 손해배상액과 더불어 변호사 등 방어비용과 손해방지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점에서 나타날 수 있다. PL보험은 PL사고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변호사비용 등 방어비용도 보상한다. 국문약관²⁶⁾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서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등의 방어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보험회사의 협력비용을 보상한다. 이 중에서 손해방지비용은 보상한도액을 초과해도 보상하나, 방어비용과 공탁비용은 보상한도액 내로 보상한다. 이에 따라 PL사고가 발생하여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 변호사비용 등 방어비용 지출이 수반된다. 설상가상으로 낮은 보상한도액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기 전에 법률방어비용으로 전부 지급될 가능성이 있어 보험의 손해배상 보전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경우²⁷⁾ 옥시사는

26) 영문약관인 생산물 및 완성작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은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7) 이투데이(2016. 4. 28), “옥시 가습기 살균제 보험사인 KB손보 “추가 보상 의무 없다”

2009년 당시 KB손해보험에 가입하였으나 2011년 가슴기 살균제 사고가 발생하여 2012년에 17.5억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보상받은 보험금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 등 방어비용으로 지출되었다.

따라서 PL보험은 배상책임보험 성격에 맞추어 PL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상한도액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실제 사고 시 피해자에게 배상이 되지 못하거나, 법률방어비용으로 소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PL보험은 PL사고 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기능을 담보위험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3자에 대한 손해보전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 리스크관리 촉진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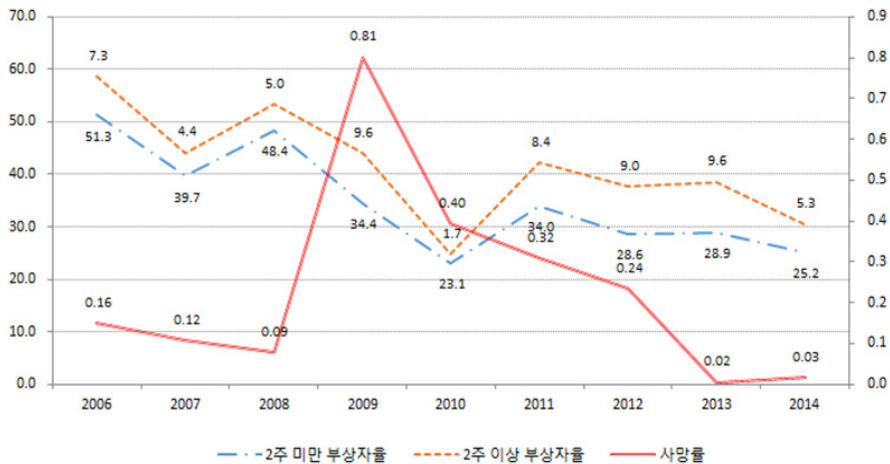
1) PL보험과 리스크관리의 연계 매커니즘

기업은 PL법이 시행되는 경우 결함제품으로 인한 PL리스크 책임 부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PL사고 방지나 손해규모 축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PL보험 가입을 통한 리스크전가 등 리스크관리를 실시해야 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PL사고로 인한 막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에 따라 계속적으로 사업 영위가 곤란해질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 PL법 시행 이후 제품의 결함사고에 대응하는 자세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에 98개 업체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70개 업체(72.9%)가 PL리스크관리를 하고 26개 업체(27.1%)는 리스크관리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PL리스크관리 변화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더 큰 영향을 받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PL시행에 따른 대응방법은 PL보험 가입(87.0%)²⁸⁾이 가장 많았고, 자체결함정보 수집망

28) 2013년 충청지역 중소기업 62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71%의 기업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6개사는 개별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12개 업체는 단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PL리스크관리가 부진한 것을 알 수 있음. 고복수·서준혁(2013),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실태 및 활용방안-충청지역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영공학학회지』, 제18권 제1호, p. 34

구축(46.4%), PL리스크관리를 위한 조직 운영과 리콜의사결정(40.6%)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⁹⁾ 그 결과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상 및 사망사고 발생률은 PL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3〉 위해제품의 부상률 및 사망자율 추이



주: 사망자 및 부상자율은 위해제품 접수 건수 중 사망자 및 부상자 수의 비율임
 자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및 통계분석』, 각 연도

이와 같이 기업은 PL법 시행으로 리스크 통제조치와 PL보험 가입 등의 리스크관리 재무전략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품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PL법 시행 전에 제조사는 제조원가(원재료비, 인건비, 마케팅비용)와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산정된 마진(M)을 합하여 판매가격(TP)을 결정하면 되었다. 그러나 PL법 시행 후에는 PL법 시행 전의 판매가격에 제품안전에 투자한 비용(S)과 향후 제조물의 결함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비용을 합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PL법 시행은 제품의 판매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제품의 사고발생률과 손해배상액 규모에 따라 제품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사가 제품 안전에 투자한 금액(S)에 비해 사고발생

29) 한국소비자보호원(2012), 『기업의 리콜제도 운영현황 및 인식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pp. 27~28

를 $Pr(s)$ 이 줄어들고 손해배상비용(L)이 크게 낮아지는 경우 제품의 가격은 안전투자비(S)에만 영향을 받게 된다.

$$\begin{aligned} TP &= MP + M + S + Pr(s)L \\ &= MP + M + S + IP \\ &= MP + M + S + I_r \times nTP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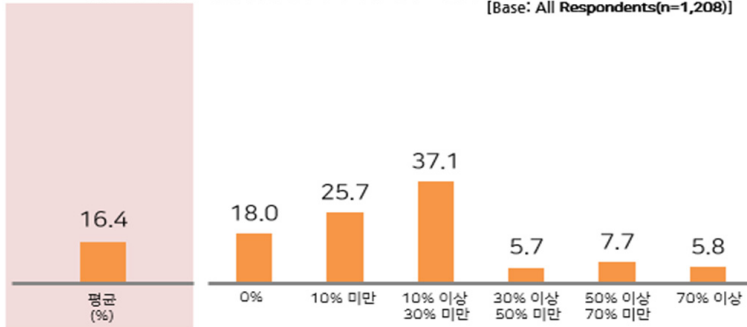
PL보험의 보험료는 연간매출액(nTP)에 보상한도액별 요율(I_r)을 곱하여 책정($IP=nTP \times I_r$)되기 때문에 보험료에 이를 삽입하여 보험요율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즉, PL보험요율은 기업이 투자하는 안전비용이 사고와 손해를 경감하는데 사용 되는 경우에 투자한 안전비용에 비례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_r = \frac{1}{n} \left[1 - \frac{MP + M + S}{TP} \right]$$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업들이 PL사고 방지와 손해 경감 등 리스크관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소비자들은 제품의 가격이 평균 16.4% 상승하더라도 PL보험에 가입한 제품을 구매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18%만 보험 가입에 따른 가격상승을 용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응답자의 19.2%는 30% 이상 상승하더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소비자 인식에 기초하여 보면 기업들이 제품원가에 PL리스크관리에 지출하는 안전비용(S)과 보험료를 반영하여 투명하게 공시하는 경우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4〉 PL보험 가입제품의 가격 상승 용인 의향

※ 문)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품을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 경우, 가입하지 않은 상품대비 어느 정도까지 가격상승이 있더라도 보험가입 제품을 구매하시겠습니까?
(가입하지 않은 제품과 동일한 가격에 구매하고 싶은 경우 0%라고 기재하여 주십시오.)
[Base: All Respondents(n=1,208)]



2) 보험의 리스크관리 촉진 운영현황

Higgins(1978)³⁰⁾는 미국의 주별 제조물책임 사고율에 대한 대리변수로 가정생활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율(Accident rate)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력이 낮은 주는 제조물책임 상해사고율이 낮고 학력이 높은 주는 오히려 제조물책임사고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PL리스크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않고 있는 제조물 시장의 경우에 PL이 제품의 안전 향상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Viscusi and Hersch(1990)³¹⁾은 PL이 기업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PL사고를 줄이기 위해 리스크관리에 노력하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경룡·권오성(1997)³²⁾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리스크관리 통제와 보험 가입 등 재무기법이 PL리스크관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들의 PL리스크 인식을 개선하고 손실통제 기법을 강화하는 등의 리스크

30) Higgins Richard S.(1978), "Product Liability and Product Related Accidents", *7 journal of Legal Studies*, pp. 299~321

31) Viscusi W. Kip and Hersch Joni(1990), "The market Response to Product Safety Litigation", *2 journal of Regulatory Economics*, pp. 215~230

32) 이경룡·권오성(1997), 「한국 수출기업의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관리 성과분석」, 『리스크 관리연구』, 제8권 0호, pp. 1~34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이 수행하는 리스크통제는 사고발생과 손실규모를 축소하는 것이고 리스크재무인 보험은 기업의 리스크관리 실태나 결과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하여 PL리스크를 인수하게 된다. 보험의 인수과정인 보상한도액 등 인수조건의 결정, 보험약관의 사용, 보험요율 적용은 기업의 리스크관리를 촉진한다.

PL보험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상한도액(Limit of liability)과 재물보험과 다른 두 가지 담보기준(Coverage trigger)의 보험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가입하는 보상한도액은 일반보험의 보험 가입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상한도액을 낮게 하여 보험에 가입하면 기업이 리스크를 보유하는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기업의 PL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약정된 보상한도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보험계약 갱신 시에 보상한도액을 낮추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PL리스크관리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PL보험은 손해사사고기준 증권과 배상청구기준 증권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의 PL사고 리스크가 큰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기준 증권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는 최근 8년간 체결된 PL보험계약 중 76.5%를 손해사사고기준 증권으로 계약하였고 나머지 23.5%는 배상청구기준 증권으로 하였다. 보험료 비중에서는 손해사사고기준 증권이 54.6%를 차지한다.

이론적으로는 손해율은 배상청구기준이 손해사사고기준보다 낮고 연도별 편차가 적어야 한다. 왜냐하면 손해사사고기준은 미보고발생손해액(IBNR)³³⁾을 전부 반영하지 못하고 보험금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³⁴⁾ 적절한 보험료 산정이 곤란하여

33) 미보고 발생손해액(Incurred but not reported)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 회사에 청구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을 추정하여 부채인 책임준비금 중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함(금융감독원(2011), 『금융감독용어사전』)

34) 손해사사고증권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청구하여도 보상해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소송이 걸린 경우 금리 등 물가 상승이나 손해배상액의 증가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당초 추정된 보험금보다 크게 증가하고 적립된 준비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음. 1980년대 미국에서는 이러한 요인으로 배상책임보험료를 매우 인상하여 보험시장의 실패가 발생한 배상책임보험위기가 발생하였고 손해사사고증권을 배상청구증권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음(https://en.wikipedia.org/wiki/Liability_insurance_crisis, 2017. 8. 8)

손해율도 높고 변동성이 배상청구기준 증권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차이를 국내 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어 미국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 II-20〉 PL담보 보험약관별 계약 건수 추이

(단위: 건, 백만 원)

연도	손해사고기준		배상청구기준		합계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2008	14,019	51,259	6,611	24,181	20,630	75,440
2009	18,159	50,816	5,021	26,527	23,180	77,343
2010	20,033	52,204	5,361	33,205	25,394	85,410
2011	21,194	56,296	6,197	38,492	27,391	94,788
2012	22,626	55,717	6,425	37,861	29,051	93,578
2013	24,207	47,811	8,013	69,792	32,220	117,604
2014	26,861	50,304	8,537	56,641	35,398	106,945
2015	35,240	53,642	9,848	61,517	45,088	115,158
합계	182,339	418,050	56,013	348,216	238,352	766,266
비중	76.5	54.6	23.5	45.4	100.0	100.0

주: 영업배상 및 지자체, 생산물배상의 합계이며, 코드 누락분은 제외된 것임
자료: 보험개발원

미국의 최근 10년(2005~2014)간 손해사고증권은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83.3%가 적용되었으며, 원수손해율은 손해사고증권이 배상청구기준보다 각각 3.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약자가 어떠한 담보증권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과 손해배상책임 기간에 영향을 미치므로 리스크관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손익에도 영향을 준다.³⁵⁾

35) 담보기준의 선택에 따라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건축배상책임보험 제외)는 법으로 손해사고기준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배상청구기준을 사용하는 경우 보고연장담보기간을 프랑스는 5년 룩셈부르크는 3년으로 정하고 있음. 독일과 이탈리아 등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배상청구기준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Expert Group on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2013), "Discussion Paper 5: Liability Insurance", pp. 4~5

〈표 II-21〉 미국 PL보험 증권별 구성비 및 손해율(2005~2014)

(단위: 억 달러, %)

구분	원수경과보험료		원수발생손해액		손해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손해사고증권	346	83.3	224	84.0	64.9
배상청구증권	69	16.7	43	16.0	61.3
계	415	100.0	267	100.0	64.3

자료: AM Best(2016), "Best's Aggregate & Averages Property & Casualty"

보험요율체계(Rating plan)도 계약자의 리스크관리를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통상 보험요율체계는 기본보험요율에 각종 할인할증요율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구조이다. 기본보험요율은 통상 등급요율체계로 되어 있고, 할인할증은 계약자의 사고발생 빈도와 심도를 감소시키는 부분을 척도로 하여 보험료를 차등하고 있다. PL보험의 기본요율은 일반제조물, 음식물류(일반음식물, 건강보조식품), 완성작업위험별로 기본보상한도액별(1사고당, 연간 한도액 각각 1,000만 원), 매출액별 기본요율이 정해져 있고 기본보상한도액을 넘어서는 경우에 보상한도액 인상계수를 적용한다. 이렇게 산출된 기본보험료에 적용하는 할인요율로 Q마크 등 제품안전 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에 대하여 5% 할인을 적용한다. 인증마크를 부착한 보험계약은 2009~2013년의 경우 21.7%나 된다. 이들 기업은 그러하지 못한 기업에 비해 손해율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⁶⁾

36) 손해율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분석하지 못하였음

〈표 II-22〉 인증마크 할인을 적용 계약

(단위: 건, 백만 원)

연도	인증마크 부착 할인		인증마크 미부착		합계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2008	651	1,134	20,438	88,975	21,089	90,109
2009	3,728	21,678	19,850	73,216	23,578	94,893
2010	6,256	26,459	19,746	78,456	26,002	104,915
2011	6,765	28,267	21,255	86,735	28,020	115,001
2012	7,170	33,732	22,036	80,378	29,206	114,110
2013	6,276	35,097	25,786	84,873	32,062	119,970
2014	45	201	35,130	104,146	35,175	104,348
2015	36	81	44,821	113,070	44,857	113,150
합계	30,927	146,647	209,062	709,849	239,989	856,497
비중	12.9	17.1	87.1	82.9	100.0	100.0
	21.7	26.5	78.3	73.5	100.0	100.0

주: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만의 실적임

2) 비중의 하단은 2009~2013년의 실적 기준임

자료: 보험개발원

라. 국민경제적 기능

PL보험은 PL사고 시에 보험이 없는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한다. PL보험은 PL사고 시에 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지속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발전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보험의 리스크관리 촉진 기능을 통해 제품의 혁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여 미연의 사고 방지를 통해 PL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지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PL보험은 PL사고 시에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보험금부의 혜택을 보고 제3자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PL사고 시에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사고로부터 회복과 신속한 사회활동으로의 복귀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렇듯 PL보험은 PL사고 시에 기업의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견인하고 소비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구가 가능해져 국민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Ⅲ. 소비자의 PL법과 보험에 대한 인식

1. 조사방법

2002년 7월 PL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가슴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다수의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조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PL법과 보험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 1,208명을 대상으로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온라인조사(Web survey)를 2017년 3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PL법에 대한 인식 11개 문항, 소비자의 제조물 소비행태 8개 문항, 제조물사고 피해 및 피해배상경험 10개 문항, PL보험 인지 및 선호도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의 표본은 성, 연령, 지역에 따른 층화표본 추출(Stratified sampling)을 하였으며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Ⅲ-1〉 설문조사 표본 구성 내역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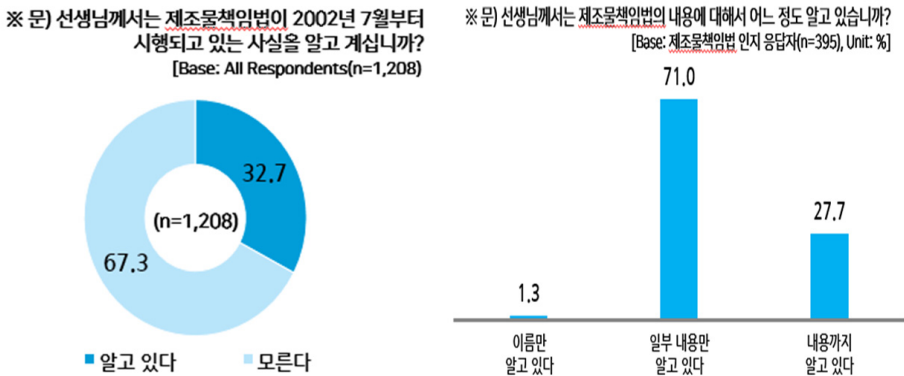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
전 체		1,208	100.0
성별	남성	600	49.7
	여성	608	50.3
연령	19~29세	193	16.0
	30대	220	18.2
	40대	252	20.9
	50대	246	20.4
	60대	296	24.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0	2.5
	고졸	322	26.6
	대졸	740	61.2
	대학원졸 이상	116	9.6
거주 지역	대도시	599	49.6
	중소도시	519	43.0
	읍면부	90	7.4
월평균 소득	월평균 100만 원 미만	44	3.6
	월평균 100만 원~200만 원 미만	126	10.4
	월평균 200만 원~300만 원 미만	209	17.3
	월평균 300만 원~400만 원 미만	245	20.3
	월평균 400만 원~500만 원 미만	223	18.5
	월평균 500만 원~600만 원 미만	144	12.0
	월평균 600만 원~700만 원 미만	73	6.1
	월평균 700만 원~800만 원 미만	56	4.6
	월평균 800만 원~ 900만 원 미만	37	3.1
	월평균 900만 원~1,000만 원 미만	17	1.4
	월평균 1,000만 원 이상	33	2.8
직업	농/임/어/축산	16	1.4
	자영업	101	8.3
	블루칼라	174	14.4
	화이트칼라	466	38.6
	공무원/군인	30	2.5
	전업주부	217	18.0
	학생	74	6.1
	무직/기타	130	10.8

2. PL법 인식 및 제품구매 행태

가. PL법 인식

2002년 PL법이 시행되었지만 67.3%의 응답자는 PL법 시행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구매한 제조물에서 PL사고가 발생해도 배상책임 주체가 누구이고 손해배상 범위 등을 모르기 때문에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2.7%(395명)만 PL법 시행 여부를 인지하고 있지만, 그 중 세부적인 내용까지 아는 사람은 27.7%에 불과하다. 또한 응답자의 학력이 낮거나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PL법 인지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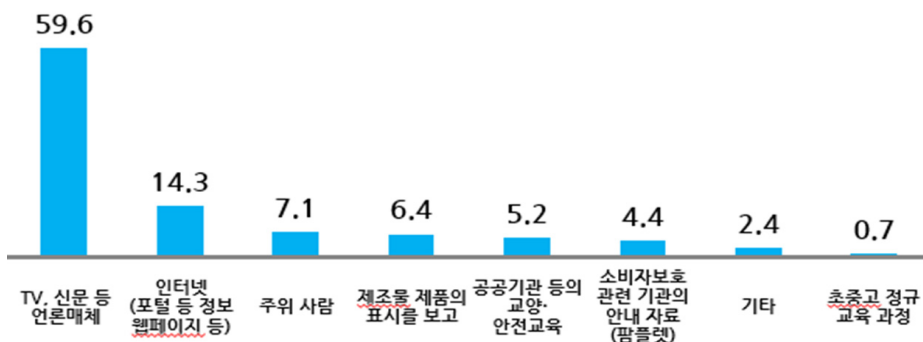
〈그림 III-1〉 PL법 인지(n = 1,208) 및 인지수준(n = 395)



PL법 시행을 알고 있는 소비자(전체 응답자의 33%) 중에 73.9%가 TV나 신문 등 언론 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 PL법을 알게 되었으며, 그 외에 주위사람을 통하거나 제조물의 표시를 보고 안 것으로 조사되었다. PL법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PL법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자는 27.7%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일부내용만 알거나 아예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PL법의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학교 교육이나 소비자보호단체에서의 PL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림 Ⅲ-2〉 PL법 인지 경로(n = 395)

※ 문) 선생님께서서는 제조물책임법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Base: 제조물책임법 인지 응답자(n=395), Uni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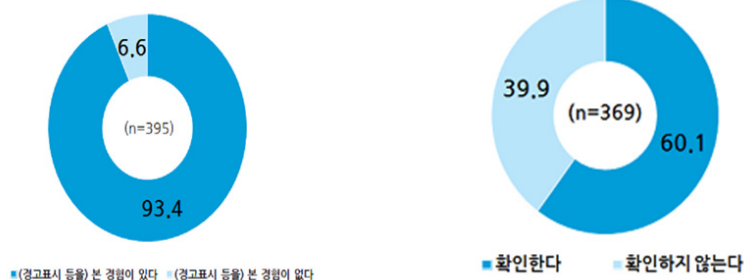


나. 제조업체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

PL법 시행을 알고 있는 응답자(395명)의 93.4%는 PL법 시행 이후 제조물을 구매할 때 제품의 안전사용과 경고표시의 부착을 보았다고 응답했으며 학력이 높은 대학원 졸업자는 모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고표시를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일지라도 60.1%의 소비자만이 제품구매 시에 그 내용을 읽어보고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이 확인비율이 높고 낮은 연령일수록 확인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젊은 사람들의 위험관리에 기초한 소비행태를 알 수 있었다.

〈그림 Ⅲ-3〉 제품 구매 시 경고표시의 경험(n = 395) 및 확인 여부(n = 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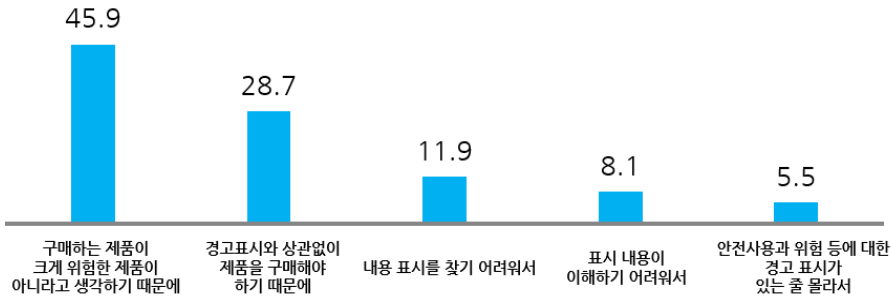
※ 문) 제조자는 제조물(제품)의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사용과 경고표시 부착 등의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 문) 선생님께서서는 제조물(제품) 구매 시, 제조물(제품)의 안전사용과 선생님께서서는 제조물(제품) 구매 시 예시와 같은 안전사용과 경고표시 등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Base: 제조물책임법 인지 응답자(n=395), Unit: %] [Base: 안전사용/경고표시 경험 있는 응답자(n=369), Unit: %]



한편 경고표시를 경험한 소비자의 39.9%인 147명은 제조물을 구매할 때 안전사용이나 경고표시를 확인하는 않는 이유로 ‘구매하는 제품이 크게 위험한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45.9%가 응답했고, ‘경고표시와 상관없이 제품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으로 28.7%, ‘내용표시를 찾기 어려워서’라고 11.9%가 응답하였다.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는 PL법의 경고상의 결함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사항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림 Ⅲ-4〉 제품 구매 시 안전사용 경고표시의 미확인 이유(n =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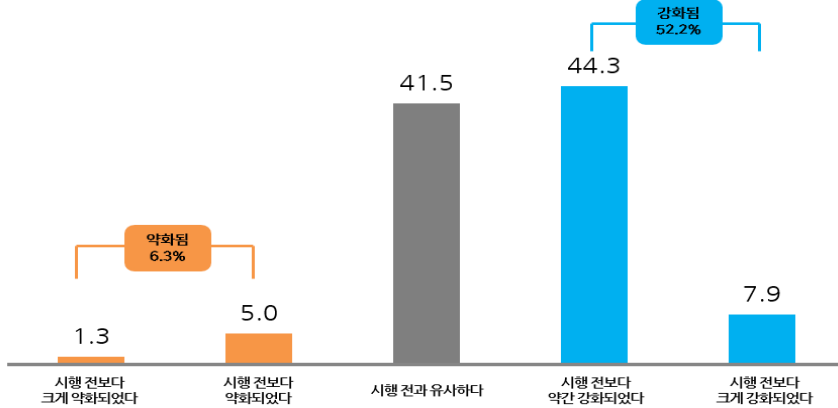
※ 문) 선생님께서는 제조물(제품)의 안전사용과 위험 등에 대한 경고 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Base: 제조물책임법 구입시 안전사용/경고표시 미확인 응답자(n=147), Unit: %]



PL법 시행을 알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PL법 시행 이후 제조사들의 PL사고 방지를 위한 경고표시 부착 등 리스크관리 강화 여부를 질문한 결과, 52.2%의 소비자가 ‘강화되었다(시행 전보다 약간 + 시행 전보다 크게 강화되었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6.3%만 ‘약화되었다(시행 전보다 크게 + 시행 전보다 약화되었다)’라고 판단하였다. 경고표시 대책의 약화에 대해서는 20대 이하 소비자가 13.0%로 높게 인식하고 있고 대학원 졸업자도 10.3%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5〉 PL법 시행 이후 경고표시 대책 강화 여부(n = 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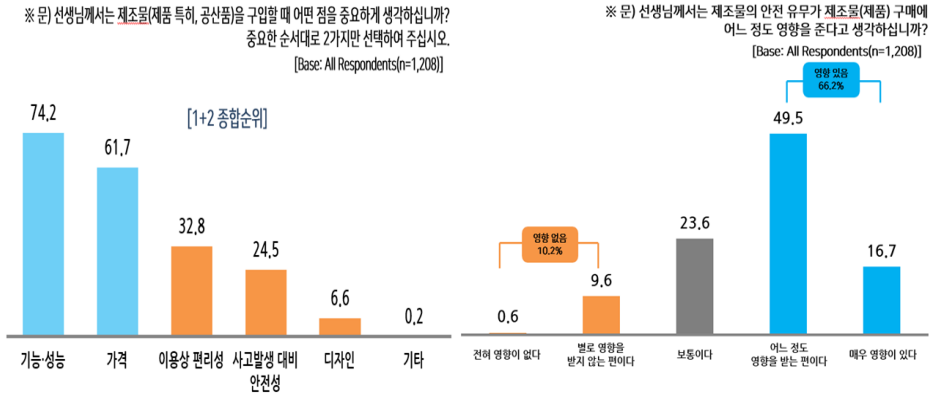
※ 문)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 제조물(제품)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사용과 경고표시 부착 등의 대책이 시행 전보다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 제조물책임법 인지 응답자(n=395), Unit: %]



다. 제품 구매의식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PL사고 등 안전을 고려하여 구매행태가 달라지는지를 조사하여 본 결과, 안전성은 구매 시의 중요한 요소로는 보지 않지만 실제 구매할 때 안전성에 대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제조물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1가지를 적시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74.2% 소비자가 제조물의 기능과 성능, 61.7%가 가격, 32.8%가 이용상의 편리성을 들었고, 제조물의 안전성은 24.5%에 불과했다. 또한 제조물 구매 시의 전체적인 고려요인에서 안정성 요인은 적지만, 66.2%의 소비자는 제품의 안전성 여부가 실제 구매 시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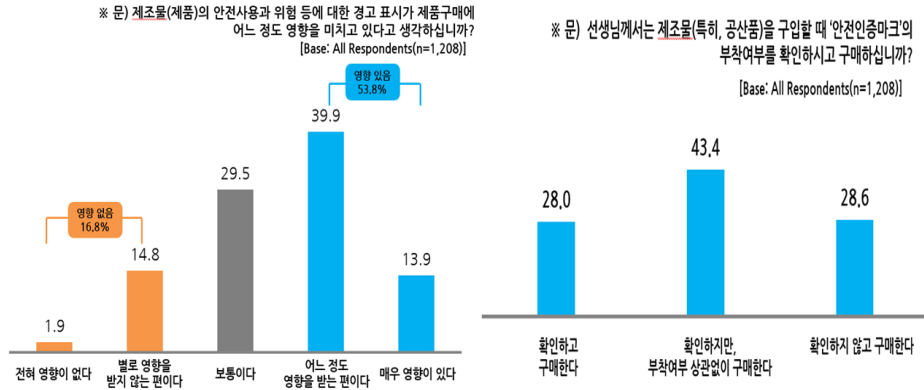
〈그림 Ⅲ-6〉 제조물의 구매 고려요인 및 안전 유무 영향(n = 1,208)



PL법 도입 이후 제조업체들은 제품의 안전사용 등에 대한 경고표시를 강화하고 있고 이에 대해 소비자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제조사는 제품의 안전성을 공인시험기관 등으로부터 인증받은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부착하고 홍보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의 제품 구매 시에 안전인증마크 부착표시는 53.8%(매우영향 13.9% + 어느 정도 영향 39.9%)의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16.8%의 소비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제품 구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28%는 제품을 구매 시에 안전인증마크 부착내용을 확인하고 구매하며, 43.4%는 부착여부와 무관하게 구매하고, 28.6%는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들은 제조물의 안전인증마크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마케팅 전략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7〉 경고표시 부착제품 구매영향 및 인증마크부착 확인 여부(n = 1,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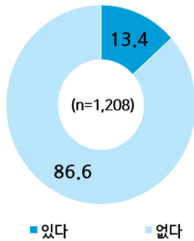
3. 최근 5년간 PL사고 경험

가. 피해경험 및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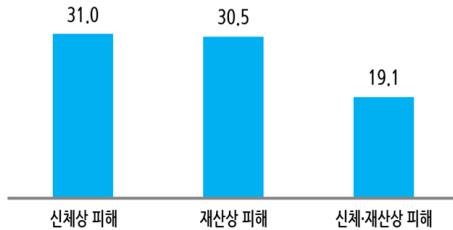
PL법 시행 이후 최근 5년 동안 소비자 또는 소비자 가족의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경험에 대해 질문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n = 1,208)의 13.4%가 PL사고 피해를 경험했으며, 남성(10.1%)보다는 여성(16.6%)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경험이 없다'에 대해서는 남성이 89.9%로 여성(83.4%)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사용빈도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Ⅲ-8〉 PL사고 피해경험(n = 1,208) 및 피해유형(n = 162)

※ 문) 선생님 또는 가족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Base: All Respondents(n=1,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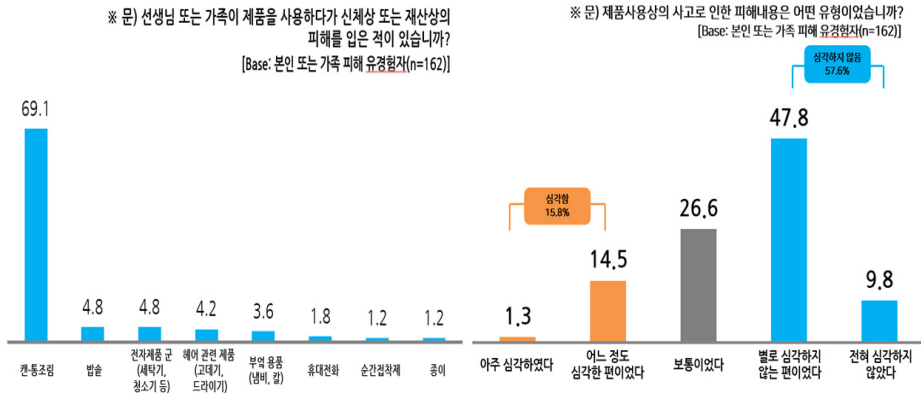
※ 문) 선생님 또는 가족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Base: 본인 또는 가족 피해 경험자(n=162)]



PL사고의 피해자(n = 162) 중 31%가 신체상 피해, 30.5%가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신체·재산상 피해를 동시에 입은 소비자는 19.1%이다. PL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은 ‘신체상 피해’는 평균 31.0만 원으로 가장 크고, ‘재산상 피해’(30.5만 원), ‘신체·재산상 피해’(19.1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체상 피해의 경우 큰 금액을 보인 집단을 보면, 남성이 평균 83.1만 원으로 여성(4.3만 원)보다 높고, 연령대에서는 60세 이상의 소비자가 피해정도가 평균 122.3만 원으로 가장 높다. 그리고 학력별 차이에서는 대졸이 평균 43.7만 원으로 다른 학력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 동안 PL사고 피해자 162명이 겪은 제조물은 캔과 통조림이 69.1%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밥솥(4.8%), 전자제품군(4.8%), 헤어 관련 제품(4.2), 부엌용품(3.6%), 핸드폰(1.8%) 순으로 나타났다. PL사고의 피해 심각성은 15.8%(매우 심각 1.3% + 보통심각 14.5%)만 심각하였고, 57.6%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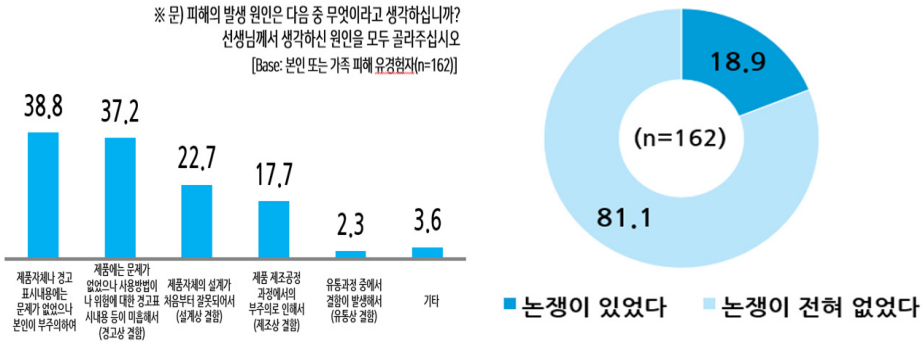
〈그림 Ⅲ-9〉 피해 제조물 종류 및 심각성(n = 162)



나. 피해원인 및 손해배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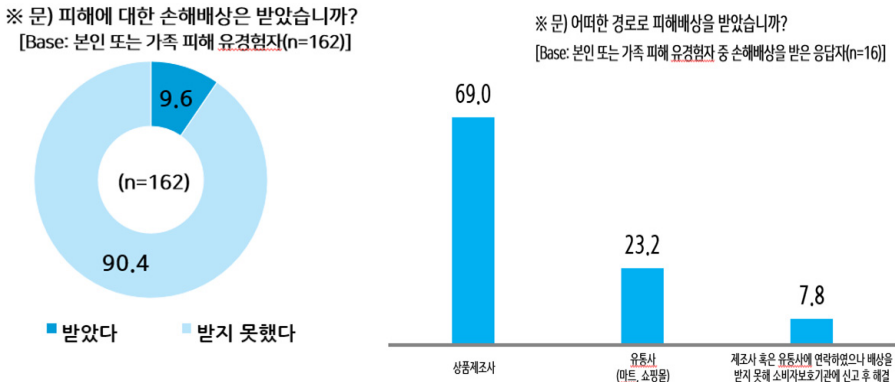
PL피해를 경험한 소비자가 생각하는 사고원인은 38.8%가 본인이 부주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응답했고, 기타는 제조사의 결함이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사 등의 원인을 보면 제품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용방법이나 위험에 대한 경고표시 미흡이 37.2%로 많고 다음이 설계상 결함 22.7%, 제조상 결함 17.7%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판매 및 유통상의 결함으로도 응답자의 2.3%가 응답하여 손해배상주체의 범위를 유통사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피해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18.9%가 논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손해배상에 대한 논쟁은 주로 제조사의 과실 여부, 결함발생에 대한 입증책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0〉 PL사고 피해원인 및 논쟁 유무(n = 162)



피해 소비자의 손해배상 여부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 162명 중 9.6%만 손해배상을 받았으며, 90.4%는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PL사고를 겪은 여성 소비자의 96.2%가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PL사고를 겪은 남성 소비자가 보상을 못 받은 비율(80.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손해배상은 여성보다 남성이 전체 평균보다 많은 19.2%가 보상받았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받은 소비자 중 69.0%는 ‘상품 제조사’를 통해 피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통사(마트, 소핑몰)’(23.2%), ‘제조사 혹은 유통사에 연락하였으나 배상을 받지 못해 소비자보호기관에 신고 후 해결’(7.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1〉 PL사고 손해배상 여부(n = 162) 및 배상경로(n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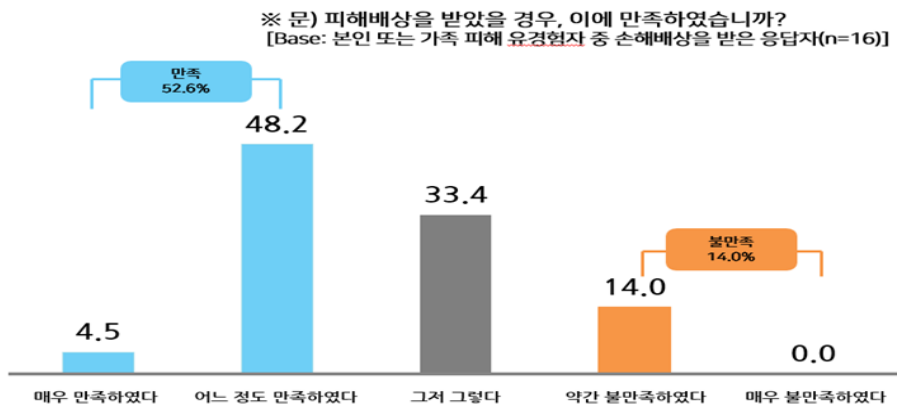
손해배상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52.6%는 손해배상 만족도에 대해 ‘만족하였다’(매우 + 어느 정도 만족하였다)라고 응답했고, 33.4%는 기대한 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비해 14.0%의 피해보상자는 손해배상에 대해 ‘불만족’(약간 + 매우 불만족하였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4. PL보험 인식

가. 보험 가입방식 및 가입제품 선호도

소비자의 PL보험 인식을 확인하고 PL보험의 역할 제고의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PL보험 가입방식, 제품 구매 시 보험확인 여부 및 보험 가입제품 선호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림 Ⅲ-12〉 PL사고 손해배상의 만족도(n = 16)



먼저, 국내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자 등에게 무과실책임과 입증책임 추정 조항 등을 도입하고 있을 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화 하는 등의 배상책임 이행수단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PL법 시행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PL법상

PL보험 가입방식을 조사한 결과 26.0%만 임의가입방식임을 인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르거나(29.6%), 의무보험방식으로 인식(44.4%)하고 있다.

〈표 Ⅲ-2〉 PL보험 가입방식의 인식(n = 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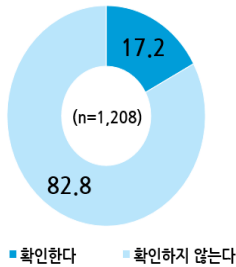
(단위: 명, %)

주요 분야별		사례 수	자동차책임보험법 처럼 제조자가 의무가입해야 한다	일반보험처럼 제조자가 임의가입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395	44.4	26.0	29.6
성별	남성	230	41.7	30.8	▲ 27.6
	여성	165	48.3	19.3	▽ 32.4
연령	20대 이하	46	36.6	32.3	31.2
	30대	59	47.3	30.1	22.6
	40대	79	38.1	31.3	30.6
	50대	96	46.6	25.1	28.3
	60세 이상	116	48.6	18.6	▽ 32.8
최종 학력	중졸 이하	6	42.0	41.5	16.6
	고졸	91	37.9	25.5	36.7
	대졸	245	46.8	24.5	28.8
	대학원졸 이상	53	45.0	32.3	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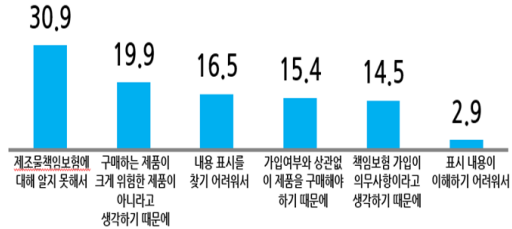
둘째, 소비자의 17.2%만 제조물 구매 시에 PL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82.8%의 소비자는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확인은 학력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응답비율이 높았다. 한편 PL보험 가입을 확인하지 않는 1,001명 중 30.9%의 소비자는 PL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하고 19.9%는 위험한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림 Ⅲ-13〉 PL보험 가입 여부 확인(n = 1,208) 및 미확인 이유(n = 1,001)

※ 문) 선생님께서는 제조물(제품)을 선택 또는 구입 시, 제조물책임보험의 가입여부를 확인하십니까?
[Base: All Respondents(n=1,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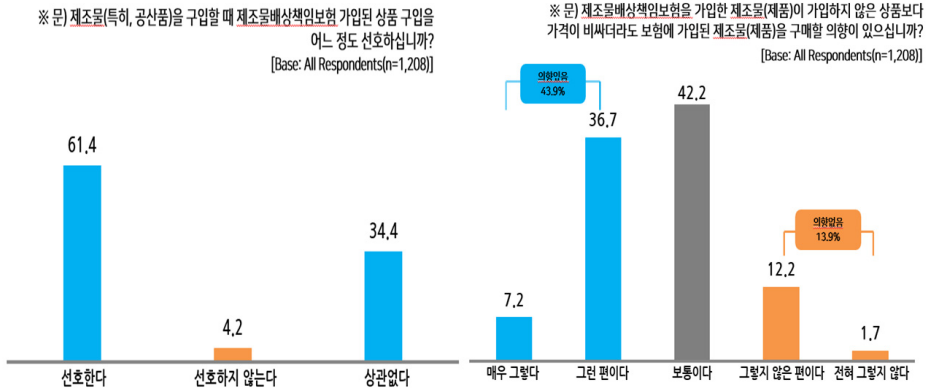
※ 문) 선생님께서는 제조물(제품)을 선택 또는 구입 시, 제조물책임보험의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Base: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미확인 응답자(n=1,001), Unit: %]



셋째, 61.4%의 소비자가 제조물을 구매할 때 PL보험에 가입한 제조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4.4%는 가입여부에 관심이 없으며, 4.2%만이 보험 가입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여성(65.6%)과 60세 이상 연령층(72.7%)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소비자가 PL보험을 가입하여 가격이 비싸더라도 보험 가입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43.9%(매우 그렇다 7.2% + 그런 편이다 36.7%)가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13.9%는 ‘의향이 없다’라고 했으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포함하면 56.1%가 구매할 의향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매의향은 여성(47.5%), 60세 이상(52.4%), 대학원졸 이상(53.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외에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상품보다 값싼 미가입 제조물의 구매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20대 이하 그룹에서 비교적 높았다(24.0%).

따라서 제조기업과 보험회사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감안하여 자사 제품의 PL보험 가입내역을 인식시키고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제품의 경우 PL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지만 생필품이나 위해가능성이 큰 제품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검토할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Ⅲ-14〉 제조물 구매 시 보험 가입제품 선호도 및 구매의향(n = 1,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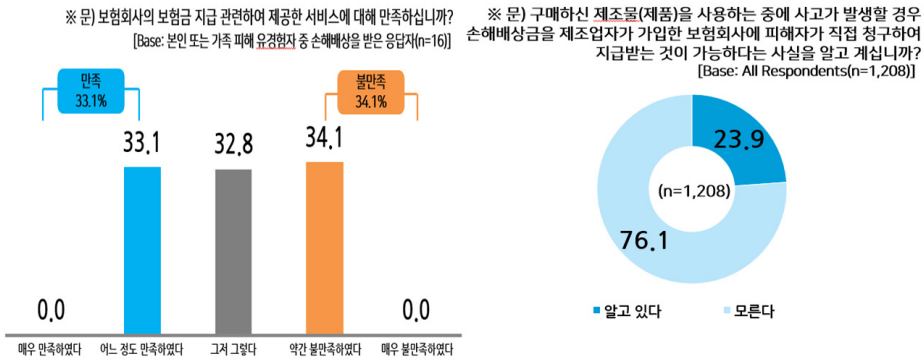


나. 보험금 지급 만족도

최근 5년간 PL사고의 피해를 경험하고 손해배상을 받은 소비자 16명에 대해 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서비스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보았다. 그 결과 ‘불만족하였다’(약간 불만족하였다 + 매우 불만족하였다)라는 응답은 34.1%로 ‘만족하였다’(매우 만족하였다 + 어느 정도 만족하였다)(33.1%)라는 응답보다 1.0%p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매우 적은 표본에서 나타난 것으로 100% 신뢰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배상책임보험의 특성상 제3자가 보험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의 평판이나 신뢰도 측면에서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배상책임보험의 하나인 PL보험은 일반보험과 다르게 보험계약자 이외의 피해자가 손해배상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청구제도를 상법과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대부분인 76.1%는 알지 못하고, 23.9%만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청구권제도를 알고 있는 소비자군은 연령이 높을수록(60세 이상: 30.4%), 학력이 높을수록(대학원졸 이상: 34.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5〉 PL보험금 지급 시 서비스 만족도(n = 16) 및 제3자청구권 인지도(n = 1,208)



5. PL보험 역할 제고 측면 시사점

가. PL책임 이행방법 개선

국내 PL법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제조자 등의 PL책임 이행은 보험 가입 또는 적립금 등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적립금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들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제조물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PL책임 이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PL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89.1%의 소비자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제조물에 대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52.8%의 소비자는 PL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경우에 제조물의 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p. 91 및 부록 참조).

이처럼 소비자는 PL사고에 대한 책임 이행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PL법이나 제조물의 안전과 관련된 법규 및 제도에서 PL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보험소비자 교육 확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67.3% 소비자는 PL법이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음에도 PL법의 시행내용을 모르고 있고, PL법 시행을 알고 있는 32.7%의 소비자도 내용까지 알고 있는 비율은 2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의 9%). 또한 응답자의 23.9%의 소비자만 배상책임보험의 특징인 제3자청구권제도를 알고 있어 PL법과 보험제도 전체를 아는 소비자는 아주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배상책임보험 수익자임을 인지하고, 일상생활 중에 PL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교육 프로그램에 PL법과 PL보험을 추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교육은 소비자 자신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개념으로 되어 있으나, 제품의 소비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서 제3자의 지위에서 배상책임보험의 수급자가 될 수 있음을 이해시킬 경우 제조업체들의 PL리스크관리에 대한 경각심과 필요성은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의 인식이 확산되면 기업들의 보험 가입을 통한 리스크관리가 확산될 것이다.

다. 리스크관리 실태 연계 보험제도 운영

PL법 시행을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제품의 구매 시에 안전사용이나 경고표시의 부착내용을 93.4%가 본 경험이 있고 이 중에서 60.1%(전체 소비자의 56.1%)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구매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L보험은 안전마크 부착 시 보험료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보험연계 방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기능 외에 기업의 전반적인 PL리스크관리와 연계할 수 있는 경험요율과 스케줄요율제도 도입도 병행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라. 보험금 지급 서비스 제고

최근 5년간 소비자의 13.2%가 PL사고 피해를 경험하고 이 중에서 9.6%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점

에서 피해 소비자의 ‘대다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거나 ‘보통이다’라고 응답했다. 특히 제3자가 수급자인 배상책임보험의 지급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잘한다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충분하게 보상하는 것에만 국한될 수 있다. 피해자는 보험계약당사자 관계가 아니므로 제3자의 지위에 맞는 보험금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 마케팅 활용

배상책임보험의 제3자는 보험금 수익자에 해당한다. 물론 보험수익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3자청구권의 인식이 확산되는 경우 지급보험금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손해율이 상승할 수 있다. 이것은 배상책임보험의 본질이므로 본질에 부합한 역할이 제고되는 것은 당연하다. PL보험의 계약자가 아닌 제3자는 현재나 미래의 잠재 보험소비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타사의 계약자가 자사의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부합한 홍보 전략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IV. 일본 PL보험 운영현황과 시사점

1. PL보험시장 규모

일본의 2015년 원수 손해보험료는 9조 635억 엔으로 매년 0.68% 성장하고 있으며 이 중 배상책임보험이 5.9%를 점유하고 있다.³⁷⁾ PL보험을 포함하고 있는 배상책임 보험은 2015년 기준으로 5,341억 엔으로 매년 2.3% 성장하고 있으며 PL보험과 사이버배상책임보험 등과 같은 새로운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PL보험은 1995년 PL법 시행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왔으며 2015년 현재 1,386억 엔으로 손보 전체의 0.03%를 점유하고 있다.

〈표 IV-1〉 일본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억 엔, %)

종목 연도	화재 보험	해상 보험	자동차 보험	상해 보험	특종보험		합계
					소계	배상책임	
2006	14,551	3,036	46,474	12,937	8,292	4,369	85,290
2007	14,023	3,174	45,367	12,054	8,282	4,386	82,900
2008	14,023	2,985	43,158	11,099	8,534	4,401	79,799
2009	13,981	2,484	42,193	10,256	8,922	4,747	77,836
2010	13,159	2,573	42,376	10,403	8,966	4,749	77,477
2011	13,773	2,572	43,678	10,677	9,223	4,764	79,923
2012	14,134	2,611	45,235	10,295	9,648	4,892	81,923
2013	14,523	2,811	47,734	10,134	10,486	5,173	85,688
2014	15,148	2,869	48,928	10,373	10,898	5,232	88,216
2015	15,912	2,838	50,121	9,995	11,769	5,341	90,635
CAGR	1.00	-0.75	0.84	-2.83	3.97	2.26	0.68
구성비	17.6	3.1	55.3	11.0	13.0	5.9	100.0

주: 구성비는 2015년 기준임

37) 2015년 보험종목별 구성비는 자동차보험 55%, 화재보험 17.6%, 특종보험 13.0%, 상해보험 11.0%, 해상보험 3.1%임

동 연구로 방문하였던 미쯔이스미토모사의 경우 PL보험료(간사사분)는 2015년 189억 엔으로 연평균 10.8% 성장하고 있으며, 전체배상책임보험료 808억 엔의 23.4%를 점유하고 있다. 이 중 국내 PL보험료는 103억 엔으로 매년 8.2% 성장하고 있고, 해외 PL보험료는 86억 엔으로 매년 14.2% 성장하고 있다. 손해율의 경우 국내 PL은 2013년 38.6%에서 2015년 52.4%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해외 PL은 2013년 69.7%에서 2015년 32.6%로 크게 낮아졌으며, 전체적으로 50% 이하로 하향 추세에 있다.

미쯔이스미토모사에 따르면 일본의 PL보험 계약방식은 주로 개별계약이며 중소기업의 업종별 단체를 통한 단체계약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의 단체계약은 중소기업 3단체(일본상공회의소, 전국 상공회연합회, 전국 중소기업단체중앙회)의 산하 협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V-2〉 미쯔이스미토모사의 PL보험료 및 보험금 추이

(단위: 억 엔, %)

연도	보험료			보험금			손해율		
	국내	해외	소계	국내	해외	소계	국내	해외	소계
2013	88	66	154	34	46	80	38.6	69.7	51.9
2014	89	73	162	39	39	78	43.8	53.4	48.1
2015	103	86	189	54	28	82	52.4	32.6	43.4
CAGR	8.2	14.2	10.8	26.0	-22.0	1.2	16.5	-31.7	-8.6

자료: 일본 미쯔이스미토모사

2. 보험상품 운영현황

가. 보험약관

1) 보험약관 구성 및 특징

일본의 배상책임보험은 약관과 요율을 미국의 것을 모델로 하여 1957년에 도입하였다. 미국의 보험약관은 보험운영이나 환경변화에 따른 요인으로 1966년, 1973년, 1986

년, 2013년에 걸쳐 변경이 되었지만 일본은 변경이 되지 않았다. 일본의 PL보험은 배상 책임보험의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2010년 4월 보험법 개정에 따라 개정이 있는 후에 현재까지 담보위험 등 본질적인 측면에서 개정없이 판매하고 있다. 일본의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들은 독립적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상품을 개발하기보다는 영업 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에 생산물배상책임 담보 특약을 부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영문약관과 일본어약관이 사용되고 있으며, 영문약관은 해외 수출용 제조물에 적용하며 전 세계를 담보지역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생산물배상책임 특약을 첨부하는 방식과 기업의 배상책임을 포괄담보하는 방식으로 생산물배상책임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는 과거부터 판매해 왔던 방식임에 비해 후자는 최근 기업의 니즈에 의해 개발된 계약방식이다.

먼저 미쯔이스미토모사의 종합보험상품을 보면, 상품명칭이 「비즈니스프로바이더」인 기업종합배상책임보험은 생산물배상책임담보와 기업의 사업활동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리스크를 한 증권으로 담보한다. 그리고 해외 수출업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해외 수출용 비즈니스프로바이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동 기업종합배상책임보험은 하나의 증권으로 시설리스크, 업무리스크, 생산물리스크, 확장담보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담보하며 계약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특약을 제공한다. 동 보험에 첨부되는 약관은 하나의 약관이 아니라 영업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에 배상책임보험 추가특약, 기업종합배상책임 특별약관, 비즈니스프로바이더 특약, 기타 특약을 첨부하는 방식이며, 담보하는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

〈표 IV-3〉 미쯔이스미토모사 기업종합배상책임 상품

구분		Basic Plan	Premium Plan
기본 담보 리스크	시설 리스크	시설관리불비 사고, 설비관리불비 사고, 승강 기사고, 급배수관누수손해, 구내전용차사고	임대 이벤트 시 설손괴손해
	업무 리스크	업무 중에 제3자에게 발생한 사고, 해외출장 중의 배상책임 사고, 작업대상물에서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수탁재물손해 보상
	생산물, 작업결과 리스크	제조물배상책임손해, 작업결과로 생긴 배상 책임손해, 불량완성품손해, 불량제조물손해, 생산물 또는 작업의 목적물자체의 손해, 해외 유출된 생산물 발생손해	리콜비용보상
	기타 리스크	방문자 재물손괴보상, 인격침해보상, 광고선 전침해보상, 재물손괴를 수반하지 사용불능 손해보상, 피해자 치료비 등 보상, 초기대응 비용보상, 소송대응비용보상, 브랜드이미지 회복비용보상	- 데이터 손 괴 복구비용 - 열쇠작성비용 보상
선택특약 담보 리스크		식중독과 특정감염증 이익보상, 임대부동산 손괴보상, 네트워크 위험보 상, 고용관행배상책임보상, 사용자배상책임보상	

자료 : 미쯔이스미토모사 홈페이지(<http://www.ms-ins.com/pdf/business/indemnity/pl.pdf>, 2017.4.11)

생산물배상책임의 경우 “Basic Plan”은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작업결과로 생긴 배상책임손해, 불량완성품손해, 불량제조물손해, 생산물 또는 작업의 목적물 자체의 손해, 국내용으로 담보했으나 해외로 유출된 생산물에서 발생한 손해를 담보한다. 이에 비해 “Premium Plan”은 리콜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상한다. 이에 비해 단순히 생산물배상책임보험만을 공급하는 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생산물배상책임 특약과 기타 추가특약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배상책임종합보험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상품구조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특징적인 특약으로는 생산물자체손해보상 특약, 불량완성품손해보상 특약, 불량제조품손해보상 특약이 있다. 불량완성품손해보상 특약은 생산물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은 손해로 규정된 것을 추가로 담보하는 것이다. 즉, 동 약관은 부보된 생산물이 성분, 원재료 또는 부품 등으로 사용된 재물(완성품)이 멸실, 파손, 또는 오손(汚損)된 것에 기인하는 손해를 1사고당, 총보상 한도당 100만 엔에서 5억 엔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그러나 부보 생산물이 완

성품을 손괴하지 않고 자체를 꺼내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불량제조품손해보상 특약도 생산물 특약의 면책사항을 추가로 담보한다. 즉, 부도된 생산물이 제조기계 또는 제조기계 등의 부품인 경우 제조기계에 의한 제조, 생산, 선별, 검사, 수리, 포장 또는 가공된 재물(제조품, 가공품)이 멸실, 파손 또는 오손된 것에 기인하는 손해를 1사고당, 총보상 한도당 100만 엔에서 5억 엔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제조품과 가공품의 사용불능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표 IV-4〉 일본 손해보험회사의 생산물배상책임담보 특약

구분	생산물배상책임 특약	추가 담보 특약
담보기준	손해배상청구기준, 사고발생기준 사용	
담보손해	- 손해배상금 • 제조, 판매한 제품의 다른 법률상의 배상책임 • 작업결과에 기인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비용보상 • 손해방지비용, 긴급조치비용 • 권리보전행사비용, 협력비용, 소송비용	1. 불량완성품손해보상 특약 2. 불량제조물품손해보상 특약 3. 식중독·특정감염증 이익보상 특약 4. 리콜비용 특약 5. 제품자체보상 특약
부담보손해	- 피보험자의 고의 - 계약상 가중책임 - 생계를 같이하고 동거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생산물 자체의 파손 및 오손손해 - 오염손해, 방사능손해 - 생산물이 원재료 또는 부품으로 사용된 재물이 멸실, 오손, 멸실된 손해 - 생산물이 제조기계 또는 제조기계의 부품인 경우 그 기계의 손괴손해 등 - 제품의 수리, 교환, 회수비용	
계약특징	포괄보험담보 제공(Umbrella policy)	
서비스	손해조사서비스, 리스크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자료: 미쯔이스미토모사 홈페이지(<http://www.ms-ins.com/pdf/business/indemnity/pl.pdf>, 2017. 4. 11)

미쯔이스미토모사의 해외 수출용 생산물배상책임보험³⁸⁾도 독립된 약관이 아니라 배상책임보험(Common policy conditions)을 보통약관으로 하고 생산물 특약

38) 三井住友海上火災、ビジネスプロテクター海外輸出用; <http://www.ms-ins.com/business/indemnity/biz-protector-ex/> (2017. 4. 14)

(Products/Completed operation liability coverage form)과 각종 부대특약(Endorsement)을 첨부하여 운용한다. 대상 계약자는 연간수출액이 10억 엔 이하이고 과거에 보험사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해외 수출용 상품일지라도 국내의 상품과 담보하는 리스크는 동일하고, 벌금, 위약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비보상적 배상금을 면책으로 하고 있다.

생산물회수비용 특약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한 수출품의 결함, 하자에 기인하는 사고의 결과,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물적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상 생산물의 회수를 위해 지출하는 합리적인 회수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단, 회수개시로부터 1년 이내에 생긴 회수비용이고 비용발생으로부터 1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통지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회수비용은 광고비용, 문방구와 안내문 작성, 우편요금 등의 비용, 정규직 직원 외의 종업원에게 지불되는 초과근무수당 및 이와 유사한 종업원의 교통비 및 숙박비, 컴퓨터 사용요금, 독립하청인 및 기타 임시고용인의 고용을 위한 비용, 운송·선적 등 포장비용, 창고 및 보관장소의 비용, 재사용되지 않는 생산물 또는 생산물을 포함한 다른 제조물의 적절한 폐기에 필요한 비용, 생산물 회수를 실시하거나 회수에 참가한 제3자에 의하여 지출된 상기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동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은 생산물이 본래 의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생산물 이외의 재물손해는 보상), 열화나 변질로 인한 화학적 변화,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비용, 벌금/위약금/징벌적 배상금, 오염 관련 비용이다. 회수비용의 지급보험금은 손해액의 합계액의 90%만 지급하는 축소담보비율을 적용하여 1사고당, 증권당 5,000달러를 한도로 지급한다. 회수비용보험의 보험료는 2015년 현재 461억 엔으로 PL보험에 비해 적지만 2011년 대비하여 매년 16.1% 성장하고 있으며 보험침투도는 0.0019%를 보이고 있다.

2) 약관의 개선 논의

이에 따라 PL보험약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PL약관은 재물의 사용불능손해에 대한 보상 확대, 법령위반에 따른 면책을 삭

제하고 비즈니스 리스크의 면책을 개선, 배상청구증권의 연장기간담보(Tail cover)가 필요 등 총 16개의 개선사항이 학계 및 업계에서 제시되었다.³⁹⁾ 이 중에서 실무적으로 추가특약 운영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비즈니스 리스크, 사용불능손해배상금, 법령위반의 면책, 연장기간담보(Tail cover) 필요성 등은 향후 업계나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이들 과제들은 미국 약관과 비교하여 볼 때 미국은 2013년 약관개정(2013 ISO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Form)에서 법령위반을 면책으로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도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용불능손해와 비즈니스 리스크 면책, Tail Risk Cover 등은 보완이 이루어졌다.

먼저 약관은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손해를 재물손해(Property damage)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약관은 제조물의 성능불발휘를 면책에 추가하여 감손재물(Impaired property)의 면책을 도입하였다. 감손재물의 면책은 결함, 불비, 부적합 또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제조물 또는 작업으로 인해 재물을 수리, 교환, 조정, 제거 등에 따라 당해 재물의 사용불능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연장기간담보(Tail Cover)는 보험계약이 해약 또는 갱신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소급일보다도 늦은 소급일의 보험 혹은 배상청구기준이 아닌 보험으로 갱신할 때 확장담보기간(Extended reporting periods)을 제공한다. 이때 기본연장보고기간(Short tail cover)은 추가보험료 없이 제공하며 최후 보험의 종기 이전, 소급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 보고한 사고는 5년의 연장기간으로 적용하고 보고되지 않은 사고는 60일간을 연장담보한다. 추가연장보고기간(Long tail cover)은 200% 이내의 추가보험료를 지급하고 새로운 보상한도액을 제공한다. 이는 최종 보험계약의 종기 이전, 소급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연장기간을 무기한 적용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후에 발생된 손해배상청구도 보상해 준다.

39) 鴻上喜芳(2016, 3), 生産物賠償責任保険約款 の課題, 保険学雑誌, 第636號, p. 231

〈표 IV-5〉 일본 PL보험약관 과제 및 개선 추이

PL보험시장 구분		약관사항	주요 내용	개선 및 과제 여부
1957~1975 (태동기)	PL보험 판매 제조물 책임법 요강시안 발표	① 생산물자체 손괴 면책	당해 생산물의 사용불 능손해 면책	자체사용불능손해 면책
		② 회수비용 부담보	회수비용 면책 여부	부담보로 규정
		③ 피보험자 범위	소매업자 등 추가피보험 자의 일반업무까지 해당 되는지?	문제이나 경미
		④ 1회 사고 정의	동일원인의 일련사고를 하나의 사고로 보는지?	1사고로 정의
		⑤ 적용지역	해외발생사고 보상 여부	국내 발생사고에 한정
		⑥ 비지니스 리스크	성능불발휘 손해의 보상 여부	미국 면책 범위 초과, 과제
		⑦ 보험기간 적용	보험기간 내 보상기준?	기간 중 발생사고에 한정
		⑧ 피보험자 소속단체의 손해	기업 등의 손해는 대상 여부 불분명	문제이나 경미
		⑨ 보증위반담보	보증담보위반 규정없음	문제이나 경미
1976~1995 성장기	PL법 시행	⑩ 생산물위험과 완성 작업위험의 정의	정의를 없고 완성작업 위험의 완성시기	문제이나 경미
		⑪ 사용불능손해배상금	파손하지 않은 재물의 사 용불능손해도 배상 필요	미국은 보상, 과제
		⑫ 회수비용담보	회수조치비용 일부를 보상	특약판매(1990)
1996~현재 성숙기	PL법 시행 이후	⑬ 법령위반 면책	법령위반이라고 보상	미국도 면책아님, 과제
		⑭ 직접청구권 도입	피해자보호를 위해 필요	대응필요성 적음
		⑮ 리콜보험의 정형적 계약 방식	수요증가에 계약을 정 형화	중소기업 도입 (2007)
		⑯ 연장기간(Tail Cover) 필요	무기한 Tail Cover 제공	미국은 보완, 과제

일본은 사용불능손해에 대해 재물손해를 다시 정의하고 미국과 같이 손상재물의 사용불능손해는 면책으로 하되, 비손상재물의 사용불능손해는 보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생산, 판매, 인도된 생산물 또는 일의 결과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즉, 법령위반 사고는 면책으로 하고

있는 것을 미국이나 프랑스 등과 같이 면책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배상책임보험 도입이 60년이 경과하였고 그 내용과 역할이 인지되어 있는 현재에는 다양한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철저하게 관련 법규에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약관에서 삭제해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리스크와 연장 기간 담보도 미국의 약관을 참조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나. 보험료 산출

보험료 결정은 가입대상이 되는 제품, 판매지역, 매출액 규모, 사고이력, 고객의 리스크 대응 구조 등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관련 자료를 고지의무에 준하는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주리히 손해 보험사의 경우 제조회사의 안내, 제품 카탈로그, 종업원 수 및 임금총액, 업무내용(직업분류), 제조물의 종류와 제품별 매출액, 과거 5년간 사고이력 등을 제출받아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미쓰이스미토모사는 해외 수출보험에서 계약자가 리스크 실태를 충실하게 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예정요율(Schedule rating plan)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 할인은 계약자가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중 어느 하나를 인증받고 있고, 부보대상인 생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부서 또는 품질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으며, 광고 선전문서, 판매촉진문서, 제안서, 취급설명서, 제품설명서 등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문제를 담당하는 부분 또는 법무부분에 의한 심사를 행하고 있는 경우, 부보대상인 생산물의 보험금청구에 대한 대응방법이 문서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3. 보험 가입방식

가. 의무가입 대상 제조물

일본의 제조물책임 이행방안은 PL법 입법⁴⁰⁾ 논의 시에 의무보험방식을 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임의가입방식이 채택되었다. 현행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가 사망 또는 신체손해가 생기거나 재산손해가 생긴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손해보험배상의 이행방법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책임부담자가 자가보험, 보험 가입 등을 강구하면 되나 손해배상책임도 한도가 없기 때문에 무한하게 배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은 손해배상책임 이행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 이행에 대해 기금을 내부적으로 조성하여 적립하든가 아니면 보험에 가입하는 등 리스크 재무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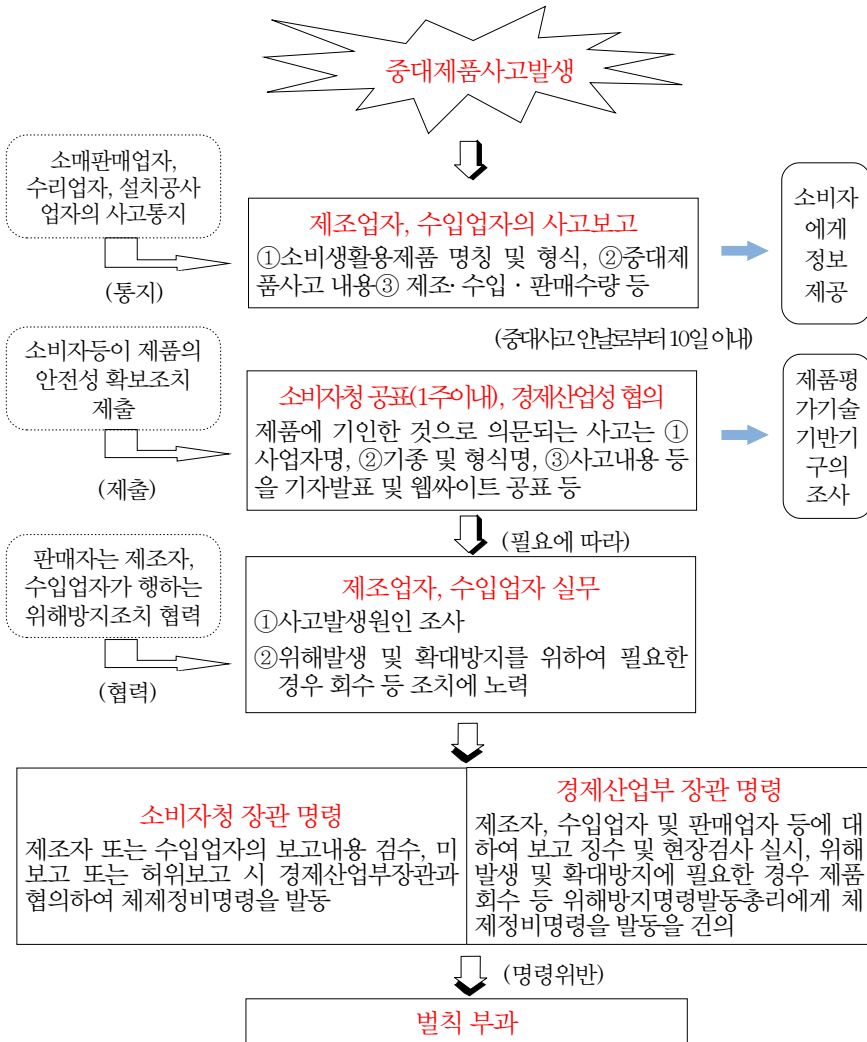
그러나 제조물책임법과 달리 소비생활용품제품안전법은 일부 위해가능성이 높은 소비용품에 한정하여 제조자 및 수입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동 법률 제6조 제4호⁴¹⁾에 따르면 제1종 특정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주무장관에게 사업을 등록할 때 당해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일반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여 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비한 조치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40) 1975년 요강시안은 보험 가입을 강제화하고 손해배상 주체가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의 손해보장사업을 제시하였음. 山下友信(2002), 製造物責任立法と保険制度, 安田火災記念財団叢書, No. 39, p. 14

41) 제6조(사업신고) 특정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정제품의 구분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주무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정제품모델의 구분
3. 당해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특정제품의 수입업자는 당해 특정제품의 제조사업자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당해 특정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그림 IV-1〉 일본 소비생활용품안전법 체계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 1인당 1,000만 엔 이상, 연간 3,000만 엔 이상의 한도를 담보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⁴²⁾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PSC 마크제도(Product Safety of Consumer products)라고 한다. PSC 마크제도 외에도 제품종류에 따라 다양한 마크부착제도를 <부록 표 I -3>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BL마크는 제

42) 朝見行弘(2012), 製造物責任にかかわる被害救済制度, p. 1

조물 자체의 품질을 보증하는 보험과 제조물책임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고 다른 마크제도는 제조물책임에 의한 배상책임보험만 운영하고 있다. 보험 가입 방식은 당해 기관과 제조업자가 공동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방식을 취하고 있어 인증마크를 부착받은 경우 보험 가입이 되는 구조이다.

나. 단체계약: 중소기업 PL보험

1) 특징

중소기업 PL보험은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상품으로 개발하여 가입이 용이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동 보험의 가입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자⁴³⁾ 중 중소기업제조물책임제도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3단체(일본상공회의소, 전국 상공업연합회, 전국 중소기업단체중앙회)의 산하에 있는 단체에 속하는 기업에 한정하고 있으며, LP가스 판매, 여관업, 항공기(부품)제조, 전문직업인(세무사, 약국, 약 판매점) 등은 적용대상에 제외된다. 또한 가입대상 업종은 중소기업의 제조업만이 아니라 판매업, 음식점, 공사업, 하청업 등 폭넓은 업종의 중소기업이 가능하다.

보험계약 모집은 3개의 단체를 통하여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고 보험기간은 매년 7월 1일 오후 4시에 개시하여 1년간 보상된다. 가입대상 제조물은 해당 기업의 제조물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 일부 제조물만을 선택적으로 하여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다. PL보험계약의 최저보험료는 1,000엔을 적용하며 리콜보험 특약을 부대한 경우에는 동 특약 단독의 최저보험료로 3만 엔을 적용하고 있다.

43) 소매업(자본금 5,000만 엔 이하 또는 종업원 50인 이하), 서비스업(자본금 5,000만 엔 이하 또는 종업원 100인 이하), 도매업(자본금 1억 엔 이하 또는 종업원 100인 이하), 제조업 등(자본금 3억 엔 이하 또는 종업원 300인 이하)

2) 보험상품 및 요율

다른 PL보험과 동일하게 중소기업 PL보험도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생산물배상책임 특약을 운영하며 추가적으로 리콜 특약을 첨부하되 계약자의 선택적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생산물배상책임 특약과 리콜 특약의 담보내용은 개별계약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다. 다만, 리콜 특약은 임의로 가입하되 충실보상리콜 특약과 한정보상리콜 특약 중 하나를 가입해야 한다. 충실보상리콜 특약은 피보험자가 생산물에 기인하여 리콜을 실시하는 비용을 부담함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며 대인대물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이다. 한정보상리콜 특약은 피보험자가 생산물에 기인하여 리콜을 실시하는 비용을 부담함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나 대인대물사고(일산화탄소 중독, 화재에 의한 재물소손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중소기업 PL보험은 일반보험과 달리 보상한도액을 정형화하도록 하고 있다. PL담보는 보상한도액(1사고당, 보험기간 중, 대인 및 대물 합산)을 5,000만 엔(S형), 1억 엔(A형), 2억 엔(B형), 3억 엔(C형)으로 운영하고 자기부담금을 1청구 당 3만 엔을 적용한다. 리콜 특약은 보상한도액(1사고당, 보험기간 중, 대인 및 대물 합산)을 3,000만 엔, 1억 엔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자기부담금은 없고 축소담보비율 90%를 적용한다.

보험요율은 가입대상 업종별, 보상한도액에 따라 분류된 등급요율(Class rate)로 되어 있으며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업종별 등급요율은 제조업은 97개 세부업종, 판매업은 90개 업종, 공사 및 작업은 17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2017년 6월 현재 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표 IV-6〉 중소기업 PL보험요율(2017년 6월 현재)

(단위: 엔)

업종	세부업종	PL보험 특약				리콜 특약			
		S 5천만	A 1억	B 2억	C 3억	한정보상		충실보상	
						3천만	1억	3천만	1억
제조업 (97개 업종)	농림축산업, 식품 제조	87	112	145	169	50	137	354	956
	조미료 제조	581	773	1,029	1,218	50	137	354	956
	생약, 한방약 제조	3,422	4,529	5,999	7,082	176	477	2,444	6,600
	의약품 제조	3,422	4,529	5,999	7,082	176	477	2,444	6,600
	체내이식용 의료기계/ 가구/재료 제조	3,422	4,529	5,999	7,082	120	324	487	1,316
판매업 (90개 업종)	가정용 가스, 석유기계	2,481	3,119	3,945	4,540	482	1,302	1,264	3,414
	귀금속제품 판매	10	13	16	19	141	379	218	590
공사 및 작업 (17개 공사)	주택내장공사 가구수리	179	211	254	279	-	-	-	-
	냉난방장치 설치 및 수리	9,397	11,046	13,056	14,426				

주: 매출액 100만 엔 기준임

3) 단체계약 시장 규모 및 사고율 추이

1995년 PL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중소기업 PL보험시장은 전체 PL보험시장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 감소하고 있다. 2016년 상황을 보면, 중소기업 PL보험료는 36억 엔으로 1996년 53억 엔에 비해 연평균 2.0%씩 감소하고 있다.

또한 계약 건수도 1996년 10만 건에 비해 연평균 3.2% 감소한 5.5만 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PL법 초기에 각 손해보험회사들의 홍보와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제조업체들의 보험 가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시행 이후 제조업체들의 경험 축적과 리스크관리 역량의 증가로 인해 가입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험회사들은 판단하고 있다.

〈표 IV-7〉 중소기업 PL보험 시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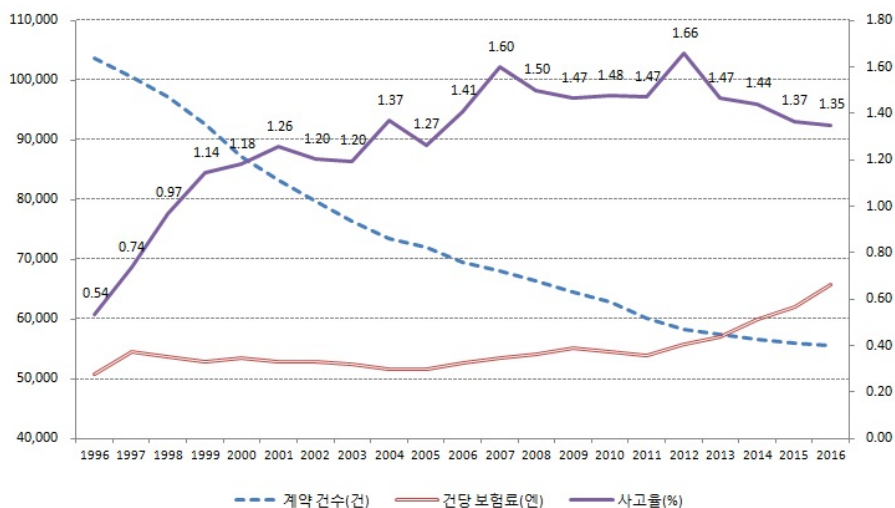
(단위: 건, 억 엔, %)

연도	일본상공회의소		전국 상공회연합회		중소기업단체중앙회		합계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1996	57,823	36	23,676	10	22,293	7	103,792	53
1997	56,049	37	23,308	10	21,249	7	100,606	54
1998	55,144	35	22,729	10	19,256	7	97,129	52
1999	52,915	33	21,972	9	17,729	6	92,616	48
2000	50,008	32	20,902	9	16,231	6	87,141	47
2001	48,298	30	19,821	8	15,066	6	83,185	44
2002	46,578	29	19,109	8	14,132	5	79,819	42
2003	44,766	28	18,473	8	13,064	5	76,303	41
2004	43,290	26	18,063	7	12,200	5	73,553	38
2005	42,420	26	17,889	7	11,633	4	71,942	37
2006	40,740	25	17,740	7	11,082	4	69,562	36
2007	39,961	25	17,548	7	10,648	4	68,157	36
2008	39,167	25	17,293	7	9,954	4	66,414	36
2009	38,360	25	16,907	7	9,304	4	64,571	36
2010	37,521	24	16,595	7	8,841	4	62,957	35
2011	36,417	23	16,054	7	7,756	3	60,227	33
2012	35,616	23	15,407	6	7,203	3	58,226	32
2013	35,286	23	15,360	6	6,874	3	57,520	32
2014	34,900	24	15,179	7	6,614	3	56,693	34
2015	34,523	25	15,093	7	6,437	3	56,053	35
2016	34,226	26	15,147	7	6,246	3	55,619	36
CAGR	-2.7	-1.7	-2.3	-1.9	-6.5	-4.4	-3.2	-2.0

주: 각 연도는 6월 말 기준임

중소기업 PL보험의 사고율은 도입 초기에 가입계약 건수의 증가에 따라 0.54%(사고 건수/계약 건수)에 불과했으나 계약 건수의 감소와 실수요자의 보험 가입에 따라 최근 들어 1%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보험 도입 이후 2016년까지 지급한 보험금 건수는 17,500건에 이른다.

〈그림 IV-2〉 중소기업 PL보험의 건당 보험료 및 사고율 추이



주: 사고율 = 사고 건수 / 계약 건수

4) 인수보험회사

중소기업 PL보험은 간사를 중심으로 한 공동보험을 하고 있으며, 아이오이넷세이 동화손보, 공영화재, 현대해상, 세코손해보험, 손보자팬일본흥아, 대동화재, 동경해상, 미즈이스미토모사 등 8개 손해보험회사만 참여하고 있다.

일본 손해보험협회는 중소기업 PL보험의 분쟁이 생긴 경우 해결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 보험회사의 서비스 제공

미즈이스미토모사는 자회사인 인터리스크총연을 통해 계약자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조물책임 예방대책에 대한 컨설팅은 계약자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설계, 제조 및 검사, 유통 및 판매, 애프터

서비스 등의 여러 가지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책 실시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인 예방대책지원 외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배상사고의 대응과 관련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미쯔이스미토모사는 해외 수출업체 계약자에 대해서 소송과 관련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계약자가 수출한 생산물이 소송이 걸린 경우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경험이 풍부한 클레임 전문가, 변호사 등을 수배하여 소송방어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미국을 위시하여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북미지역은 미쯔이스미토모해상관리 자회사가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시사점

일본 PL보험의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내에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일본 PL보험을 포함한 배상책임보험시장은 손해보험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해상, 자동차, 화재보험은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고 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라 크게 성장한 상해보험시장도 정체 혹은 감소되고 있으나 제조물 책임이나 사이버 리스크 등 새로운 배상책임 리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조물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리콜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둘째,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PL보험을 독립적인 상품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PL특약과 추가특약을 부대하여 기업들의 종합적인 배상책임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PL 특약담보에서 면책으로 되어 있는 위험에 대해 담보가 가능하도록 리콜 특약, 제품자체손해담보, 포괄배상책임담보 특약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셋째, 보험요율을 원수보험회사가 직접 산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배상책임보험약관을 1957년에 미국 ISO 약관을 원용하였지만 보험요율만은 자체적으로 통

계를 집적하여 산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요율체계(등급요율과 예정요율)를 마련하여 운영함에 따라 계약자의 리스크에 부합한 보험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손해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PL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는 전문적인 제조물책임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내 계약자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사고 예방과 손실 축소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수출 기업체에게는 미국 등 현지 자회사 등을 통해 사고 전후에 있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약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V. PL보험의 역할 제고 방안

1. 리스크폴링기능 강화

가. 보험상품 다양화

현재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PL보험상품은 2002년 PL 시행 시에 개발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대부분이다. 동 PL보험은 PL리스크에 대비한 독립적인 상품이므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의 PL 보험은 PL도입 시에 개발된 상품을 리스크변화에 따른 보험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PL보험수요를 침투도로 비교하여 보면 일본, 미국, 영국에 비교하여 매우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최근 5년 동안 침투도가 감소하고 있지만, 일본 등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표 V-1〉 주요국의 PL보험 침투도 및 증감률 비교(2015)

(단위: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PL보험료 점유비	0.36	0.03	0.59	3.30
PL보험 침투도	0.0072	0.0278	0.0155	0.0646
CAGR(5)	-3.46	9.18	0.91	3.59
불법행위비용	-	0.30	1.66	1.05

주: 1) 점유비는 손보 전체 보험료에서 PL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임(한국은 장기, 개인연금을 제외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불법행위비용은 GDP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총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임(2011)
자료: U.S. Chamber Institute for Legal Reform(2013),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Litigation Costs", p. 2

이와 같은 차이는 각 국가의 법률체계와 소비자 인식 등에 차이도 있지만 보험상품의 다양성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의 PL보험이 제조업체의 PL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상품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내 PL보험은 생산물 회수비용 등을 부담보로 제한하고 있어 제조업의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자 역할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종합적인 리스크풀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국내와 유사한 PL법을 시행한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미국 ISO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생산물 특약을 운영하고 있지만 PL리스크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담보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표 V-2〉 한국과 일본의 PL보험의 특약담보위험 비교

구분	한국		일본(미쓰이스미토모사)
약관 구성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약관	재산종합보험의 제4부 분 배상책임담보(1.국 내 2.복미 수출품)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생산물 특약
위험 확장 담보 특약	• 판매인추가특약 • 도급업자 특약 • 인격침해담보 특약	• 고용주배상책임담보 • 교차배상책임담보	• 불량완성품손해보상 특약 • 불량제조물품손해보상 특약 • 식중독·특정감염증 이의 보상 특약 • 리콜비용담보 특약 • 제품자체보상 특약
위험 부담보 특약	• 효능불발휘 부담보 특약 • 교차배상책임 부담보 특약 • 정보기술 부담보 특약	회수비용 부담보를 면책 사항으로 규정	
보험료 적용 특약	• 인증마크계약 특약 • 단체계약/적용환율/공 동인수/보험료분납 특약	적용환율/공동인수/ 보험료분납 특약	단체계약/분납 특약

일본과 한국의 PL보험상품의 구조와 담보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PL보험은 다양한 추가특약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PL리스크를 제한하는 부담보 특약과 보험계약방법이나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특약이고 담보위험을 확대하는 특약은 없다(〈표 II-7〉 참조). 이에 비해 일본 손해보험회사는 영업배상책임보

험의 특약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제조업체의 리스크 수요에 따른 리콜비용담보, 불량완성품손해담보, 불량제조물손해담보, 제조물 자체손해담보 등 담보위험 확장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표 IV-4〉 참조). 또한 기업의 종합적인 PL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종합담보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표IV-3〉의 미쯔이스미토모사의 기업종합배상책임보험이 이에 해당된다. 동 상품은 기업의 시설배상책임리스크, 업무배상책임리스크, PL리스크, 기타 배상책임리스크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다.

둘째,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상품은 제조물결합사고와 관련되어 파생하는 리스크를 담보하는 리콜담보 특약, 제품자체보상 특약, 결함사고에 따른 간접손해담보 특약 등이다. 특히 리콜담보 특약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손해보험 회사들은 독립적인 리콜보험(Product recall policy)⁴⁴⁾을 판매하고 있지만 보험요율은 재보험자 제시요율을 사용하고 있어 보험요율도 매우 높아 가입률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비해 일본을 비롯한 영국, 미국 등은 리콜보험이 활성화되어 있다(〈표 V-3〉 참조).

〈표 V-3〉 주요국 리콜보험의 침투도 및 증감률 비교(2015)

(단위: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리콜보험료 점유비	-	0.0092	0.250	0.10
리콜보험 침투도	-	0.0092	0.0050	0.0019
CAGR(5)	-	16.1	0.06	-2.26

주: 1) 점유비는 손보 전체 보험료에서 PL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임

2) 한국의 리콜보험은 공표도 하지 않고 있음

44) 리콜보험은 제조물의 결함 즉 설계, 성능, 시방서, 제작, 혼성, 합성, 포장, 표시과정에서의 오류 및 과실로 인하여 생긴 보험목적물의 현존 및 의심되는 장애, 오염, 표시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수비용을 보상함. 회수비용은 자발적 리콜인 경우 피보험자 자신의 회수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책임이며, 제3자에 의한 리콜인 경우는 제3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보험목적물의 검사, 철수, 파괴, 대체에 발생한 합리적, 경제적으로 필요한 비용임(광고비용, 발견/추적/분류비용, 교통/보관/포장비용, 조사비용, 대체비용, 수리비용). 리콜보험은 점진적 악화, 환경변화, 건강위험의 인지 변화, 위법행위, 고의적 위반, 공공 및 정부기관과 소송 등 비용, 사용설명서의 불이행, 불충분한 시험, 설계 및 시험단계의 시제품 리콜, 비용과 벌과금, 교차배상책임, 알리지, 유전공학적 문제, 생산물배상책임, 간접손해, 악의적인 제조물의 변경은 보상하지 않음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제품의 결함 등으로 소비자 안전성을 위협하는 사건들의 빈발로 리콜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있어 리콜보험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기본법은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해 강제 및 자발적 리콜을 적용한다. 개별 제품 품목으로는 자동차,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등으로 8개 품목에 대해 리콜 요건, 리콜시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13개 정도이다.⁴⁵⁾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중앙행정부처·지방자치단체·소비자원이 제조사나 유통사에게 리콜을 권고하여 자진리콜을 유도하거나 리콜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동 법은 제조자 등에게 제품의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정보를 중앙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소비자원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리콜 건수는 매년 16.5% 증가하여 2015년 1,58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리콜의 세부내역에서 보면 리콜명령이 가장 많고 이어 기업들의 자진리콜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⁴⁶⁾ 또한 소비자원에 보고된 위해정보 건수⁴⁷⁾에 대비하여 리콜 건수의 비율인 리콜률을 보면 2006년 0.76%에 불과했으나 리콜 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2015년 현재 2.33%로 증가하였다.

45)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국토부)과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식품은 식품위생법(식약처, 자치단체장)·식품안전기본법(중앙행정부처), 의약품은 약사법,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농림축산부, 자치단체장),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법(식약처, 자치단체장),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중앙행정부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자치단체장)·전기용품안전관리법(자치단체장),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환경부, 자치단체장), 화장품은 화장품법(식약처)이 있음. 오수진·곽윤영(2015), 『리콜정보의 소비자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pp. 39~40

46) 품목별 리콜현황(2000~2012)은 한국소비자원(2013), 『기업의 리콜제도 운영현황 및 의식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p. 5 참조

47)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사업자(제조자, 수입자, 물품에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판매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제47조 제1항). 시도지사는 접수받은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제68조), 사업자가 결함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함(제86조,령 제69조)

〈표 V-4〉 국내 리콜 추이 및 세부 내역

(단위: 건, %)

연도	위해정보 접수 건수	리콜 세부 내역				리콜률
		리콜 계	자진	권고	명령	
2008	35,425	544	141	17	386	1.5
2009	39,171	459	141	17	301	1.2
2010	43,629	848	354	2	492	1.9
2011	54,724	826	297	65	464	1.5
2012	61,498	859	189	124	546	1.4
2013	65,405	973	263	111	599	1.5
2014	67,037	1,752	339	277	1,136	2.6
2015	68,002	1,586	536	160	890	2.3
CAGR	9.8	16.5	21.0	37.8	12.7	6.2

주: 리콜률 = 리콜 계 / 위해정보 접수 건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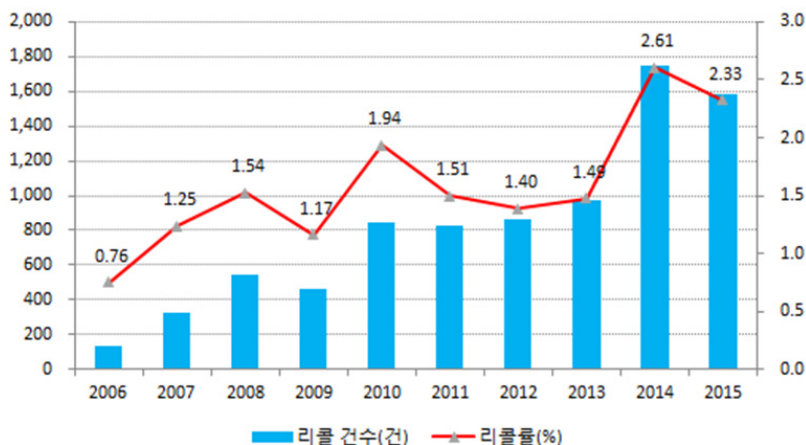
자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정보동향 및 통계분석』, 각 연도별

제조사나 공급업자에게 리콜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함 제품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제품의 수리비용 등의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지만, 더 큰 손실은 평판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⁴⁸⁾ 거래선 상실 등의 간접손해가 크게 발생하고 그 손실이 심한 경우에는 파산에 이르게 된다. 리콜로 인한 기업의 파산사례는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외국⁴⁹⁾의 경우에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48) 2013년 국내 1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제적 리콜을 당하는 경우, 80.2% 기업이 매출 감소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한국소비자원 (2013), 『기업의 리콜제도 운영현황 및 인식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p. 35 참조

49) 2009년 미국 식품회사 PCA는 땅콩버터로 700명 이상 살모넬라균에 감염됨에 따라 자진 회수했지만 결국 파산하였음. 2011년 맥클라렌은 유모차에서 손가락 절단사고가 발생하자 회수했지만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인해 파산하였고, 2017년 6월에는 에어백을 제조하는 일본 다카다사는 2002년 이후 에어백 결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전 세계에서 1억 대 이상 리콜대상이 됨에 따라 부채가 1조 7,000억 엔으로 증가하여 파산하였음. 서울경제(2017. 6. 26), “만파식적 리콜 파산”

〈그림 V-1〉 리콜 건수 및 리콜률 추이



주: 리콜률은 리콜 건수 / 위해제품 보고 건수 × 100

자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리콜정보

국내 기업들은 소비자기본법이나 개별법규의 현행 리콜제도에 대해 59.4%의 기업이 알고 있고 결함정보 보고의무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과 이를 준수하는 기업의 비율은 5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함정보를 보고한 기업 중 11.9%의 기업이 리콜을 실시했고 리콜비용은 평균 1.8억 원이며 이 비용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리콜보험의 수요는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품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V-5〉 국내 기업의 리콜제도 운영실태

(단위: 건, %)

구분	리콜제도 인식	결함정보보고 의무제도		리콜실시			전담조직
		인식	준수	실시	비용부담	리콜비용	설치
표본 수	101	101	96	94	96	12	91
응답률	59.4%	50.5%	46.9%	11.9%	65.7%	평균1.8억 (3천~5억)	46.9%

자료: 한국소비자원(2013), 『기업의 리콜제도 운영현황 및 인식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참조하여 작성

이와 같이 PL책임과 더불어 리콜비용의 증가는 일본, 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규제⁵⁰⁾가 강화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일본의 경우 소비생활용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위해가능성이 큰 소비용품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이행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 미쯔이스미토모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들은 기업들의 리콜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리콜보험 추가특약을 2005년부터 개발하였으며 제품자체손해보상 특약, 불량완성품 손해보상 특약, 불량제조물손해보상 특약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⁵¹⁾

제조사의 PL부담에 따른 영업손실을 담보하는 기업휴지손해(Business interruption loss)담보 특약의 운영도 필요하다. 간접손해는 재물보험의 영역으로만 운영되는 것에 벗어나 사고원인이 배상책임부담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호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Zurich 사는 제조물책임과 리콜비용 등 부대리스크를 담보하는 PL종합보험상품(Product safety and recall insurance policy)을 운영하고 있다. 동 상품은 PL책임에 추가하여 간접손해담보(Business interruption), 상담 및 자문비용(Consultant and advisor costs), 방어비용(Defense cost), 리콜비용담보, 교체비용(Recall cost), 재복구비용(Rehabilitation expense)을 확장담보(Extensions of cover)하고 있다.⁵²⁾

셋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PL보험약관을 통일화하고 보험회사가 자체적인 요율산출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02년에 도입된 PL보험은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이 있으나, 이들 약관의 구성과 내용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약관 구성방식은 국문약관은 열거담보위험방식으로 되어 있는 반면 영문약관은 종합위험담보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영문약관이 담보위험을 제한하는 특약을 많이 부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손해보험회사들은 하나의 약관을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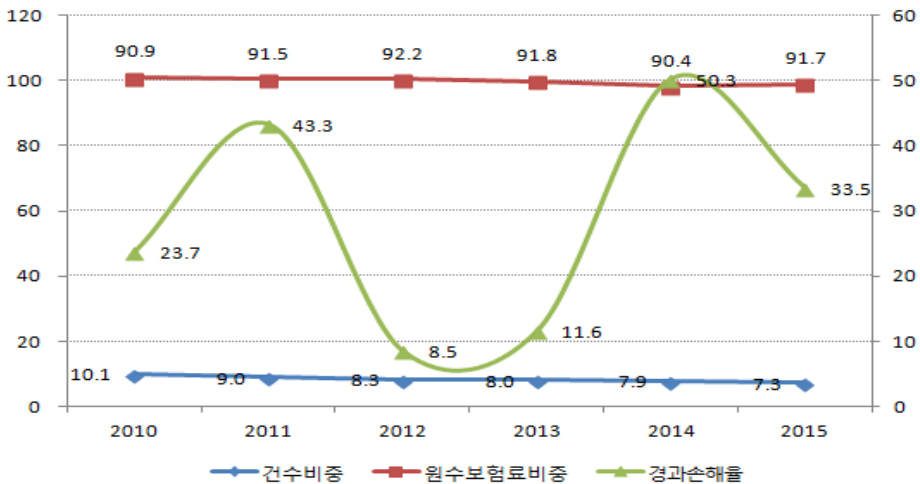
50) 미국은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캐나다는 소비자제품안전법(CCPSA), 호주는 공정거래법, 영국은 EU의 일반제품안전지침을 반영한 소비자보호법 및 일반제품안전규정 등에 기초하여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각국은 자동차나 식품 등 품목에 적용하는 별도 법규에 의하여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오수진·곽윤영(2015), 『리콜정보의 소비자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pp. 16~22

51) 상세한 내용은 제4장 일본 PL보험 운영현황과 시사점 2. 보험상품 운영현황 참조

52) https://www.zurich.com/au/content/dam/australia/general_insurance/product_safety_and_recall_insurance/product_safety_and_recall_insurance_policy.pdf(2017.6.28.)

용하고 있다. 즉 동일한 약관을 국내 제조물과 해외 제조물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이를 통해 부보된 PL리스크를 집적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보유와 출재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손해보험회사는 국문약관에 대해 자사나 참조위험률을 이용하여 산출하나 영문약관에 대해서는 국내외 재보험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보험료 기준으로 90%가 넘고 있다(〈그림 V-2〉 참조). 이와 같은 결과에 유추하여 볼 때 보험회사들이 영문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지역 국가의 PL리스크⁵³⁾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결과 경험통계도 집적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더라이팅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V-2〉 PL보험의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 건수, 보험료, 손해율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및 제공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53) 국가별 PL리스크를 나타내는 지표는 없기 때문에 PL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배상책임비용으로 국가별 PL리스크 격차를 간접적으로 비교하여 보았음. 2011년 기준 GDP대비 배상책임비용의 비율은 미국이 1.66%로 가장 높고, 캐나다 1.19%, 영국 1.05%, 이탈리아 0.77%, 독일 0.68%, 스페인 0.67%, EU평균 0.63%, 프랑스 0.56%, 포르투갈 0.43%, 네덜란드 0.40%, 일본 0.30%, 중국 0.29%로 나타나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U.S. Chamber Institute for Legal reform(2013),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Litigation Costs", p. 2

이러한 상품구조를 가지게 된 것은 PL법 도입 초기에 경험통계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PL보험을 15년간 운영한 경험이 있고 경험통계가 있으므로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을 일치시켜 가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표 V-6〉 PL보험의 국문약관과 영문약관 비교(손해사고기준)

구분	국문약관	영문약관
요율적용	참조위험률, 손보사 결정	국내외 재보험자 제시요율
담보지역	대한민국	전세계
구성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관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1장 담보범위 제2장 피보험자 제3장 보상한도액 제4장 일반조항 제5장 용어의 정의
위험 관련 특약	열거주의 담보방식(Named peril): 부담 보위험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특약규정 은 최소화: 효능불발휘 부담보 특약만 운영	종합위험담보방식(All risk): 다양한 부 담보위험 특약을 첨부(납, 석면, 전쟁, 핵 및 방사능 등)포기

주: 특약의 상세종류는 제Ⅱ장 PL보험의 운영 및 역할 현황 1. PL보험 운영현황 가. 보험상품 참조

넷째, 초과보험(Excess insurance) 또는 포괄보험(Umbrella Insurance) 활용이다. PL법 시행 이전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PL특약을 첨부하여 운영함에 따라 기업의 배상책임리스크를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PL법 시행으로 개발된 PL보험상품은 영업배상책임보험과 PL보험 두 개의 증권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기업이 예측하지 못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기업은 손해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기업이 수익성이 양호하여 잉여금을 매년 적립하여 배상여력이 충분하거나 소유주의 출자 능력이 있으면 다행이나 그 여력이 없는 경우 계속적 경영이 곤란해질 수 있다. 또한 20여 개 이상의 독립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어 기업들은 배상책임 리스크관리를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업이 PL리스크를 포함한 배상책임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회사는 초과배상책임보험이나 포괄배상책임보험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초과배상책임보험은 PL리스크 등 특정한 배상책임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기초배상책임보험: Primary liability insurance)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담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상한도액을 제공하는 보험(Excess liability insurance)으로⁵⁴⁾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으며 최근 보험료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표 V-7〉 참조).

〈표 V-7〉 주요국 초과배상책임보험의 침투도 및 증감률 비교(2015)

(단위: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초과배상책임보험료 점유비	-	0.005	3.02	1.10
초과배상책임보험 침투도	-	0.0051	0.0598	0.0215
CAGR(5)	-	3.59	-6.62	9.18

주: 점유비는 손보 전체 보험료에서 PL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임

〈표 V-8〉의 예시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에 대한 보상한도액 5억까지는 기초보험이고 이를 초과한 100억까지 담보하는 보험은 초과보험에 해당한다. 포괄배상책임보험은 개별종목별 초과보험과 기초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험도 보상하여 기업의 모든 배상책임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포괄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들의 보험료 부담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단점이 있지만 자신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⁵⁵⁾ 그리고 보험회사는 기업의 다양한 리스크를 하나의 포괄증권과 기초증권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들의 리스크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보험료 산정이나 자기부담금 등 보험조건 설정을 하기 위한 언더라이팅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54) Wells Bert(2010), "Excess Insurance Umbrella Insurance and Multi-Insurer Coverage Programs", Covington & Burling LLP, pp. 2~5

55) 포괄배상책임보험의 기능은 기초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증액 기능, 추가적인 배상책임리스크를 담보하므로 기초배상책임보험 기능을 하며, 기초배상책임보험의 부담보위험을 확장담보하는 기능을 함. 지수현(2002), 『배상책임보험론』, p. 61

〈표 V-8〉 초과보험 및 포괄보험 운영체계

보상한도액								
금액	100억	포괄보험						
	50억							
	30억							
	10억							
	5억	기초보험						
	1억							
보험종목	시설	주차장	PL	임원배상	신배책	환경책임	기타 위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별도 증권 배상책임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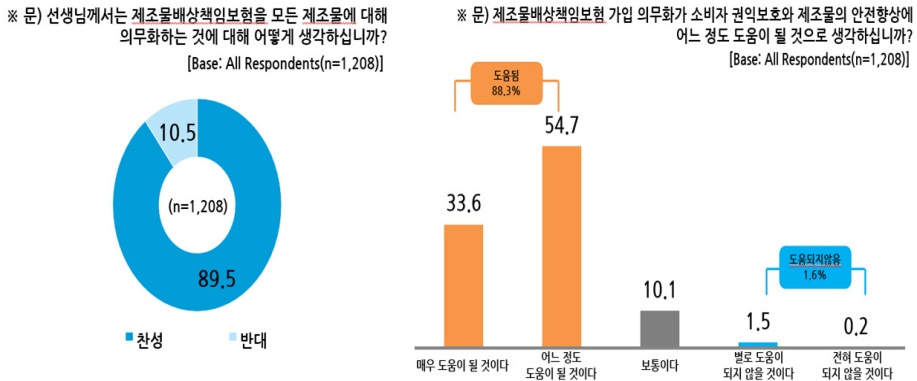
나. 보험 가입률 제고

PL보험의 리스크폴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다수의 계약자를 폴링하여 최소 보험료비용으로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다. 폴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률 제고방법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의무보험화이다. 국내의 경우 1982년 입법안으로 보험 가입 의무화가 도입된 바 있었지만 2002년 시행된 PL법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조자 등은 PL사고에 대비하여 기금 적립 또는 보증금을 예치하든가 보험에 가입하여 PL리스크 관리를 하면 된다. 최근 가슴기 살균제 사고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PL법에 위해가능성이 큰 소비생활용품에 한정하여 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연구⁵⁶⁾가 있으며 입법화⁵⁷⁾가 진행 중이다.

56) 황현아(2017)는 일률적인 보험 가입 의무화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위험성이 큰 제조물 중심으로 의무보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음. 주요내용은 황현형(2013)의 방안과 유사하게 안전마크제품을 의무화하는 방안, 농림수산업/광업/식품업/고무제품업/정밀기계업의 의무화 방안, 사고발생률과 손해배상액 규모가 큰 제품을 선별적 의무화하는 방안임

본 연구에서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PL보험의 가입 의무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89.1%가 안전사고 위험 가능성이 큰 제조물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L보험 가입 의무화가 되는 경우 소비자 권익보호와 제조물의 안전 향상에 52.8%가 '도움이 된다'(매우 +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응답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별로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도움이 된다'에 대한 응답을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91.9%로 나타났다.

〈그림 V-3〉 의무보험 도입 찬반 및 효과(n = 1,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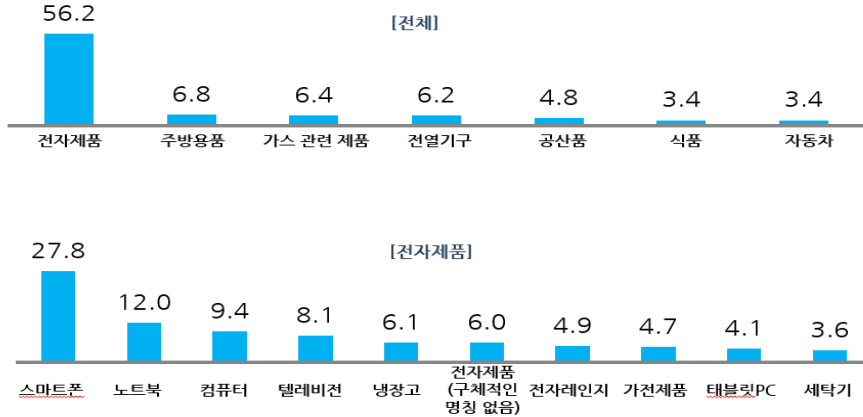


그리고 PL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응답 비중은 전자제품이 56.2%로 가장 높았고, 주방용품 6.8%, 가스 관련 제품 6.4%, 전열기구 6.2% 순이었다. 보험 가입 의무가 필요한 전자제품은 27.8%가 스마트폰을 들었으며, 다음으로 노트북(12.0%), 컴퓨터(9.4%), 텔레비전(8.1%)을 제시하였다.

57) 박선숙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2017. 10. 의안번호 2005039)은 제조업자의 일정배상한도액 내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회사에 대한 피해자의 제3자 직접청구권을 신설하는 제9조 및 제10조를 신설하는 것임

〈그림 V-4〉 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한 제품(n = 1,208)

※ 문) 보험가입의 의무화가 필요한 **제조물(제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ase: All Respondents(n=1,208)]



이러한 소비자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PL책임 이행을 강제화하는 것은 용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선진 국가와 유사하게 우리나라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책임 이행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보험 가입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융합촉진법(이하 '산촉법')상의 보험 가입 활용방법이다. 산촉법 제19조 제2항은 산업융합신제품⁵⁸⁾에 대해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조자 등은 제품을 최초로 출고하기 전까지 소비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제3자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한도는 사망 시 8천만 원, 부상 시 실제 치료에 들어간 비용, 재산손해는 1억 원이다. 보험 가입대상은 적합성 인증이 필요한 제품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줄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21개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용품,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산품, 에너지, 계측장비,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물, 환경검사장비, 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소방시설, 자동차이다. 따라서 이들 제품에 대해 PL법과 산촉법을 결합하면 의무가입대상 제조물에 해당되므로 이를

58)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함. 산업융합촉진법 제2조 2

활용한 보험 가입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준하도급계약서나 표준약관에 PL책임과 PL보험 가입조항을 운영하는 방안이다.⁵⁹⁾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경우 2017년 6월 현재 41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중 가구 제조, 건설자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자동차업, 전기업종, 잔저업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양플랜트업은 PL책임부담과 계약종료 후의 PL책임 부담 의무를 규정⁶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계약서 중 PL책임의 이행방법을 규정한 것은 조선제조임가공업만 수급업자에게 PL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원사업자의 요구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⁶¹⁾ 중소기업중앙회가 2016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시 원청자가 PL보험증권을 요구하는 비중은 32.9%이며 도소매업이 42.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L보험증권을 요구하는 거래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33.7%이다. 이 비율 또한 도소매업이 40.8%로 가장 높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아직 PL보험증권 요구비율은 낮은 상태이다.

59) 차일권(2007), “PL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보험개발원 Workshop 자료 p. 18

60) 전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5조(제조물책임)는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한 목적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③ 원사업자는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

제47조 (잔존의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해지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제35조에 정하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 2. 제36조에 정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제37조, 제38조, 제39조에서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 기술자료 제공요구, 기술자료 예치 등에 관한 사항 4. 제43조에 정하는 하자책임에 관한 사항

61) 조선제조임가공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41조(제조물책임) ④ 을은 목적물과 관련된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에 가입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V-9〉 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 시 PL보험증권 요구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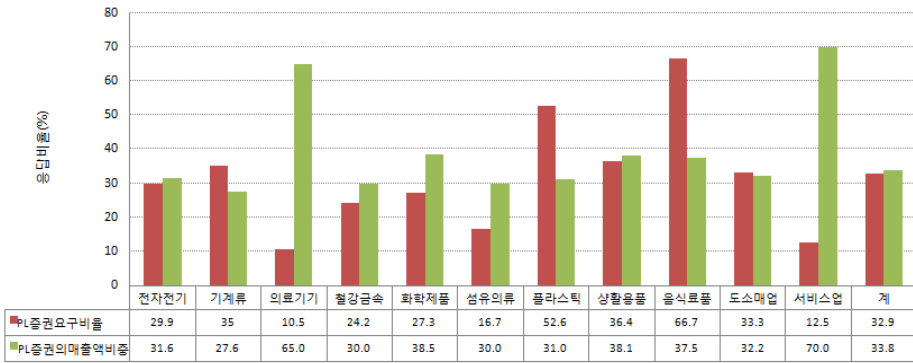
구분		기업 수	증권요구 응답 비중	증권요구거래의 매출액 비중					
				10% 미만	10- 20%	20- 30%	30- 40%	40% 초과	평균
업 종 별	제조업	242	31.4	17.1	26.3	15.8	6.6	34.2	31.7
	도소매업	54	42.6	8.7	30.4	4.3	8.7	47.8	40.8
	기타	14	21.4	-	33.3	33.3	-	33.3	33.3
생 산 형 태	완제품	240	32.9	17.7	26.6	11.4	6.3	38.0	33.4
	부품	43	34.9	6.7	33.3	20.0	6.7	33.3	30.9
	기타	27	29.6	-	25.0	25.0	12.5	37.5	43.1
합 계		310	32.9	14.7	27.5	13.7	6.9	37.3	33.8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6), 『제품사고피해대응에 대한 조사연구』, pp. 212~213

따라서 PL책임을 규정하지 아니한 다른 표준계약서에 PL책임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PL책임 이행이 되도록 “PL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를 신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계약을 이행할 때 PL보험료를 원가에 반영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해가능성이 큰 제조물에 대하여 거래 계약 시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PL책임과 보험 가입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가구, 음식료품, 가전제품, 의약품과 의료기기, 고무플라스틱제품, 화학제품 등 제조물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사고가능성이 큰 의료기기업의 경우 PL보험증권을 요구하는 거래의 매출액이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5〉 참조).

〈그림 V-5〉 중소기업의 업종별 하도급 거래 시 PL보험증권 요구현황



주: 최근 2년간 310개 중소기업의 응답현황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6), 「제품사고피해대응에 대한 조사연구」, pp. 212~213

이것은 원청자들이 인식하는 PL리스크와 비례한다는 점에서 이들 업종에 대해 하도급계약서에 PL책임 관련 조항과 PL보험 도입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고, 하도급 계약 시 PL보험 가입내역과 보험료비용이 원가에 투명하게 반영해야 한다. 또한 향후 인공지능에 기반한 4차 산업이 활성화되는 경우 제품제조자와 부품제조자, SW 공급자 및 유지보수업 등 다양한 업종이 협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PL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현행 PL법은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관련 업종에 대해 PL책임부담 및 손실배상을 위한 PL보험 가입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는 제거되고 자동차의 결함에 의해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게 되어 영국의 경우에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단일 보험자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⁶²⁾

62) 이기형(2017),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RI 리포트』, 제 415호

〈표 V-10〉 표준하도급계약서의 PL책임 및 PL보험 가입조항 필요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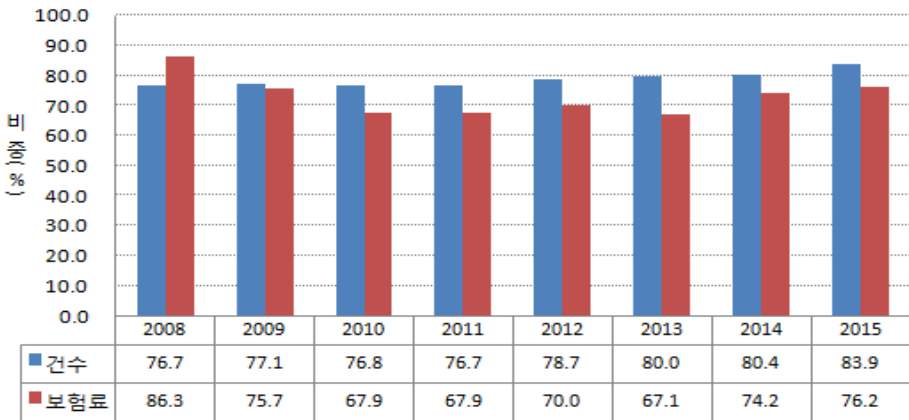
구분	대상업종	PL책임 잔존의무	PL보험 가입 규정
PL책임 규정 도입 업종	가구업	도입됨	도입필요
	건설자재업		도입필요
	자기상표제조업		도입필요
	자동차업		-
	전기업		도입필요
	전자업		-
	조선업		-
	전기공사업		-
	조선제조임가공업		기 도입
	해양플랜트업	도입필요	-
PL책임 미도입 업종	고무플라스틱업	PL책임 및 잔존책임 도입필요	도입필요
	기계업종		-
	상용SW 공급 및 구축업		도입필요
	상용SW 유지보수업		도입필요
	섬유업		도입필요
	소방시설공사업		도입필요
	엔지니어링활동업		도입필요
	음식료업		도입필요
	의료기기업		도입필요
	의약품 제조업		도입필요
	전기공사업		-
	의약품 제조업		도입필요
	화학업		도입필요

다. 판매채널 다양화

PL리스크는 동질리스크이지만 제조업체별 가입한 제조물별로는 PL리스크가 매우 다른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개별 기업별 규모나 리스크 상황에 따라 판매채널을 달리 하여 리스크폴링을 할 필요가 있다. 2002년 PL법 도입 이후 단체를 통한 보험계약이 주요 채널로 역할을 하여 왔으며, 2015년 현재 계약 건수 기준 83.9%, 보험료 기준으

로는 73.7%나 되며, 최근에 들어 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표 Ⅱ-12〉 및 〈그림 V-6〉 참조).

〈그림 V-6〉 연도별 단체계약 건수 및 보험료 비중



이에 비해 일본은 중소기업중앙회 등 단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비중은 10%를 조금 상회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PL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계약자 입장에서는 비용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개별 기업들의 리스크 상황을 파악할 수 없고 언더라이팅이 용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PL보험의 판매채널을 관련협회 등을 통한 단체계약방식과 대리점과 중개사 채널을 이용한 판매방식을 확대하여 리스크 평가를 통한 언더라이팅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험통계가 사내에 축적되면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은 물론이고 해외 시장에서의 수재도 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2. 손해보전기능 강화

가. 전부보험 유도

배상책임보험은 일반 재물보험과 같이 전부보험과 일부보험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 동일한 담보 배상책임리스크일지라도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역량에 따라 손실가능성은 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PL보험은 PL법에 기초한 특수불법행위에 해당되고 EU의 PL지침⁶³⁾이나 국내의 환경오염사고배상책임보험⁶⁴⁾과 같이 손해배상액 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보상한도액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6년에 중소기업 310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2년 동안 PL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규모와 보험금 지급 및 기타 부담규모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1.6%의 회사가 사고경험이 있으며, 총 배상액은 평균 1,600만 원이며 이 중 보험금은 1,293만 원으로 보험담보율이 7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상액의 30%에 가까운 금액을 사내 적립금 등으로 배상한 것으로 보인다.

〈표 V-11〉 중소기업의 손해배상액 중 보험금 지급률 현황

(단위: 개사, %, 건, 만 원)

구분		기업 수	사고경험 비율	피해가 큰 비율	배상 건수	총배상액	보험금 지급	기타 지급	보험 담보율
업종별	제조업	242	10.7	26.9	2.9	1,695	1,265	429	74.6
	도소매업	54	16.7	22.2	1.4	693	638	54	92.1
	기타	14	7.1	0.0	13.0	10,000	7,900	2,100	79.0
생산 형태	완제품	240	12.1	27.5	2.9	1,960	1,497	463	76.4
	부품	43	7.0	0.0	4.0	208	135	73	64.9
	기타	27	14.8	25.0	1.3	705	682	22	96.7
합 계		310	11.6	25.0	2.8	1,674	1,293	382	77.2

주: 보험담보율 = 보험금 지급 / 총배상액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6), 『제품사고피해대응에 대한 조사연구』, pp. 209~211

63) EU PL지침 제16조는 회원국이 동일 결함을 원인으로 하는 인적손해배상금액을 7,000만 유로로 제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채택한 국가는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베니아임

64) 위험시설에 대해 2,000억 원의 손해배상책임 한도를 두고 있음. 이기형(2015), 「환경책임법 주요내용과 보험제도 운영방안 고찰」, 『KiRi Weekly』, 보험연구원, 제340호, p. 1

이와 같은 현상들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가액인 보상한도액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상한도액은 과거 경험통계기간 동안의 사고발생 빈도와 사고심도를 추정하여 산출한 손해배상해야 할 금액이 된다. 또한 기업이 추정된 최대 손해배상액을 보험으로 전부 전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보유(낮은 보상한도액, 높은 자기부담금 설정)할 것인지는 기업의 재무적 능력과 리스크관리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아울러 배상책임보험은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등의 방어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해주므로 기업은 이를 감안하여 추정된 보상한도액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차칫 제조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PL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험금을 손해배상금을 지출하기 전에 방어비용으로 지출하게 되는 경우 기업은 보험 외의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보상해야 하므로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 PL보험의 경우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방어비용은 전체 지급보험금 총액에서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L사고가 발생하면 평균적으로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보상한도액으로 가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V-12〉 미국 PL보험의 지급보험금 중 방어비용 비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별	손해사고기준			손해배상청구기준			합계		
	총지급액	방어비용	비율	총지급액	방어비용	비율	총지급액	방어비용	비율
2005	2,573	813	31.6	192	57	29.7	2,766	870	31.5
2006	2,448	788	32.2	291	100	34.2	2,739	888	32.4
2007	2,544	768	30.2	332	67	20.2	2,876	835	29.0
2008	2,205	692	31.4	525	116	22.1	2,730	808	29.6
2009	1,945	583	30.0	461	98	21.4	2,405	682	28.3
2010	2,049	621	30.3	447	95	21.3	2,496	716	28.7
2011	2,043	558	27.3	517	114	22.0	2,560	672	26.3
2012	2,018	538	26.7	503	109	21.7	2,521	647	25.7
2013	2,213	565	25.6	477	101	21.3	2,689	667	24.8
2014	2,403	604	25.1	509	119	23.5	2,912	724	24.8
계	22,441	6,532	29.1	4,255	977	23.0	26,695	7,509	28.1

주: 원수 및 수재기준이며 총지급보험액은 “지급보험금 + 방어비용 + 손해조정비 + 준비금”의 합임

자료: AM Best, Aggregates & Averages(2000, 2010, 2015), “Schedule P-Part 1R-Section 1,2-Product Liability”를 참조하여 작성

따라서 PL보험이 PL책임부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상의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전부보험이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업의 PL리스크는 개별 기업이 안고 있는 리스크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회사는 청약 시에 개별 기업의 PL리스크를 평가하여 측정된 손해배상액에 방어비용을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상한도액으로 보험 가입하도록 권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한 매출액 규모의 기업일지라도 PL리스크에 노출된 기업은 더 큰 규모의 보상한도액을 가입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의 1사고당 대인 및 대물배상 보상한도액 별 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대인배상의 경우 1억 원 이하로 가입한 계약 건수는 32%이며 5억 원까지 가입한 기업은 88%에 해당한다.

〈표 V-13〉 1사고당 대인 및 대물 보상한도액별 누적분포 및 손해율

(단위: %)

보상 한도액	대인대상				대물배상			
	건수	보험료	보험금	손해율	건수	보험료	보험금	손해율
0.1억 이하	0.22	0.73	0.89	31.2	0.73	0.88	0.71	20.9
0.3억	0.25	0.73	0.89	97.8	0.73	0.88	0.79	1,044.5
0.5억	0.27	0.74	0.90	22.7	0.74	0.88	0.79	38.5
1억	0.32	0.74	0.90	7.8	0.75	0.88	0.79	18.0
3억	0.72	0.78	0.92	17.5	0.84	0.90	0.80	19.1
5억	0.88	0.79	0.93	16.6	0.88	0.90	0.81	69.2
10억	0.96	0.81	0.94	14.4	0.90	0.91	0.81	8.7
20억	0.99	0.83	0.95	5.7	0.92	0.91	0.82	12.3
30억	0.99	0.84	0.98	71.5	0.92	0.92	0.82	1.3
50억	0.99	0.86	0.99	4.4	0.92	0.93	0.83	19.7
50억 초과	1.00	1.00	1.00	2.7	1.00	1.00	1.00	65.6

주: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의 2010~2014년의 평균 기준임

2) 손해율 = 지급보험금 / 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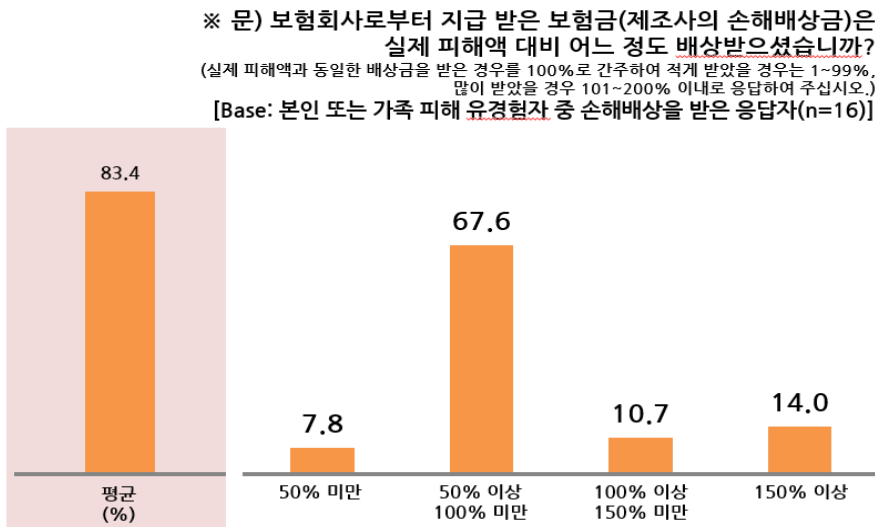
자료: 보험개발원

옥시의 가슴기 살균제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772명이며 사망자가 165명에 이른다.⁶⁵⁾ 이러한 피해에 대해 옥시사가 제시한 손해배상안에 따르면 영유아 및 어린이의 사망은 10억 원, 중상은 10억과 향후 치료비이며 성인은 사망 시 10.4억~9.2억 원,

중상 13.3억 원 이상이다.⁶⁶⁾ 이에 의거하여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1,650억 원 (165명 ×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PL사고에 대비한 리스크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하여 충분한 보상한도액으로 PL보험에 가입하고 이러한 사례를 예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국내 소비자들은 PL보험 가입에 따른 당해 제품의 가격 상승을 일정한도까지 용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적절한 보상한도액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손해배상 피해액 대비 배상 정도를 물어본 결과 ‘50% 이상 100% 미만’이 67.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50% 이상’(14.0%), ‘100% 이상 150% 미만’(10.7%), ‘50% 미만’(7.8%)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액 대비 배상 정도는 평균 83.4%로 나타나 실제 피해액(100%)보다 평균 16.6%p 낮은 수준의 배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7〉 PL사고 피해액 대비 보험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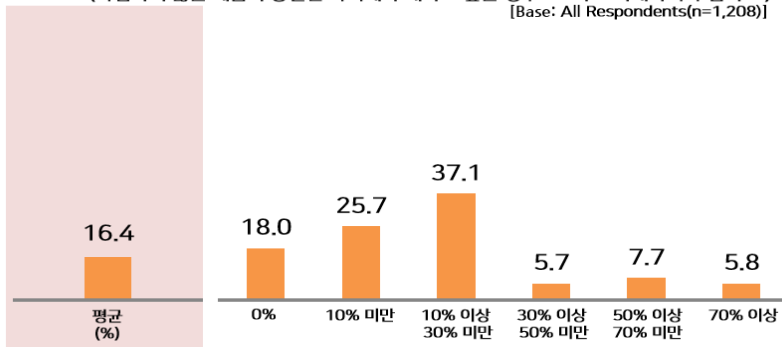
65) 환경부 보도자료(2017. 1. 13),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8명 추가인정”

66) 옥시레킷벤키저 보도자료(2016. 6. 26), “옥시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해자를 위한 배상안 제안(1,2차 조사)”

따라서 기업은 PL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 가입비용을 판매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사고 시에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은 제품의 가격이 평균 16.4% 상승하더라도 PL보험에 가입한 제품을 구매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18%만 보험 가입에 따른 가격 상승을 용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응답자의 19.2%는 30% 이상 상승하더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V-8〉 PL보험 가입제품의 가격 상승 용인 의향

※ 문)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품을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 경우, 가입하지 않은 상품대비 어느 정도까지 가격상승이 있더라도 보험가입 제품을 구매하시겠습니까?
(가입하지 않은 제품과 동일한 가격에 구매하고 싶은 경우 0%라고 기재하여 주십시오.)
[Base: All Respondents(n=1,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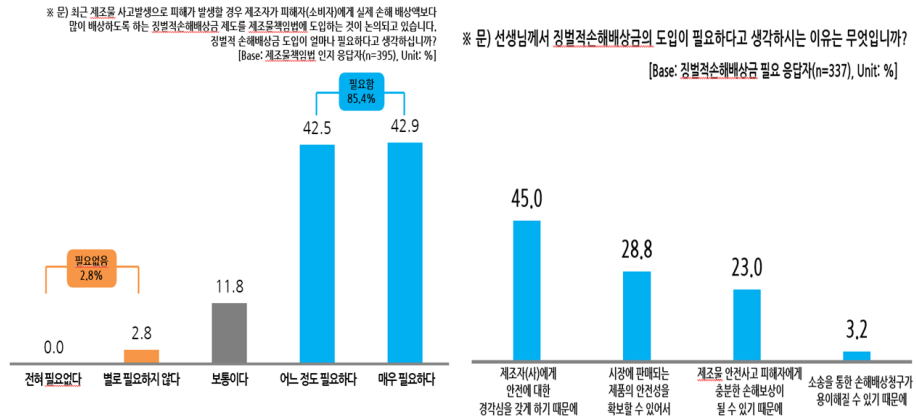


나. 징벌적 손해배상금 담보방안

최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2017년 PL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과 입증책임 추정조항을 도입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이는 2017년 4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 손해의 3배 내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PL법 제3조 제2항). 다만,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제조업자의 “고의성의 정도,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를 감안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V-9〉 징벌적 손해배상금 도입 필요성과 이유



PL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 설문을 한 결과, 85.4%의 소비자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8%만 필요없다고 응답해 절대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PL법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필요한 것은 ‘제조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4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28.8%), ‘제조물 안전사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23.0%)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V-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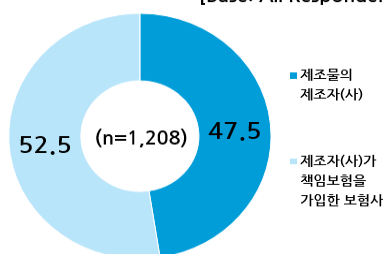
현행 PL보험약관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면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판매할 상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담보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담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가격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약관 개정도 필요하다. 황현아(2017)는 장덕조(2003) 연구 등을 참조하여 검토한 결과 불법행위 억제 및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보험담보 허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보험담보 시 고려요인으로서 고의사고의 담보 가능성, 보험료 상승 및 사업의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고의사고의 담보여부이다. 현행 PL법은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된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PL 사고의 손해배상액의 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취지로 운영되는 보험약관은 자동차보험의 대인 및 대물배상책임담보이다. 즉 자동차보험의 대인 및 대물 배상책임담보는 음주운전 등 고의사고에 대해 보험담보를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이지만 자기신체손해도 보상해주고 있다.⁶⁷⁾ 이와 같이 행위자의 고의적인 사유에 위한 제3자의 손해배상은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 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장덕조(2003)⁶⁸⁾는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의 보험담보를 긍정하는 배경으로 상품을 개발할 때 약관에 면책사유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합리적 기대원칙 등에서 담보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배상해야 할 주체로 '제조자(사)가 PL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라는 것에 52.5% 응답했고, '제조물의 제조자(사)'라는 것에 47.5% 응답하여 명확한 방향으로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10〉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배상주체

※ 문) 향후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손해배상금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배상금 배상은 누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 All Respondents(n=1,208)]



67) 이기형(2016), 「음주운전 사고 방지에 대한 보험제도 기여방안」,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p. 6

68) 장덕조(2003), 「징벌적 손해배상의 보험보호에 관한 의의와 그 시사」, 『상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상사법학회, p. 276

둘째, PL보험사업의 안정성 및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 배상책임보험 위기 시에 한도없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보상 등으로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고 PL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하여 많은 보험회사의 경영이 어렵게 된 경험에 있다. 1996년 미국의 통일주법위원국가회는 징벌적 손해배상모범법⁶⁹⁾을 채택하고 45개 주가 이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보상적 손해배상액(Compensatory damage)의 한 자릿수 이내로 제한하는 판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PL보험은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운영은 2018년에 시행될 PL법 내용비교 시 배상한도, 배상판결의 고려요인에 보면 유사한 면이 많다고 판단된다.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주와 인정하지 않는 주의 과거 2009~2015년간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경과 손해율과 보험영업 이익률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V-14〉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보험담보 여부별 손해율 격차

(단위: %)

구분	징벌적 손해담보		징벌적 손해부담보		격차(담보-부담보)	
	손해율	영업이익률	손해율	영업이익률	손해율	영업이익률
평균	43.2	-11.8	50.0	-24.7	-6.7	12.9
표준편차	34.1	59.4	26.5	54.0	7.6	5.3
최대값	426.1	111.7	110.3	55.8	315.8	55.9
최소값	-204.0	-182.6	1.5	-176.0	-205.5	-6.6
상한	77.3	399.2	76.4	159.3	0.9	239.9
하한	9.1	-601.2	23.5	-392.6	-14.3	-208.6
해당 주수	31		29		3	

주: 1) 주별 2009~2015년간의 평균손해율과 보험영업이익률(영업이익 / 경과보험료)기준임

2)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담보여부는 직접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직접적 재산책임부과(Directive assessed punitive damages)방식 채택여부 기준으로 한 것임

자료: 1) Alexis Watts(2017, 7, 5), "Limits on Punitive Damages"(<http://www.legalmatch.com/law-library/article/limits-on-punitive-damages.html>)

2) http://www.mcandl.com/puni_chart.html(2017, 7, 5)

3) NAIC(2017), "Report on Profitability By Line By State in 2015"

69) 모델법 제7조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 불법행위의 본질, 실제 손해액의 정도, 피고가 납부 또는 납부할 벌금이나 위약금, 불법행위로 피고가 얻은 이익, 피고가 취한 구제수단, 피고의 관련법령 준수 또는 미준수 여부, 피고의 재정상태, 부과 기인한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역효과를 두고 있음. 김수아(2014),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법의 최근 경향: 야수 길들이기?」, 『민사법연구』, 제22집, p. 202

이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담보하는 주(Insurable state)는 담보하지 않은 주보다 손해율과 보험영업이익률도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보험담보가 PL보험사업의 안정성에 대한 영향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점은 1990년대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개혁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국내에서 이를 담보하여도 매우 제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손해배상액 규모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경험통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의 수지상 등을 유지하기는 용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V-15〉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보험담보화 방안

구분	2018~2022	2023~2027	2027~
보통약관	징벌적 손해배상금 면책으로 규정		3배 이내 존속 시 면책 검토
특약	징벌적 손해배상금담보 특약 개발	특약 운영실적 검증 확대	보통약관 흡수
운영	리스크관리 양호기업 선별적 담보, 경험요율과 연계		경험요율과 연계성 확대
보험료	30% 이상 안전율 감안 산정	요율수준의 적정성 확보	-

2018년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담보는 다음과 같이 3단계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022년까지는 현행 PL보험 보통약관에서 면책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담보 특약을 참조위험률로 개발하여 선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담보 특약의 첨부은 제조사의 기업의 규모, 과거 사고경험, 리스크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부대여부를 결정하고 경험요율제도에 이를 반영하여 차등화시킴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제고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는 상당한 수준의 안전율을 반영하여 산출할 필요가 있다. 2023년에는 특약 운영실적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요율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약 도입이 10년이 경과한 2027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3배 이내로 존속되는 경우에 보통약관으로 흡수하고 경험요율의 적용 폭을 확대하여 제조사의 리스크통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리스크관리 촉진 역할 확대

가. 경험요율제도 도입

보험계약조건인 담보위험과 부담보위험,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과 같은 보험계약조건과 더불어 보험료적용체계(Rating plan)는 계약자의 리스크관리를 촉진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다른 보험과 달리 PL보험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때문에 매출과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영진이 관심을 가져야 할 보험이다. Vicusi and Hersch(1990)는 이러한 관계를 규명한 바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PL보험은 계약자의 리스크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 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보상한도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보상한도액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추정조항 도입이나 징벌적 손해배상금 도입 등으로 PL리스크가 증가하지만 낮은 보상한도액으로 가입하면 사고 시에 보험효용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조건을 통한 리스크관리 촉진은 최소화하고 보험요율체계를 통한 리스크관리 촉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PL보험의 요율체계는 업종별 등급요율체계에 안전마크 부착제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만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PL보험은 예정요율제도⁷⁰⁾를 운영하고 있는 화재보험의 공장물건(2014년 1,184억 원) 규모보다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요율체계(Rating plan)로 되어 있어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유인이 적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요율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향후 PL보험계약자의 리스크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업종별 기본요율에 성과요율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안전마크인증제품 할인제도는 5% 할인만 해주고 있어 리스크관리 성과를 판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마크 부착 제품일지라도 PL리스크관리를 잘 하지 못한 기업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사

70) 화재보험 공장물건의 예정요율제도는 보험 가입금액 20억 원 이상의 계약에 적용하며, 과거 5년간의 사고 건수와 손해율에 따라 25% 할인하고 있음

전적으로 보험료 할인만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PL보험의 성과요율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의 요율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도입할 성과요율제도는 과거 5년 동안의 사고발생빈도와 손해율에 따라 20%를 할인·할증하는 경험요율(Experience rating)과, 기업의 PL리스크관리체계의 구축 내용과 실행방법에 따라 최대 20% 할인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예정요율(Schedule rating)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미쯔이스미토모사는 과거 5년간의 사고이력 등을 제출받아 보험료를 산출하고, 나아가 ISO 9001(품질관리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중 하나를 제3자로부터 인증받고 품질관리부서와 책임자 운영, 광고, 판매, 취급설명서, 제품설명서 PL부서나 법무부서의 심사체계, 보험금 청구방법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예정요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PL보험의 자사요율화를 적극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PL법 시행에 맞추어 개발된 PL보험상품의 운영경험이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보험자 협의 요율 적용 비중이 보험료 기준으로 90%가 넘고 있다. 이는 PL보험의 수요 증가에 따라 규모 확대에 중심을 둔 PL보험 운영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각 손해보험회사는 담보력의 증가로 보유확대를 통한 가치 증대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보유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PL보험 인수경험을 바탕으로 자사요율로 전환하고 인수 시에 언더라이팅 조사⁷¹⁾와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여 언더라이팅하고 재보험 출재를 결정하는 언더라이팅 권한(Underwriting authority)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71) 미국 ASIG사는 PL보험청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하고 있음. 1. 계약자명(자회사 모두 포함), 계약자의 지위(개인, 협업자, 회사), 계약자의 사업내용(제조자, 공급자, 수입자, 기타), 계약자의 부보자산금액/사업기간/자회사 명칭, 가입희망보상한도액, 담보지역과 지역별 담보상품명 리스트, 최근 5년 동안 리콜 또는 공급중단사례와 그 이유, 최근 3년간 신제품 출시국가, 담보기간 동안 신제품 출시국가, 추가 피보험자명, 과거 PL관계법 위반경험, 원자재나 부품 등을 수입하는지, PL손해통제프로그램 운영 여부, 품질관리 절차 존속 여부, 리콜계획존재 여부, 국가의 제품안전기준 준수 여부, 제품시험실 연구원의 보험 가입 여부, 보관제품의 기록관리 유지 여부, 보험담보증권방식(손해사고기준/배상청구기준), 과거 인수거절 경험 및 사유, 미국/캐나다와 기타 국가별 과거 5년간 발생 손해액, 5천 달러 이상 손해인 경우 상세히 기록, 희망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 등임. <http://www.aig.com.sg/content/dam/aig/apac/singapore/documents/other/apac-sme-product-liability-insurance.pdf>(2017.7.7)

〈표 V-16〉 PL보험 요율체계 운영방안 제시

구분		현행 요율체계	변경 요율체계
요율체계		기준보험료 × (보상한도액 인상 계수 - 자기부담금 할인계수) × 특약 할인 및 할증	기준보험료 × (보상한도액 인상 계수 - 자기부담금 할인계수) × 특약요율 × 성과요율
기본요율		- 제조물별/완성작업별/매출액별 기준요율 - 보상한도액 인상계수	
할인요율		- 자기부담금 할인계수(50만 원 0.07, 100만 원 0.14) - 인증마크부착 특약 할인(5%)	- 자기부담금 금액 확대(200만 원, 500만 원) - 인증마크부착 특약 할인(5%)
할증요율		-	-
성과 요율 제도	경험요율	-	5년간 사고빈도, 손해율에 따라 ±20% 차등적용
	예정요율	-	사고 예방과 손실축소체계를 갖춘 경우 20% 할인적용
	소급요율	-	-

나. 리스크관리 컨설팅 제공

PL리스크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일지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소규모 기업일지라도 소비생활용품 제조하는 경우에는 빈번한 PL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입증책임추정 조항 도입과 같은 PL법 개정으로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어 기업의 PL책임 부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 중에서 PL개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37.5%에 불과하며, 나머지 기업은 조금 알거나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²⁾

72) 중소기업중앙회(2016), 『제품사고 피해대응에 대한 조사연구』, p. 218

〈표 V-17〉 5년 평균 계약자 매출액별 계약 건수 및 보험료

(단위: 건, %, 백만 원)

매출액	계약 건수 및 비중		보험료		건당 보험료 (천 원)
	건수	비중	금액	비중	
5억 이하	25,502	63.4	75,231	55.9	2,950
10억 이하	6,769	16.8	17,566	13.0	2,595
50억 이하	5,577	13.9	7,269	5.4	1,303
100억 이하	1,257	3.1	2,838	2.1	2,258
200억 이하	539	1.3	2,613	1.9	4,846
500억 이하	276	0.7	4,417	3.3	16,005
1,000억 이하	115	0.3	2,628	2.0	22,772
1,000억 초과	183	0.5	22,107	16.4	121,069
합계	40,219	100.0	134,669	100.0	-

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만의 2009~2015간의 평균 실적임
 자료: 보험개발원

이와 같은 PL법의 강화는 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의 PL리스크에 영향을 주고 기업의 PL리스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부담정도는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개별 기업별로 맞춤형 PL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기업의 매출액 규모별 PL리스크 노출정도는 연간 매출액 5억 원 이하 기업의 계약이 63.4%이고 100억 원 이상의 기업은 5%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담하는 건당 보험료는 소규모 기업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은 리스크관리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영세한 소규모 기업은 PL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비용 측면에서 조직이나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⁷³⁾

또한 업종별 PL보험 특성도 다르다. PL보험의 보험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음식물제조업이 41.9%이고, 다음은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이 14.8%이다. 건당 보험료는 전기전자 제조업이 770만 원으로 가장 많고, 화학제품 등이 240만 원이다. 그리고 지급보험금과 손해율도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다.

73) 2016년에 19개 중소기업의 PL사고 예방 노력을 하지 못하는 원인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PL사고 발생 위험이 적어서'가 52.6%이고, '관련정보나 지식 등이 부족해서'가 26.3%,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서'가 10.5%, '필요성을 느끼기 못해서 등'이 10.6%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2016), 『제품사고 피해대응에 대한 조사연구』, p. 217

〈표 V-18〉 5년 평균 업종별 보험료와 보험금 비중 및 손해율

(단위: %, 백만 원)

업종별		보험료		지급보험금		경과 손해율
		비중	건당	비중	건당	
음식물류		41.9	0.57	29.9	1.55	29.8
생 산 물 류	소계	39.5	5.47	44.9	362.93	47.6
	섬유·의복 등	1.2	0.31	0.1	0.11	1.9
	나무제품 제조업	1.3	0.12	2.2	1.07	67.8
	화학제품·석유·석탄 등	5.6	2.40	3.6	9.62	27.1
	비금속광물 제조업	0.7	0.82	0.5	1.79	28.9
	조립금속·기계장비제품	0.7	0.03	2.0	0.44	123.9
	전기·전자기기제품	14.8	7.77	14.2	21.40	40.1
	자동차 제조업	0.7	0.03	0.5	0.05	33.5
	기타 제조업	14.6	1.09	21.9	2.17	63.0
완성작업위험		18.6	0.03	25.2	0.33	56.9
업종계		100.0	0.16	100.0	1.03	41.9

주: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만의 실적임(2010~2015)

2) 참조위험률(자사요율 포함) 적용 실적으로 재보험자 협의요율 실적은 제외됨

자료: 보험개발원

이와 같이 기업 규모별로, 업종별로 PL리스크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PL리스크관리 서비스 매뉴얼을 작성하여 기업 특성에 따른 PL리스크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기업성 보험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재보험자의 요율에 사용하거나 공동인수를 하여 왔기 때문에 부모 기업에 대한 리스크 평가와 관련 서비스 제공, 언더라이팅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2015년 기업성 보험의 요율자유화가 언더라이팅기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 부모 기업의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찍부터 기업성 보험에 대한 언더라이팅기능을 강화한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PL리스크를 포함한 기업성 보험에 대한 리스크 컨설팅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일본 동경해상⁷⁴⁾은 2,000건 이상의 제품안전과 PL컨설팅 경험이 축

74) 東京海上日動火災保険(2012), 「PL関連事故・訴訟の現状」, p. 34

적된 자회사 “동경해상일동 리스크 컨설팅”을 통해 계약자에게 PL리스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은 제품의 안전관리체제 및 PL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제품의 리콜 및 사고 시 지원, 제품의 PL사고에 대한 리스크 평가, 제품의 취급설명서와 경고표시에 대한 컨설팅, 환경경영전략수립 지원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쓰이스미토모사도 자회사인 “인터리스크총연”을 통해 PL 예방대책과 사고 발생 시의 사고 대응 및 지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사고에는 해당지역의 전문적인 자회사와 관련네트워크를 활용하여 PL사고 대응 서비스를 제공한다.

4. PL보험의 마케팅 활용

PL보험은 제조업자 등이 가입하는 기업성 보험이지만 실제 보험금 수혜자는 소비 생활을 하는 일반 국민들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시에 기업과 보험계약에 대해 협상해야 하지만 사고 시에는 다수 피해자들과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접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에 대한 PL보험의 관련제도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마케팅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첫째, 가입하는 제조업체의 제품에 자사의 상품명과 보험기간, 보험금 청구방법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를 활용하는 경우 제품마다 가입한 보험회사를 널리 인식시키고 신용도를 제고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보험상품의 추가가입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조사자의 61.4%가 제품 구매과정에서 PL보험에 가입한 제조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품 구매 시에 PL보험 가입을 17.2%만 확인하고 있으나 가슴기 사고 이후 PL법 개정으로 PL보험 가입 경향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가입하는 제품에 자사의 이름과 상품명칭, 보험금 청구방법 등을 명시하여 홍보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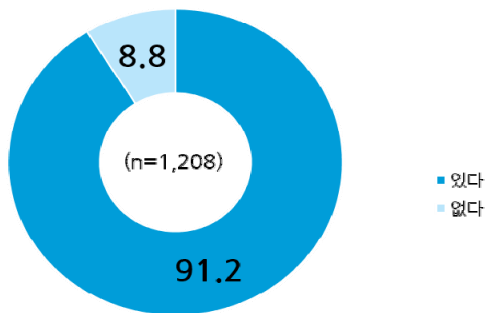
둘째, PL보험이 제3자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보험금 청구가 되는 경우 신속한 보험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절차를 이행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로부터 접수된 피해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하는 것보다 지급 보험금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대다수 소비자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지속적인 타사로부터 계약전환이 일어날 수 있고 기존 가입한 보험계약의 갱신이 지속되어 우량한 계약자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PL사고 시 보험금 직접 청구 의향을 조사한 결과 91.2%가 하겠다고 답했다. 따라서 제3자직접청구권제도를 통해 소비자와 신뢰관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V-11〉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 의향

※ 문) 향후 구매하신 제조물(제품)과 관련된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제조물배상책임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의향이 있으신니까?

[Base: All Respondents(n=1,208)]



셋째, PL보험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강화하여 보험회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국내 소비자는 PL법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67.3%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험교육기관이 보험교육을 할 때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PL책임과 보험을 교육하여 PL법의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기업은 보험을 가입한 PL리스크관리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안전한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함에 따라 PL리스크관리 비용을 낮추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VI. 결론

2002년 PL법을 시행한 이후 PL보험시장은 매년 크게 성장하여 2015년 현재 화재 보험과 같은 단일 보험종목에 견줄 만큼의 보험료 규모로 성장했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PL보험은 34만 건의 보험계약에서 1조 2,321억 원의 보험료를 거둬들여 46,906건의 사고에 2,999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PL보험은 대규모 PL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영업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슴기 살균제 사고로 인해 PL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15년 만에 PL법이 개정되어 2018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될 내용은 그동안 피해자가 제조자의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입증책임 추정조항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PL보험시장의 보험수요나 시장구조와 보험상품 등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PL보험시장은 PL법 시행 이후 시장집중도(HHI)가 완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사나 중소기업사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PL보험시장 환경변화와 소비자의 PL법과 PL보험 인식도 조사에 기초하여 향후 PL보험의 리스크폴링기능, 손해보전기능, 리스크축진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리스크폴링기능은 PL리스크에 대한 보험상품을 판매채널을 경유하여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기능이다. 가능하면 다수의 집단을 폴링하여 위험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리콜비용담보와 같은 새로운 담보 특약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을 통일하고 자사요율체계를 구축한 뒤에 초과보험과 포괄보험을 통해 종합적인 배상책임 리스크폴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의 마련과 더불어 보험 가입률이 제고되도록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의 하도급계약서에 제조물책임과 보험 가입요건을 마련하는 개정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PL보험은 PL법 도입 이후 2,999억 원을 손해배상액에 대한 보전기능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총 배상액에 대비하여 77%만 보험금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험이 충분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PL사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기능이 되도록 보험 가입 시에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적정한 배상액과 방어비용을 추정하여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 시행될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자배법 등에서 이미 고의성 사고를 담보하고 있으므로 특별약관으로 개발하여 5년 동안 선별적으로 운영하고 위험도 검증 후에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PL보험을 통해 계약자의 리스크관리를 촉진하기 위해서 단순한 등급요율체계를 경험요율과 예정요율을 가미한 성과요율제도로 전환하고, 계약자별 노출된 PL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컨설팅을 보험회사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PL보험 가입상품 선호나 제3자청구권 활용의향을 보험마케팅에 연계시켜 자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관계마케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PL보험의 역할 제고 방안이 마련되는 경우 PL보험은 2018년에 시행될 PL법에 부응함과 더불어 일본처럼 배상책임보험시장의 성장동력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성 보험 중 가장 먼저 국내 시장의 경험통계에 기초하여 리스크 평가와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지면 다른 보험으로 확산되어 일반보험 역할과 전문성 확대에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되는 경우 사고책임의 상당한 부분을 제조사나 자율주행시스템 제공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PL보험이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자율자동차를 비롯한 4차 산업이 확대가 되면 새로운 PL리스크 증가가 수반되므로 PL보험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PL보험이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이론적 가설과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고복수·서준혁(2013),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실태 및 활용방안-충청지역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영공학학회지』, 제18권 제1호, p. 34
- 김성천(2016), 「일본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제안 동향과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제74호
- 김수아(2014),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법의 최근 경향: 야수 길들이기?」, 『민사법연구』, 제22집, p. 202
- 공정거래위원회(2017), 「기업·소비자와 함께 활력있는 시장 구현」, 『2017년 업무보고서』, p. 25
- 금융감독원(2011), 『금융감독용어사전』
-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보험통계월보』
- 오수진·곽윤영(2015), 「리콜정보의 소비자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 윤진수(2011), 「제조물책임의 주요쟁점」, 『법학연구』, p. 17
- 이경룡·권오성(1997), 「한국 수출기업의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관리 성과분석」, 『리스크관리연구』, 제8권 0호, pp. 1~34
- 이기형(2015), 「환경책임법 주요내용과 보험제도 운영방안 고찰」, 『KiRi Weekly』, 제340호, 보험연구원
- _____(2016), 「음주운전 사고 방지에 대한 보험제도 기여방안」,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 _____(2017),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Ri 리포트』, 제415호, 보험연구원
- 이기형·김란·조혜원(1996), 「주요국의 PL보험제도 운영현황」, 조사연구자료 96-3
- 이은영(2014), 「소비자안전법제의 기본구조와 개선방향」, 『소비자문제연구』, p. 17
- 장덕조(2003), 「징벌적 손해배상의 보험보호에 관한 의의와 그 시사」, 『상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상사법학회, p. 276
- 전영주(2010),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9집, pp. 303~307

- 중소기업중앙회(2016), 『제품사고 피해대응에 대한 조사연구』, pp. 209~218
- 지수현(2002), 『배상책임보험론』, 보험연수원
- 차일권(2007), “PL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보험개발원 Workshop 자료
- 최창희(2017),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 한국소비자보호원(2012), 『기업의 리콜제도 운영현황 및 인식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pp. 27~28
- 한국소비자원(2013), 『기업의 리콜제도 운영현황 및 인식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p. 35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및 통계분석』, 각 연도
- 황현아(2017), 「제조물 책임법 개정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변화 방향」,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 황현영(2013), 「제조물책임법 개정논의에 따른 제조물 책임보험의 개선방안 연구」, 『비교사법』, 20(2), 한국비교사법학회
- 保険毎日新聞社(1987), アメリカの賠償責任保険の危機とその解決への道, pp. 1~8
- 銀泉株式会社(2014), 『欧州諸国のPL（製造物責任）法制度と製品安全性規制の動向－主要国の制度概要と特徴について－』, Risk Solution Report
- 東京海上日動火災保険(2012), PL関連事故・訴訟の現状, p. 34
- 山下友信(2002), 製造物責任立法と保険制度, 安田火災記念財団叢書, No.39, p. 14
- 三井住友海上火災, ビジネスプロテクター(海外輸出用); <http://www.ms-ins.com/business/indemnity/biz-protector-ex/> (2017.4.14.)
- 消費者庁(2012), 「総合的な消費者被害防止・救済の在り方について」
- 中村 雅人(2015), 製品事故の防止と被害救済: 情報化 国際化 高齢化時代の製品安全 - 製造物責任法施行から20年で考えること -, 国民生活(2015. 6), pp. 4~6
- 赤堀勝彦(2009), “製造物責任法と企業のリスクマネジメント”, 『神戸学院大学法学』, 第39巻 第3・4号, pp. 2~9
- 全国消費者団体連絡会(2015), 製造物責任法を改正しましょう
- 朝見行弘(2012), 製造物責任にかかわる被害救済制度, p. 1

長谷川洋(1995), 「ホ-ム オ-トメシヨンの生産物賠償責任」, 東京: 未來工學研究所, p. 63
 鴻上喜芳(2016. 3), 生産物賠償責任保険約款 の課題, 保険学雑誌, 第636號, p. 231

Alexis Watts, Limits on Punitive Damages(<http://www.legalmatch.com/law-library/article/limits-on-punitive-damages.html>, 2017.7.5.)

AM Best, Best's Aggregates & Averages(2000, 2010, 2015) Schedule P-Part 1R-Section 1,2-Product Liability

Baker Tom and Siegelman Peter(2011), "The Law and Economic of Liability Insurance: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Penn Law: Legal Scholarship Repository

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Expert Group on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2013), "Discussion Paper 5: Liability Insurance", pp. 4~5

Global Legal Group(2016),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Guide to Product Liability 2016"

Higgins Richard S.(1978), "Product Liability and Product Related Accidents", 7 *journal of Legal Studies*, pp. 299~321

Moore Micheal J. and Viscusi W. Kip(2001), "Product Liability Entering the Twenty-First Century: The U.S Perspective", AEI-Brookings Joint Center for Regulatory Studies

NAIC(2017), "Report on Profitability By Line By State in 2015"

Polinsky A. Mitch and Shavell Steven(2009), "The Uneasy case for Product Liability", The Harvard John M.Olin Discussion Paper

Sterrett Lauren(2015), "Product liability: Advancements in European Union

- Products Law and A Comparision between The eU and U.S. Regime”,
Michigan State International Law Review, Vol.23.3, pp. 893~895
- U.S. Chamber Institute for Legal reform(2013), “International Comparisions of
Litigation Costs”, p. 2
- Viscusi W. Kip and Hersch Joni (1990), “The market Response to Product Safety
Litigation”, 2 *journal of Regulatory Economics*, pp. 215~230
- Wells Bert(2010), “Excess Insurance Umbrella Insurance and Multi-Insurer
Coverage Programs”, Covington & Burling LLP, pp. 2~5
- <http://www.aig.com.sg/content/dam/aig/apac/singapore/documents/other/apac-sme-product-liability-insurance.pdf>(2017. 7. 7)
- https://www.zurich.com.au/content/dam/australia/general_insurance/product_safety_and_recall_insurance/product_safety_and_recall_insurance_policy.pdf(2017. 6 .28)
- <http://www.ms-ins.com/pdf/business/indemnity/pl.pdf>(2017. 4. 11)
- http://www.mcandl.com/puni_chart.html(2017. 7. 5)

부록: I. 일본의 PL법 최근 동향

1. 도입경과

일본은 1950년대 이후 의약품과 식료품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사고의 빈발로 피해자가 확대됨에 따라 민법 규정에 의해 구제가 곤란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1972년 민법학자들이 주도하는 제조물책임법 연구회가 태동되어 제조물책임법 요강시안을 발표하고 제조물사고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과실에서 결함으로 전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산업계의 반대에 부딪쳐 입법화가 진행되지 못했다. 1985년 EC 지침에 따라 유럽 국가들이 PL법을 입법화하게 되면서 일본의 제품사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부당한 차별 문제가 이슈화되었고 무역장벽으로도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경변호사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PL법 시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단체와 각 정당들도 PL법안을 공표하였다. 정부도 내각부 국민생활심의회,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도 검토하기에 이르렀고, 후생성, 농림수산성, 법무성 등도 검토가 이루어져 정부안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진행과정을 거쳐 1994년 7월 1일부터 PL법안이 성립하게 되었다. PL법은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걸쳐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⁷⁵⁾

75) 赤堀勝彦(2009), “製造物責任法と企業のリスクマネジメント”, 『神戸学院大学法学』, 第39卷 第3・4号, pp. 2~9

〈부록 표 I-1〉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입법안과 현행법의 비교

구 분		PL법 요강시안 (75년 8월)	사법학회 보고서 (90년 10월)	동경 변호사회 (91년 1월)	변호사 연합회 (91년 3월)	공명당 ¹⁾ (92년 5월)	사회당 ¹⁾ (92년 6월)	국민생활 심의회 (93년 12월)	공산당 (94년 4월)	제조물 책임법 (94년 7월)
제 조 물 책 임 법	부동산	포함	포함되지 않음	포함 (미가공 부동산은 제외)	포함 (미가공 부동산은 제외)	포함되지 않음	포함되지 않음	포함되지 않음	포함	포함되지 않음
	미가공 농산물	포함되는 것도 있음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되지 않음	불포함	포함되지 않음	포함되지 않음
책임법리		엄격책임	엄격책임	엄격책임	엄격책임	엄격책임	엄격책임	엄격책임	엄격책임	엄격책임
결합 판단기준		상당하지 않는 위험 (기준에 대 한 규정은 없음)	마땅히 기 대하여야 할 안전성 을 결여한 경우	통상 있어 야 할 안전 성을 결여 하고 있는 경우(기준 에 관한 규 정은 없음)	소비자가 마땅히 기 대하여야 할 안전성 을 결여하 고 있는 경 우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마땅히 기 대하여야 할 안전성 을 결여하 고 있는 경 우	일반인이 마땅히 기 대할 수 있 는 안전성 을 결여하 고 있는 경 우(단, 판 단의 기준 요소는 명 확화합이 비람직함)	소비자가 마땅히 기 대하여야 할 안전성 을 결여하 고 있는 경 우	통상 가져 야 할 안전 성을 결여 하고 있는 경우(단, 제 조물의 특 성, 통상에 견되는 사 용형태, 인 도된 시기, 그 밖의 사 정을 고려)
결합 추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²⁾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과관계 추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²⁾	불인정	인정	불인정
개발위험 항변		인정하지 않음	인정하지 않음	인정하지 않음	인정하지 않음	불인정	인정하지 않음	인정	불인정	인정
판매자 연대책임		부담함(단, 특별한 변호사유를 인정함)	제조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함	부담함(단, 특별한 변호사유를 인정함)	부담함(단, 특별한 변호사유를 인정함)	제조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함	제조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함	제조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함	제조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함	부담하지 않음
배상책임 상한 설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징벌적 손해배상금		없음	없음	손해액의 2배한도	손해액의 2배한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과실상계· 중과실한정		한정함	한정함	한정함	한정함	한정하지 않음	한정함	한정하지 않음	한정함	한정하지 않음
소멸시효		없음	원칙적으 로 20년	없음	없음	없음	원칙적으 로 20년	10년	(20년 단, 추적손해 는 제외)	10년 단, 추적손해는 손해발생시 부터 기산
정보공개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주: 1)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폐안되었음

2) 결합의 추정규정과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은 이중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

자료: 赤堀勝彦(2009), “製造物責任法と企業のリスクマネジメント”, 『神戸学院大学法学』第39巻 第3・4号, pp. 10~11

일본의 PL법은 본문 6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본문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제조물책임, 제4조 면책사유, 제5조 기간의 제한, 제6조 민법의 적용으로 매우 단순하고 이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의회는 제조물책임법 제정과정상에서 16개의 내용에 대해 부대결의⁷⁶⁾를 하여 공표하여 피해자 구제를 강조하였다.

2. 제조물 책임 관련 기타 피해구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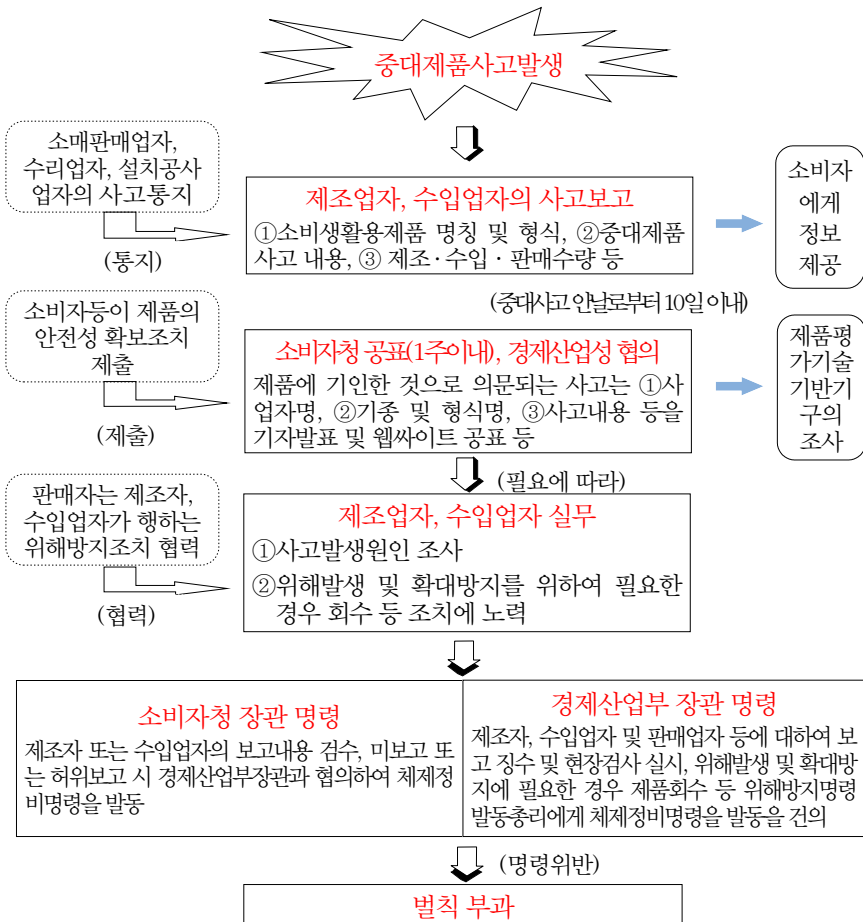
가. 소비생활용품안전법과 비교

일본은 PL법 시행 이후에 제조물책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사고의 피해사실을 공표하지 않아 해당 피해가 확대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PL법 부대결의사항 등을 일부 반영한 1974년에 제정된 소비생활용품안전법을 2006년에 개정하여 2007년 5월에 시행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2009년 9월에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설치법에 의거 소비자청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위해사고에 대한 행정을 일원화하고, 결함있는 소비자용품사고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체계는 앞서 살펴본 PL법에 추가하여 소비생활용품안전법도 병행하여 적용하게 된다. 소비생활용품안전법은 소비생활용품에 의하여 일반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함과 동시에 제품사고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것

76) 중의원은 1994년 6월 15일에 법의 주지, 적십자사의 업무 배려, 원인규명기능 충실강화, 재판 외 분쟁처리체제의 충실 강화, 중소기업의 배려지원, 사고원인의 정보공개 및 소비자안전교육 충실 노력, 안전규제의 최신회 등 7개 내용을 결의했음. 참의원(1994. 6. 22)은 법의 주지, 원인규명기능의 충실 강화, 재판 외 분쟁처리체제의 정비, 사고정보의 적극제공, 수혈용 혈액제제 특수성 주지 철저 및 구제기관설치 노력, 중소기업 지원배려, 국가 제품안전규제의 최신회, 취급설명서 및 경고표시 적절성 및 이해용이, 소비자안전교육 및 계발 노력임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법의 적용대상은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상품 중에 별표에 기재된 제품(식품, 의약품, 도로운송차량 등)⁷⁷⁾을 제외한 것이 해당된다.

〈부록 그림 1-1〉 일본 소비생활용품안전법 체계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2007), 新しい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について-製品事故静寂の報告公表制度が始まります-, p. 2 및 경제산업성 홈페이지(http://www.meti.go.jp/product_safety/producer/point/01.html, 2017. 4. 6.)

77) 선박안전법적용 선박, 식품위생법 적용제품(제4조 제1항의 식품, 제2항 첨가물, 제26조 제2항 세정제), 소방법의 검정대상 기계기구 및 자주표시대상 기계기구 등 소화기구, 독극물취급법상의 독물 및 극물, 도로운송차량법의 도로운송차량, 고압가스보안법의 용기, 무기 등 제조법의 압축 등, 약사법 적용 제품(제2조 제1항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임

소비생활용품의 중대한 제품사고⁷⁸⁾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청에 사고내용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보고해야 하며 접수받은 정부는 이를 공표하여 소비자들이 위해 사실을 알고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해제품을 제조한 자나 수입업자는 계속적인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수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이 미흡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비생활용품 중 구조, 재질, 사용상황 등으로 보아 일반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특별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제품을 특정제품⁷⁹⁾으로 규정하여 위해가능성을 관리하고 있다. 소비생활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중대 제품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제품의 명칭, 사고내용 등을 주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주무장관은 이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비생활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제품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정제품은 제3의 기관에서 안전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PSC(Product Safety of Consumer products) 제도로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제조물책임법과 소비생활용품안전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78) 제품사고는 제품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중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사고, 제품이 멸실 또는 파손된 사고에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함. 중대제품사고는 제품사고 중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가 중대한 것으로 당해 위해의 내용 또는 사고 양태에 관하여 시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소안법 제2조 제6항). 구체적으로는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사고 중 사망, 중상(치료기간 30일 이상 부상, 질병), 후유장해, 일산화탄소 중독 등 위해사고와 제품이 멸실 또는 파손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고가 해당함

79) 특정제품은 등산용 로프, 가정용압력 냄비 및 밥솥, 승차용 헬멧, 석유급탕기(70kW 이하), 석유가마(39kW 이하), 석유스토브(12kW 이하)임. 또한 특별특정제품은 유아용 침대, 휴대용 레저응용장치, 욕조용 온수순환기가 해당됨

〈부록 표 I -2〉 PL법과 소비생활용품안전법의 비교

구분	PL법	소비생활용품안전법
도입년도	1994	2007
목적	제품결함으로 인한 사고 시 피해자 손해배상	소비생활용품의 제품사고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재발방지를 촉진
적용대상물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소비생활용품(도로운송용 차량, 선박, 특정 식품 등 제외)
적용대상자	제조, 가공, 수입업자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결함의 정의	통상적으로 가져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	제품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경우
부담책임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인적 및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사망, 신체손해 등 위해제품에 대한 리콜 등 재해방지 대책
사고 통보 및 정보공개	없음	제조자 보고의무, 정부의 공표
책임 이행방법	제조자의 자율적인 방법	사업자 등록 시 관련대책 제출 요구
관련 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제품회수비용보험, 생산물품질보증보험
안전검사	없음	특정제품은 제3자기관의 안전검사 의무화(PSC 마크)

나. 기타 피해자구제방법

일본은 1970년대 이후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이 강조됨에 따라 소비자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장 먼저 도입된 마크는 소비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제품안전협회가 소비생활용제품을 대상으로 한 “SG마크제도”이다. 이어 우량주택부품에 대한 BL마크제도,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불꽃장난감의 SF(Safety Fireworks)마크제도, 유아 및 아동이 사용하는 장난감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ST(Safety Toy)마크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들 제도는 안전마크를 부착제품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조치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부록 표 I-3〉 일본의 마크부착부 제조물의 피해자 구제방법

구분	SG마크	BL마크	SF마크	ST마크	HAPI
실시 단체	제품안전협회	(재)Better Living	일본연화협회	일본완구협회	홈플러스구협회
실시 년도	1973. 10	1974. 7	1978. 5	1971. 10	1974
마크 표시근 거 및 기준	- 자주기준(SG 기준) - 통상장관 인정 기준	- 자주기준 - 우량주택 부품 인정기준	- 자주기준 - 완구연화 안전 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 자주기준 - 완구안전기준	- 자주기준 - HAPI마크 발급규정
대상품 목	유아용 제품, 가구·가정·주 방제품, 스포 츠·레저용품 등 124개 품목	현관문 등 32 개품 주택부품	국산 및 수입품 완구에 이용되는 모든 불꽃용품	유아, 아동용 완구(타는 것도 포함)	- 저주파치료 비, 전위치료 기, 초단파치 료기, 자기치 료기 등 26개 품목
보험 내용	- 마크부착제품 의 결함에 의 한 신체적장애 에 대한 배상 책임보험 - 기금으로부터 일시금	- 결함자체에 대 한 보증책임 보험 - 결함에 의한 신체, 재물손 해에 대한 배 상책임보험	- 결함에 의한 신 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 - 기금으로부터 위문금	- 손해배상금, 위로금 등 을 보상하 기 완구제 조물책임보 상공제	배상책임담보
보상 내용	피해자 1인당 1 억 엔 한도 보상, 피해자의 고의 성이 없는 경우 60만 엔 지급	- 보증책임: 연 간 20억 엔, 1 사고당 5억 엔 - 배상책임: 신 체사고 1인당 1억 엔/1사고 당 3억 엔, 재 물손해 1사고 당 5천만 엔/ 연간 1억 엔	- 신체, 재물 사고 당, 총보상한도 1억 엔(자기부 담금 3만 엔) - 위로금: 신체 1 인 150만 엔, 1 사고 450만 엔, 재물 1사고 300 만 엔	- 신체 1인당 1억 엔(1사 고당 2억 엔) - 위로금 30 만 엔 - 재물손해 1 사고당 2,000 만 엔(자기부 담금 1,000만 엔)	- 신체손해: 1사고당 3억 엔 1인당 5,000 만 엔 - 재물손해: 1 사 고 당 1,000만 엔

자료: 1) 長谷川洋(1995), 「ホ-ム オ-トメシヨンの生産物賠償責任」, 東京: 未來工學研究所, p. 63

2) 朝見行弘(2012), 製造物責任にかかわる被害救済制度, pp. 1~3

이외의 마크제도로 고압가스보안협회가 운영하는 액화석유가스용불완전연소경보
기기검정제도⁸⁰⁾와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가 운영하는 JUA마크제도⁸¹⁾가 있으며, 인

80) 가스경보기기협회의 배상책임보험은 신체손해에 대해 1사고당 5억 엔, 1인당 2억 엔, 재
산손해에 대해 1사고당 5억 엔이며 총보상한도액은 5억 엔임

증반은 제조업자는 당해 기관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제품과 달리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동 기금은 1979년 10월에 공포된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기금법에 따라 1980년 10월부터 운영되어 왔으며⁸²⁾ 1987년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기금법은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및 연구진흥기금법으로 개정되었고 2004년 4월에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법에 의한 독립행정법인형태의 기구가 설립되어 현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는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분석한 결과 부작용피해의 배상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구제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조자의 민사책임이 명확하거나 암 등 특수한 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부작용은 구제하지 않는다. 동 제도는 건강보험의 급부액을 공제한 의료비의 자기부담분, 의료수당(월 33,600엔), 장해연금(1급 월액 225,000엔), 장해아육성연금(1급 월액 704,000엔), 유족연금(10년 한도 월액 196,800엔), 유족일시금(70,840,800엔), 장례비(201,000엔)을 급부로 지급한다. 지급 재원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총 출하량에 따라 납부하는 각출금과 정부가 50%를 출연하는 사업비로 조성된다.

3. PL법 개정논의

가. PL법의 문제점

현재 일본의 제소물책임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소비자단체 등은 개정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⁸³⁾

81) 가스경보기기공업회의 배상책임보험은 신체손해에 대하여 1사고당 5억 엔, 1인당 2억 엔이며 재물손해에 대하여 1사고당 5억 엔이고 보험기간 총보상한도액은 5억 엔임

82) 消費者庁(2012), 「総合的な消費者被害防止・救済の在り方について」

83) 中村 雅人(2015), 製品事故の防止と被害救済: 情報化, 国際化, 高齢化時代の製品安全-製造物責任法施行から20年で考えること-, 国民生活(2015. 6), pp. 4-6

첫째, 최근 소비자들이 자전거와 같은 해외제품을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했으나 제품에 결함이 생긴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받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일본의 PL법은 수입업자를 제조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직접 사이트에서 구입하였기 때문에 수입업자도 부재하고 한국과 같이 연대책임 부담규정도 없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문제로부터 소비자 보호가 어려운 상태이다. 향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해외 상품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당해 제조물의 통상적으로 가져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에 대한 적용상의 문제점이다(법 제2조 제2항). 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고령자와 보통의 사람이 아닌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조물에 대해서 통상적인 안전성 결여를 결함으로 인정하는 수준을 보통의 사람과 비교하여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셋째, 의약품의 결함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약을 개발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결함이 발생한 경우 개발위험의 항변(법 제4조 제1항)이 인정되어 소비자 보호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근거로 면책이 되는 경우 의약품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

넷째, 최근 제품의 내구성이 좋아서 구입한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가습기는 한번 구입하여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에서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제조사가 리콜을 실시했지만 리콜되지 않은 제품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5조 제1항은 제품을 공급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장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자동차와 같이 제품을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나 변호사회는 20년으로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제조물의 범위에서 부동산이 제외되어 있다. 최근 주택경기가 나아지면서 건설업자나 부동산사업자들이 결함있는 택지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음에도 피해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 PL법은 결함제품과 손해의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고 추정하는 조항도 없다. 이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증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결함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PL법 입법 당시에 이를 소비자단체 등이 요청했으나 정부는 개별 소송에서 재판관이 사실상 추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 평가하여 채택하지 않았다.

나. PL법의 개정 논의

일본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논의는 주로 소비자단체나 변호사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런 논의 배경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데 있어 현재의 PL법은 불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PL옴부즈회의와 전국소비자단체연합회는 매년 제조물책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⁸⁴⁾ 2015년에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소비자청, 소비자위원회, 각 정당에 보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⁸⁵⁾

첫째, 제2조 정의에서 제조물 범위의 확대이다. 현재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유체물, 무체물에 관계없이 유통된 모든 동산 및 부동산으로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1975년 처음으로 입법 논의할 때와 유사하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무체물, 부동산, 자연 농수축산물이 포함되도록 확대를 제안한 것이다.

둘째, 제3조 제조물책임에서 결함 추정(제3조의 2), 인과관계추정(제3조의 3)조항을 도입하는 것이다. 결함추정조항은 “1. 제조물이 통상 예상되는 방법에 따라 사용

84) 2002년, 2005년, 2007년 문제점과 개정필요성, 개정안을 공표하였음. 김성천(2016), 『일본 제조물책임 개정안 제안 동향과 시사점-PL옴부즈회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pp. 7~8

85) 全国消費者団体連絡会(2015), 製造物責任法を改正しよう

된 것에 관계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가 통상 일어날 성질이 아닌 때에는 그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유통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단, 공급자가 해당 결함이 상당한 사용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인과관계는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결함에 의하여 생길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그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셋째,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활용하도록 정보공개조항을 제3조의 4로 신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 이 법률에 근거한 소송에서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제조자 또는 공급자 등이 알고 있는 결함정보를 소지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이다.

넷째, 징벌적 배상금과 유사한 부가금(附加金)조항(제3조의 5)을 도입하는 것이다. 즉,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안전 확보 또는 손해의 확대 방지에 대하여 제조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외에 추가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신설을 제안한 것으로 이는 제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다. 이러한 배경은 유키지루시 유업 식중독사건, 미쓰비시 자동차 리콜 은폐 등 제조자의 부도덕한 행태가 다발하고 있어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공급자의 책임 조항을 신설하여 최근 인터넷 쇼핑몰 사고 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함이다(제3조의 6). 즉, 제조물의 제조업자 등을 특정할 수 없는 때, 그 제조물의 공급자를 그 제조업자로 본다. 그러나 그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등 또는 당해 공급자에게 그 제조물을 공급한 자로 고지한 때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여섯째, 제조자의 결함이 입증된 경우 면책사유로 되어 있는 개발위험 항변을 삭제이다(제4조 제1호). 개발위험의 항변이 존재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사고 시에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개발위험 항변은 당해 제조물을 그 제조업자 등이 인도를 한 때 과학 또는 기술에 관한 지식에 따라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제조자가 입증한 경우이다.

일곱째, 소멸시효 기간 중 단기소멸시효는 현재와 같이 3년을 유지하지만, 제조물을 인도한 이후 10년을 12년으로 연장하여 장기간 사용하는 제품의 결함사고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함이다.

여덟째, 소비자단체소송과 정보제공자의 보호 조항 신설이다. 현재는 소비자단체를 통한 단체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결함제품의 안전에 관한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자가 이를 공표한 경우에 일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다.

아홉째, 법률을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5년 후 검토보고 의무조항(부칙 제2조)을 신설한다. 개정안은 EU 제조물책임지침과 같이 부칙 제2조로 시행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운영상태를 고려하여 소비자, 법률가 등이 포함된 검토조직이 조사, 심의, 제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법률 개정안은 PL법 제정당시에 부대결의로 되어 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PL법 시행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전국 소비자단체중앙회는 동 개정안이 반영되어 피해자 규제가 되도록 정부나 의회에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정에 대한 진행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부록 표 I-4〉 PL법 개정사항 비교

PL법	개정안
제1조(목적)	현행 동일
제2조(정의) 1. 제조물, 2. 결함, 3. 제조업자등	1. 제조물: 모든 동산 및 부동산 확대
제3조(제조물책임)	현행 동일
신설	제3조의 2(결함의 추정) 도입
신설	제3조의 3(인과관계 추정) 도입
제4조(면책사항) 1. 개발위험 항변, 2. 제조자의 설계지시에 따른 결함	개발위험항변 삭제
제5조(기간의 제한)	장기소멸시효 12년
제6조(민법의 적용)	현행 동일
신설	제7조(소비자단체소송권) 신설
신설	제8조(공익통보자의 보호) 신설
부칙 1. 시행일 2.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 개정	부칙 1. 소비자단체 정의 2. 5년 경과 시 검토

부록: Ⅱ.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부록 표 Ⅱ-1〉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한 인지 여부

주요 분야별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른다
성별	전체	1,208	32.7	67.3
	남성	600	38.4 ▲	61.6 ▽
	여성	608	27.1 ▽	72.9 ▲
연령	20대 이하	193	24.1 ▽	75.9 ▲
	30대	220	26.7 ▽	73.3 ▲
	40대	252	31.2	68.8
	50대	246	38.9 ▲	61.1 ▽
	60세 이상	296	39.1 ▲	60.9 ▽
최종학력	중졸 이하	30	20.9	79.1
	고졸	322	28.2 ▽	71.8 ▲
	대졸	740	33.2	66.8
	대학원졸 이상	116	45.4 ▲	54.6 ▽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599	36.5 ▲	63.5 ▽
	중소도시	519	29.5 ▽	70.5 ▲
	읍면부	90	26.3	73.7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44	25.3	74.7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26	23.1 ▽	76.9 ▲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209	24.8 ▽	75.2 ▲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45	27.3 ▽	72.7 ▲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223	45.0 ▲	55.0 ▽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144	40.0 ▲	60.0 ▽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73	38.3	61.7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56	26.6	73.4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37	44.9	55.1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17	51.9	48.1
직업	월평균1,000만원이상	33	30.2	69.8
	농/임/어/축산	16	38.3	61.7
	자영업	101	41.5	58.5
	블루칼라	174	33.8	66.2
	화이트칼라	466	36.9 ▲	63.1 ▽
	공무원/군인	30	21.6	78.4
	전업주부	217	26.0 ▽	74.0 ▲
	학생	74	21.8 ▽	78.2 ▲
	무직/기타	130	28.9	71.1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알고 있다	395	100.0 ▲	0.0 ▽
	모른다	813	0.0 ▽	100.0 ▲
위험경고 확인 여부	확인한다	222	100.0 ▲	0.0 ▽
	확인하지 않는다	147	100.0 ▲	0.0 ▽
책임보험상품 선택 여부	선호한다	742	37.5 ▲	62.5 ▽
	선호하지 않는다	50	49.1 ▲	50.9 ▽
	상관없다	416	22.2 ▽	77.8 ▲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81	33.3	66.7
	반대	127	27.5	72.5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76	32.6	67.4
	반대	132	33.9	66.1

〈부록 표 II-2〉 제조물책임법 인지경로

주요 분야별		사례수	TV, 신문 등 언론매체 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주위 사람을 통해	제조물 제품의 표시를 보고	공공기관 등의 교양 · 안전교육 을 통해	소비자 보호 관련 기관의 안내 자료 을 통해	초·중고 정규 교육 과정에서	기타
전체		395	59.6	14.3	7.1	6.4	5.2	4.4	0.7	2.4
성별	남성	230	54.2 ▽	15.8	5.6	7.7	6.4	6.0	1.1	3.2
	여성	165	67.1 ▲	12.2	9.2	4.6	3.5	2.2	0.0	1.2
연령	20대 이하	46	54.5	15.2	5.2	2.6	5.2	10.4 ▲	2.6	4.3
	30대	59	58.2	13.5	8.5	7.7	4.1	5.6	2.4	0.0
	40대	79	53.5	19.1	6.7	6.8	4.1	4.1	0.0	5.7 ▲
	50대	96	61.6	9.4	7.5	9.5	7.6	3.4	0.0	1.1
	60세 이상	116	64.8	15.1	7.1	4.5	4.4	2.5	0.0	1.7
최종학력	중졸 이하	6	70.5	0.0	16.6	12.9	0.0	0.0	0.0	0.0
	고졸	91	67.3	8.6	8.1	5.8	5.0	2.7	0.0	2.5
	대졸	245	58.2	16.8	6.7	6.0	4.5	4.3	1.1	2.4
	대학원졸 이상	53	51.2	13.9	6.2	8.7	9.4	8.3	0.0	2.3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219	63.5	11.7	8.5	5.0	5.1	3.7	1.2	1.3
	중소도시	153	51.9 ▽	18.7 ▲	5.6	8.6	5.3	5.6	0.0	4.4 ▲
	읍면부	24	73.5	9.2	3.4	5.1	5.1	3.7	0.0	0.0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11	70.3	0.0	18.8	0.0	0.0	10.9	0.0	0.0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29	71.0	11.6	4.1	2.4	6.7	4.1	0.0	0.0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52	65.3	21.0	3.6	5.5	2.3	2.3	0.0	0.0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67	56.7	5.6 ▽	15.2 ▲	8.3	6.0	3.9	4.3	0.0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100	53.6	19.8	3.9	8.4	5.9	5.4	3.0	0.0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58	54.4	19.4	4.5	5.2	10.3	1.7	2.1	2.4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28	62.5	16.6	10.8	4.3	2.2	3.6	0.0	0.0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15	64.4	6.3	3.8	9.3	0.0	8.1	0.0	8.1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17	53.7	11.0	4.2	9.0	5.2	10.4	6.5	0.0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9	63.3	0.0	14.0	8.7	0.0	0.0	14.0	0.0
	월평균1,000만원이상	10	84.2	0.0	7.2	0.0	0.0	8.6	0.0	0.0
직업	농/임/어/축산	6	74.7	0.0	11.6	0.0	0.0	13.8	0.0	0.0
	자영업	42	66.3	7.3	7.2	7.4	4.7	7.1	0.0	0.0
	블루칼라	59	56.0	16.9	6.8	7.9	4.4	4.1	3.8	0.0
	화이트칼라	172	58.3	13.7	5.5	8.1	5.1	5.1	3.5	0.8
	공무원/군인	6	36.3	37.1	8.6	0.0	18.0	0.0	0.0	0.0
	전업주부	56	66.9	14.8	10.1	1.9	4.3	2.1	0.0	0.0
	학생	16	48.4	13.9	0.0	7.5	15.1	0.0	7.5	7.5
	무직/기타	38	59.0	18.3	12.2	4.0	3.2	3.2	0.0	0.0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알고 있다	395	59.6	14.3	7.1	6.4	5.2	4.4	2.4	0.7
위험경고 확인 여부	확인한다	222	57.5	14.4	6.5	8.6 ▲	5.6	4.6	2.3	0.5
	확인하지 않는다	147	64.2	12.4	6.1	4.2	5.5	4.1	2.9	0.5
책임보험상품 선호 여부	선호한다	278	61.1	16.0	6.0	6.4	4.2	3.4	2.6	0.4
	선호하지 않는다	25	58.1	3.7	17.0	4.9	6.6	9.7	0.0	0.0
	상관없다	92	55.4	12.0	7.9	6.8	7.9	6.0	2.4	1.5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360	58.7	14.9	7.4	6.8	4.7	4.5	2.4	0.5
	반대	35	68.4	7.5	3.5	2.3	10.5	3.5	2.3	2.0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351	60.8	14.1	7.3	5.9	4.9	4.1	2.4	0.5
	반대	45	49.9	15.6	5.4	10.3	7.7	6.9	2.7	1.6

〈부록 표 II -3〉 제조물책임법의 내용 인지 수준

주요 분야별		사례수	이름만 알고 있다	일부 내용만 알고 있다	내용까지 알고 있다
전체		395	1.3	71.0	27.7
성별	남성	230	1.0	68.5	30.5
	여성	165	1.6	74.5	23.9
연령	20대 이하	46	2.6	67.5	29.9
	30대	59	2.0	71.7	26.3
	40대	79	1.5	62.5	36.0
	50대	96	0.0	73.6	26.4
	60세 이상	116	1.3	75.5	23.2
최종학력	중졸 이하	6	0.0	76.1	23.9
	고졸	91	3.0	78.9	18.1 ▽
	대졸	245	1.0	67.5	31.5 ▲
	대학원졸 이상	53	0.0	72.7	27.3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219	1.1	72.2	26.7
	중소도시	153	0.8	68.7	30.6
	읍면부	24	6.4	74.6	19.0
	월평균100만원미만	11	10.9	75.6	13.6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29	5.2	84.6	10.3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52	2.2	72.6	25.2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67	1.8	71.9	26.3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100	0.0	72.9	27.1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58	0.0	73.8	26.2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28	0.0	71.5	28.5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15	0.0	39.8	60.2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17	0.0	62.4	37.6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9	0.0	73.3	26.7
직업	월평균1,000만원이상	10	0.0	33.2	66.8
	농/임/어/축산	6	24.1	62.1	13.8
	자영업	42	0.0	83.3	16.7
	블루칼라	59	2.0	80.1	18.0
	화이트칼라	172	0.7	64.3 ▽	35.0 ▲
	공무원/군인	6	0.0	38.9	61.1
	전업주부	56	0.0	71.9	28.1
	학생	16	0.0	54.8	45.2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무직/기타	38	3.2	86.0 ▲	10.8 ▽
	알고 있다	395	1.3	71.0	27.7
위험경고 확인 여부	모른다	0	0.0	0.0	0.0
	확인한다	222	0.5	66.8 ▽	32.7 ▲
	확인하지 않는다	147	1.6	74.0	24.3
책임보험상품 선호 여부	선호한다	278	0.0 ▽	67.6 ▽	32.4 ▲
	선호하지 않는다	25	15.6	78.2	6.2
	상관없다	92	1.3	79.2 ▲	19.5 ▽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360	1.1	70.6	28.3
	반대	35	3.3	74.4	22.2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351	1.5	71.8	26.7
	반대	45	0.0	64.4	35.6

〈부록 표 II-4〉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센터 설립·운영 제도 인지 여부

주요 분야별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		395	50.2	49.8
성별	남성	230	50.8	49.2
	여성	165	49.3	50.7
연령	20대 이하	46	49.1	50.9
	30대	59	47.3	52.7
	40대	79	39.6 ▽	60.4 ▲
	50대	96	52.4	47.6
	60세 이상	116	57.5	42.5
최종학력	중졸 이하	6	65.9	34.1
	고졸	91	45.4	54.6
	대졸	245	48.6	51.4
	대학원졸 이상	53	63.9 ▲	36.1 ▽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219	53.9	46.1
	중소도시	153	47.0	53.0
	읍면부	24	36.4	63.6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11	55.2	44.8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29	41.7	58.3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52	58.7	41.3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67	46.5	53.5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100	41.6 ▽	58.4 ▲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58	53.3	46.7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28	68.3	31.7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15	57.3	42.7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17	52.3	47.7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9	36.7	63.3
직업	월평균1,000만원이상	10	65.4	34.6
	농/임/어/축산	6	49.4	50.6
	자영업	42	47.6	52.4
	블루칼라	59	50.7	49.3
	화이트칼라	172	51.6	48.4
	공무원/군인	6	61.3	38.7
	전업주부	56	50.0	50.0
	학생	16	49.9	50.1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무직/기타	38	44.8	55.2
	알고 있다	395	50.2	49.8
위험경고 확인 여부	확인한다	222	59.5 ▲	40.5 ▽
	확인하지 않는다	147	39.7 ▽	60.3 ▲
책임보험상품 선호 여부	선호한다	278	54.3 ▲	45.7 ▽
	선호하지 않는다	25	56.7	43.3
	상관없다	92	36.1 ▽	63.9 ▲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360	51.1	48.9
	반대	35	41.4	58.6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351	50.3	49.7
	반대	45	49.1	50.9

〈부록 표 II-5〉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방법에 대한 인지 여부

주요 분야별		사례수	자동차책임보험법 처럼 제조자가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일반보험처럼 제조자가 임의 가입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395	44.4	26.0	29.6
성별	남성	230	41.7	30.8 ▲	27.6
	여성	165	48.3	19.3 ▽	32.4
연령	20대 이하	46	36.6	32.3	31.2
	30대	59	47.3	30.1	22.6
	40대	79	38.1	31.3	30.6
	50대	96	46.6	25.1	28.3
	60세 이상	116	48.6	18.6 ▽	32.8
최종학력	중졸 이하	6	42.0	41.5	16.6
	고졸	91	37.9	25.5	36.7
	대졸	245	46.8	24.5	28.8
	대학원졸 이상	53	45.0	32.3	22.7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219	45.9	25.7	28.4
	중소도시	153	42.4	28.1	29.5
	읍면부	24	44.1	14.9	41.0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11	35.1	20.1	44.8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29	40.1	23.2	36.7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52	35.4	33.5	31.2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67	45.0	25.8	29.2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100	48.0	20.9	31.0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58	39.1	29.9	31.0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28	59.6	27.6	12.8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15	74.9	8.4	16.7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17	44.1	34.3	21.7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9	22.7	42.0	35.3
	월평균1,000만원이상	10	36.6	25.4	38.1
직업	농/임/어/축산	6	33.0	35.7	31.3
	자영업	42	48.6	26.4	25.0
	블루칼라	59	53.8	28.4	17.8 ▽
	화이트칼라	172	42.7	28.9	28.4
	공무원/군인	6	64.0	27.3	8.6
	전업주부	56	42.1	21.7	36.2
	학생	16	33.3	37.7	29.0
	무직/기타	38	39.8	8.1 ▽	52.1 ▲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알고 있다	395	44.4	26.0	29.6
위험경고 확인 여부	확인한다	222	49.0 ▲	29.0	22.1 ▽
	확인하지 않는다	147	40.9	19.3 ▽	39.8 ▲
책임보험상품 선호 여부	선호한다	278	48.6 ▲	23.3	28.1
	선호하지 않는다	25	30.4	57.7	11.9
	상관없다	92	35.6	25.5	38.9 ▲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360	46.8 ▲	24.6 ▽	28.6
	반대	35	20.2 ▽	40.4 ▲	39.3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351	46.2 ▲	24.7	29.1
	반대	45	30.6 ▽	36.1	33.3

〈부록 표 Ⅱ-6〉 제조물 구입 시 제조물의 안전사용과 경고표시 경험 여부

주요 분야별		사례수	(경고표시 등을) 본 경험이 있다	(경고표시 등을) 본 경험이 없다
전체		395	93.4	6.6
성별	남성	230	92.5	7.5
	여성	165	94.7	5.3
연령	20대 이하	46	92.6	7.4
	30대	59	91.3	8.7
	40대	79	95.2	4.8
	50대	96	92.1	7.9
	60세 이상	116	94.6	5.4
최종학력	중졸 이하	6	100.0	0.0
	고졸	91	95.0	5.0
	대졸	245	91.2 ▽	8.8 ▲
	대학원졸 이상	53	100.0 ▲	0.0 ▽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219	92.6	7.4
	중소도시	153	95.1	4.9
	읍면부	24	89.8	10.2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11	100.0	0.0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29	83.3	16.7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52	96.8	3.2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67	88.3	11.7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100	93.7	6.3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58	91.8	8.2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28	97.4	2.6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15	100.0	0.0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17	100.0	0.0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9	100.0	0.0
직업	월평균1,000만원이상	10	100.0	0.0
	농/임/어/축산	6	75.9	24.1
	자영업	42	95.3	4.7
	블루칼라	59	93.5	6.5
	화이트칼라	172	92.7	7.3
	공무원/군인	6	100.0	0.0
	전업주부	56	95.8	4.2
	학생	16	93.6	6.4
	무직/기타	38	92.3	7.7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알고있다	395	93.4	6.6
위험경고 확인 여부	확인한다	222	100.0 ▲	0.0 ▽
	확인하지 않는다	147	100.0 ▲	0.0 ▽
책임보험상품 선호 여부	선호한다	278	94.6	5.4
	선호하지 않는다	25	86.6	13.4
	상관없다	92	91.6	8.4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360	93.3	6.7
	반대	35	94.6	5.4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351	93.6	6.4
	반대	45	92.1	7.9

〈부록 표 II-7〉 제조물 구입 시 제조물의 안전사용과 경고표시 확인 여부

주요 분야별		사례수	확인한다	확인하지 않는다
전체		369	60.1	39.9
성별	남성	213	54.7 ▽	45.3 ▲
	여성	156	67.6 ▲	32.4 ▽
연령	20대 이하	43	63.2	36.8
	30대	53	70.5	29.5
	40대	75	66.1	33.9
	50대	88	50.4 ▽	49.6 ▲
	60세 이상	110	57.5	42.5
최종학력	중졸 이하	6	54.4	45.6
	고졸	86	55.6	44.4
	대졸	224	60.6	39.4
	대학원졸 이상	53	66.0	34.0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202	61.0	39.0
	중소도시	146	58.7	41.3
	읍면부	21	60.9	39.1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11	56.1	43.9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24	57.8	42.2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50	56.8	43.2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59	58.7	41.3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94	61.6	38.4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53	50.8	49.2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27	86.5	13.5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15	55.2	44.8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17	64.9	35.1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9	50.7	49.3
	월평균1,000만원이상	10	65.5	34.5
직업	농/임/어/축산	5	58.7	41.3
	자영업	40	54.9	45.1
	블루칼라	55	68.4	31.6
	화이트칼라	159	61.4	38.6
	공무원/군인	6	50.4	49.6
	전업주부	54	66.4	33.6
	학생	15	61.4	38.6
	무직/기타	35	38.6 ▽	61.4 ▲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알고 있다	369	60.1	39.9
위험경고 확인 여부	확인한다	222	100.0 ▲	0.0 ▽
	확인하지 않는다	147	0.0 ▽	100.0 ▲
책임보험상품 선호 여부	선호한다	263	70.0 ▲	30.0 ▽
	선호하지 않는다	21	40.0	60.0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상관없다	84	34.3 ▽	65.7 ▲
	찬성	336	60.4	39.6
	반대	33	57.4	42.6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328	59.8	40.2
	반대	41	62.5	37.5

〈부록 표 II -8〉 제조물 구입 시 제조물의 안전사용과 경고표시 확인하지 않는 이유

주요 분야별		사례수	구매하는 제품이 크게 위험한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고표시와 상관없이 제품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 표시를 찾기 어려워서	표시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전체		147	45.9	28.7	11.9	8.1
성별	남성	97	46.1	28.8	13.1	7.9
	여성	51	45.4	28.5	9.6	8.4
연령	20대 이하	16	64.4	20.3	15.2	0.0
	30대	16	44.8	19.4	9.1	26.6
	40대	25	46.6	25.9	10.8	16.7
	50대	44	48.9	30.9	5.1	5.5
	60세 이상	47	36.7	34.1	18.6	2.3
최종학력	중졸 이하	3	0.0	63.6	0.0	36.4
	고졸	38	45.2	26.3	15.6	3.2
	대졸	88	52.0	25.7	7.8	9.6
	대학원졸 이상	18	24.5	42.7	26.1	6.7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79	45.4	32.9	11.6	6.5
	중소도시	60	47.4	25.0	11.5	11.3
	읍면부	8	39.0	14.6	17.2	0.0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5	39.0	20.3	19.3	21.5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0	41.0	40.1	0.0	0.0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22	39.0	21.9	12.5	16.5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4	43.9	29.2	9.6	12.4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36	40.2	29.1	15.8	9.6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26	47.6	37.1	12.3	3.1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4	58.8	0.0	19.1	0.0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7	73.4	26.6	0.0	0.0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6	49.5	29.9	20.6	0.0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4	82.5	17.5	0.0	0.0
직업	월평균1,000만원이상	3	55.1	25.0	20.0	0.0
	농/임/어/축산	2	0.0	38.5	0.0	0.0
	자영업	18	45.5	18.2	14.7	3.4
	블루칼라	17	57.3	21.3	8.2	7.0
	화이트칼라	61	38.9	38.5 ▲	8.2	12.7
	공무원/군인	3	17.4	37.7	44.9	0.0
	전업주부	18	29.6	39.1	15.0	12.4
	학생	6	58.3	0.0	41.7	0.0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무직/기타	21	75.9	11.8	8.5	0.0
	알고 있다	147	45.9	28.7	11.9	8.1
책임보험상품 선호 여부	선호한다	79	45.5	26.8	14.3	6.8
	선호하지 않는다	13	7.8	52.1	12.0	28.1
	상관없다	55	55.3	25.9	8.4	5.2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33	46.8	26.6	12.6	8.0
	반대	14	37.5	48.8	5.2	8.6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32	43.8	30.7	12.2	7.2
	반대	15	63.9	11.7	9.1	15.3

〈부록 표 II-9〉 제조물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사용과 경고표시 대책

주요 분야별		사례수	시행 전보다 크게 약화 되었다	시행 전보다 약화 되었다	약화됨	비슷함	시행 전보다 약간 강화 되었다	시행 전보다 크게 강화 되었다	강화됨
전체		395	1.3	5.0	6.3	41.5	44.3	7.9	52.2
성별	남성	230	1.2	6.0	7.2	41.9	44.3	6.6	50.9
	여성	165	1.4	3.5	5.0	41.0	44.2	9.9	54.1
연령	20대 이하	46	0.0	13.0	13.0 ▲	46.0	38.4	2.6	41.0
	30대	59	1.2	6.1	7.3	50.5	40.1	2.1	42.2
	40대	79	2.6	3.1	5.6	44.7	39.2	10.4	49.6
	50대	96	0.0	4.0	4.0	36.9	51.2	7.9	59.1
	60세 이상	116	2.1	3.3	5.3	36.8	46.4	11.4	57.8
최종학력	중졸 이하	6	0.0	0.0	0.0	45.6	54.4	0.0	54.4
	고졸	91	0.8	2.0	2.8	42.2	47.9	7.0	55.0
	대졸	245	1.3	5.5	6.8	41.7	42.6	8.8	51.4
	대학원졸 이상	53	2.3	8.0	10.3	38.8	44.4	6.5	50.9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219	2.0	4.5	6.5	39.3	46.6	7.6	54.2
	중소도시	153	0.5	6.5	6.9	43.7	40.9	8.5	49.4
	읍면부	24	0.0	0.0	0.0	47.9	44.8	7.3	52.1
	월평균100만원미만	11	12.9	0.0	12.9	20.3	57.5	9.4	66.9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29	0.0	8.1	8.1	58.8	30.1	3.0	33.1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52	0.0	7.0	7.0	55.6 ▲	35.1	2.3	37.4 ▽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67	0.9	6.2	7.1	37.4	46.1	9.4	55.5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100	0.6	6.5	7.1	43.3	40.5	9.0	49.6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58	4.3 ▲	1.8	6.1	41.1	45.5	7.3	52.8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28	0.0	0.0	0.0	36.0	53.8	10.2	64.0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15	0.0	4.7	4.7	26.6	59.2	9.6	68.8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17	0.0	0.0	0.0	33.8	52.7	13.5	66.2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9	0.0	14.0	14.0	14.0	58.0	14.0	72.0
	월평균1,000만원이상	10	0.0	0.0	0.0	28.0	62.5	9.5	72.0
직업	농/임/어/축산	6	0.0	19.3	19.3	43.4	37.4	0.0	37.4
	자영업	42	0.0	2.4	2.4	29.6	57.1	11.0	68.1 ▲
	블루칼라	59	0.0	8.1	8.1	38.8	39.5	13.6	53.1
	화이트칼라	172	2.1	6.9	9.1 ▲	41.2	42.6	7.1	49.7
	공무원/군인	6	0.0	11.6	11.6	55.6	24.2	8.6	32.8
	전업주부	56	2.5	0.0	2.5	49.4	38.8	9.2	48.1
	학생	16	0.0	0.0	0.0	62.3	37.7	0.0	37.7
제조물책임법 인식 여부	무직/기타	38	0.0	0.0	0.0	37.2	60.6 ▲	2.3	62.8
	알고 있다	395	1.3	5.0	6.3	41.5	44.3	7.9	52.2
	확인한다	222	2.0	4.7	6.7	33.4 ▽	48.0	11.8	59.9 ▲
	확인하지 않는다	147	0.5	4.8	5.3	48.7 ▲	42.5	3.5	46.0
	선호한다	278	1.8	3.3 ▽	5.1	36.0 ▽	49.0 ▲	9.9	58.9 ▲
	선호하지 않는다	25	0.0	25.5	25.5	57.1	17.4	0.0	17.4
	상관없다	92	0.0	4.5	4.5	54.0 ▲	37.2	4.3	41.5 ▽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360	1.2	4.6	5.8	42.0	43.5	8.7	52.2
	반대	35	2.1	8.9	11.0	36.6	52.5	0.0	52.5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351	1.3	4.7	6.0	40.7	45.2	8.1	53.4
	반대	45	1.6	6.8	8.4	48.3	36.8	6.5	43.3

〈부록 표 II-10〉 징벌적 손해배상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

주요 분야별		사례수	별로 필요하지 않다	필요없음	보통이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필요함
전체		395	2.8	2.8	11.8	42.5	42.9	85.4
성별	남성	230	2.4	2.4	13.7	38.2 ▽	45.7	83.9
	여성	165	3.4	3.4	9.2	48.6 ▲	38.9	87.4
연령	20대 이하	46	5.2	5.2	18.8	52.9	23.1 ▽	76.0
	30대	59	3.2	3.2	21.9 ▲	33.8	41.1	74.9 ▽
	40대	79	1.5	1.5	11.1	43.3	44.0	87.3
	50대	96	3.5	3.5	8.0	42.3	46.2	88.5
	60세 이상	116	1.8	1.8	7.6	42.4	48.2	90.6
최종학력	중졸 이하	6	0.0	0.0	17.5	52.9	29.5	82.5
	고졸	91	1.1	1.1	10.1	47.9	40.9	88.8
	대졸	245	3.6	3.6	10.7	40.3	45.4	85.7
	대학원졸 이상	53	2.3	2.3	19.3	42.2	36.2	78.4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219	2.8	2.8	12.9	40.7	43.6	84.3
	중소도시	153	3.2	3.2	11.4	46.0	39.5	85.4
	읍면부	24	0.0	0.0	5.1	36.9	58.0	94.9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11	0.0	0.0	23.7	51.2	25.1	76.3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29	8.3	8.3	12.2	40.5	39.1	79.5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52	2.3	2.3	17.1	41.6	38.9	80.6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67	3.4	3.4	15.4	35.8	45.4	81.2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100	1.2	1.2	7.0	47.9	43.9	91.8 ▲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58	4.9	4.9	16.0	38.9	40.2	79.1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28	4.1	4.1	0.0	53.6	42.3	95.9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15	0.0	0.0	5.5	50.0	44.5	94.5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17	0.0	0.0	11.4	28.0	60.6	88.6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9	0.0	0.0	28.0	31.3	40.7	72.0
직업	월평균1,000만원이상	10	0.0	0.0	0.0	46.8	53.2	100.0
	농/임/어/축산	6	0.0	0.0	0.0	23.6	76.4	100.0
	자영업	42	0.0	0.0	9.3	29.5	61.2 ▲	90.7
	블루칼라	59	7.9 ▲	7.9 ▲	16.4	35.9	39.8	75.7 ▽
	화이트칼라	172	2.4	2.4	12.8	41.0	43.8	84.8
	공무원/군인	6	0.0	0.0	18.7	30.9	50.4	81.3
	전업주부	56	4.2	4.2	9.6	54.6	31.7	86.2
	학생	16	0.0	0.0	13.6	59.1	27.3	86.4
	무직/기타	38	0.0	0.0	6.4	54.0	39.6	93.6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알고 있다	395	2.8	2.8	11.8	42.5	42.9	85.4
위험경고 확인 여부	확인한다	222	2.5	2.5	10.6	42.5	44.4	86.9
	확인하지 않는다	147	2.4	2.4	13.7	45.2	38.6	83.9
책임보험상품 선택 여부	선호한다	278	1.6 ▽	1.6 ▽	6.6 ▽	43.4	48.5 ▲	91.9 ▲
	선호하지 않는다	25	14.6	14.6	41.7	29.5	14.2	43.7
	상관없다	92	3.4	3.4	19.7 ▲	43.4	33.5 ▽	76.9 ▽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360	2.2 ▽	2.2 ▽	10.6 ▽	41.1	46.0 ▲	87.2 ▲
	반대	35	8.9 ▲	8.9 ▲	24.2 ▲	56.8	10.2 ▽	66.9 ▽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351	2.3	2.3	12.0	44.8 ▲	40.9 ▽	85.7
	반대	45	6.6	6.6	10.8	24.5 ▽	58.2 ▲	82.7

〈부록 표 II-11〉 징벌적 손해배상금 제도 필요한 이유

주요 분야별		사례수	제조사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시장에 판매 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어서	제조물 안전사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가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337	45.0	28.8	23.0	3.2
성별	남성	193	42.2	28.4	24.8	4.6
	여성	144	48.8	29.3	20.6	1.3
연령	20대 이하	35	42.9	37.1	20.0	0.0
	30대	44	45.4	30.1	20.9	3.6
	40대	69	50.7	23.3	23.5	2.5
	50대	85	39.4	31.7	24.9	4.0
	60세 이상	105	46.3	26.7	23.1	4.0
최종학력	중졸 이하	5	29.6	29.0	41.4	0.0
	고졸	80	44.0	35.9	18.2	2.0
	대졸	210	46.3	26.0	24.8	2.9
	대학원졸 이상	41	42.4	28.9	20.9	7.7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184	44.0	26.3	26.5	3.2
	중소도시	131	42.4	33.3	21.2	3.1
	읍면부	22	67.9	22.6	5.4	4.0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8	20.5	52.9	26.6	0.0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23	55.4	23.8	20.8	0.0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42	52.3	27.0	20.6	0.0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54	39.4	34.7	21.4	4.6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92	43.7	32.1	18.2	6.0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46	50.7	26.5	20.6	2.2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27	22.8	28.4	48.8	0.0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14	46.2	36.2	17.6	0.0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15	58.4	12.1	23.4	6.1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6	61.1	0.0	38.9	0.0
직업	월평균1,000만원이상	10	55.2	7.2	28.0	9.5
	농/임/어/축산	6	57.1	42.9	0.0	0.0
	자영업	38	41.7	24.1	30.2	4.0
	블루칼라	44	47.6	35.2	15.3	1.8
	화이트칼라	146	46.0	20.0	29.2	4.8
	공무원/군인	5	44.7	24.8	17.3	13.2
	전업주부	49	41.1	38.0	20.9	0.0
	학생	14	40.3	59.7	0.0	0.0
	무직/기타	35	46.1	35.3	16.4	2.3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알고 있다	337	45.0	28.8	23.0	3.2
	확인한다	193	40.8	31.0	24.4	3.8
확인 여부	확인하지 않는다	123	49.3	26.1	22.5	2.1
	선호한다	256	42.7	31.4	22.1	3.8
책임보험상품 선호 여부	선호하지 않는다	11	39.2	26.6	34.2	0.0
	상관없다	71	54.3	19.7	24.5	1.5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314	45.3	28.4	22.8	3.5
	반대	23	40.8	33.0	26.2	0.0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300	45.3	28.1	23.6	3.0
	반대	37	42.4	33.9	18.7	5.0

〈부록 표 II-12〉 제조물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1+2순위)

주요 분야별		사례수	가격	사고발생 대비 안전성	기능· 성능	디자인	이용상 편리성	기타
전체		1,208	61.7	24.5	74.2	6.6	32.8	0.2
성별	남성	600	64.9 ▲	23.1	75.5	6.5	29.5 ▽	0.4
	여성	608	58.6 ▽	25.9	72.9	6.6	36.0 ▲	0.0
연령	20대 이하	193	72.8 ▲	18.7 ▽	79.7	15.4 ▲	12.1 ▽	1.3
	30대	220	69.7 ▲	21.0	70.2	8.3	30.8	0.0
	40대	252	63.7	21.9	76.2	3.4 ▽	34.8	0.0
	50대	246	53.9 ▽	30.1 ▲	73.1	3.9	38.9 ▲	0.0
	60세 이상	296	53.4 ▽	28.5	72.8	4.4	40.8 ▲	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30	85.3 ▲	29.6	65.8	7.1	12.2 ▽	0.0
	고졸	322	59.1	23.4	73.5	6.8	36.8	0.4
	대졸	740	62.4	25.1	74.5	6.7	31.1	0.2
	대학원졸 이상	116	58.6	22.3	76.9	5.2	37.1	0.0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599	59.7	25.5	74.6	7.2	32.8	0.2
	중소도시	519	63.2	23.4	74.6	6.6	31.9	0.2
	읍면부	90	66.2	24.7	69.9	2.2	36.9	0.0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44	69.0	29.0	72.9	2.7	23.6	2.7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26	67.7	26.8	67.7	6.2	31.6	0.0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209	70.5 ▲	20.6	70.2	5.7	33.0	0.0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45	64.3	28.6	71.5	6.0	29.6	0.0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223	59.9	23.0	78.2	6.6	32.3	0.0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144	51.3 ▽	25.2	75.5	9.3	38.7	0.0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73	56.9	30.0	74.0	5.7	33.4	0.0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56	54.0	17.6	88.0 ▲	5.4	35.0	0.0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37	54.4	23.9	74.9	8.0	38.8	0.0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17	24.3	21.9	85.4	15.4	45.6	7.3
직업	월평균1,000만원이상	33	62.9	14.0	85.5	8.2	29.4	0.0
	농/임/어/축산	16	46.4	41.3	51.1	0.0	61.2	0.0
	자영업	101	57.3	31.3	68.1	7.8	35.6	0.0
	블루칼라	174	57.4	35.2 ▲	65.2 ▽	5.7	36.5	0.0
	화이트칼라	466	65.3 ▲	21.3 ▽	75.5	5.7	32.0	0.3
	공무원/군인	30	63.1	28.8	75.4	2.8	29.8	0.0
	전업주부	217	54.4 ▽	28.0	75.1	4.7	37.9	0.0
	학생	74	77.2 ▲	8.2 ▽	86.5 ▲	18.7 ▲	9.3 ▽	0.0
	무직/기타	130	63.2	16.7 ▽	81.0	8.1	30.1	0.9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알고있다	395	51.2 ▽	34.6 ▲	74.0	4.5 ▽	35.7	0.0
	모른다	813	66.9 ▲	19.6 ▽	74.3	7.6 ▲	31.3	0.3
위험경고 확인 여부	확인 한다	222	45.5 ▽	43.0 ▲	73.8	4.3	33.6	0.0
	확인하지 않는다	147	60.1	19.4	74.5	4.4	41.6 ▲	0.0
책임보험상품 선호 여부	선호한다	742	55.1 ▽	29.0 ▲	75.6	5.5	34.4	0.3
	선호하지 않는다	50	58.9	50.9 ▲	44.5 ▽	12.5	33.2	0.0
	상관없다	416	73.9 ▲	13.3 ▽	75.4	7.7	29.7	0.0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81	60.5 ▽	24.6	75.5 ▲	6.4	32.8	0.2
	반대	127	72.0 ▲	23.6	63.9 ▽	8.2	32.4	0.0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76	61.1	24.5	74.9	6.5	32.8	0.2
	반대	132	66.6	24.9	69.1	6.8	32.5	0.0

〈부록 표 II-13〉 제조물 안전 유무가 제조물 구매에 미치는 영향

주요 분야별		사례수	전혀 영향이 없다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영향없음	보통이다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편이다	매우 영향이 있다	영향있음
전체		1,208	0.6	9.6	10.2	23.6	49.5	16.7	66.2
성별	남성	600	0.9	13.0 ▲	14.0 ▲	24.1	47.1	14.8	61.9 ▽
	여성	608	0.4	6.2 ▽	6.5 ▽	23.0	51.8	18.7	70.5 ▲
연령	20대 이하	193	0.6	14.2 ▲	14.9 ▲	27.6	43.0	14.5	57.5 ▽
	30대	220	1.0	10.8	11.8	27.3	49.6	11.3 ▽	60.9
	40대	252	0.2	10.4	10.6	22.2	50.9	16.3	67.2
	50대	246	1.2	8.1	9.3	23.6	49.0	18.2	67.2
	60세 이상	296	0.3	6.2 ▽	6.5 ▽	19.3 ▽	52.8	21.3 ▲	74.1 ▲
최종학력	중졸 이하	30	6.2 ▲	6.7	12.9	29.0	47.5	10.7	58.2
	고졸	322	0.4	6.7 ▽	7.1 ▽	26.3	48.0	18.6	66.6
	대졸	740	0.5	10.9	11.4	23.5	48.7	16.4	65.1
	대학원졸 이상	116	0.8	9.9	10.7	15.0 ▽	59.1 ▲	15.1	74.3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599	0.4	10.2	10.6	23.4	48.7	17.3	66.0
	중소도시	519	0.8	9.3	10.2	22.9	49.6	17.3	67.0
	읍면부	90	1.0	7.1	8.2	29.0	53.3	9.5	62.9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44	0.0	13.2	13.2	24.9	47.1	14.8	61.8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26	2.7 ▲	8.8	11.4	34.0 ▲	37.3 ▽	17.3	54.6 ▽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209	0.9	12.5	13.4	27.0	45.5	14.1	59.6 ▽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45	0.4	12.0	12.4	21.8	51.6	14.2	65.8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223	0.3	6.9	7.2	17.6 ▽	59.1 ▲	16.1	75.2 ▲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144	0.7	6.7	7.4	26.4	49.8	16.5	66.3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73	0.0	4.6	4.6	19.9	57.4	18.1	75.5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56	0.0	14.2	14.2	16.5	40.3	29.0 ▲	69.2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37	0.0	12.6	12.6	19.2	51.5	16.7	68.2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17	0.0	0.0	0.0	28.1	40.9	31.0	71.9
	월평균1,000만원이상	33	0.0	6.9	6.9	23.6	42.5	27.0	69.5
직업	농/임/어/축산	16	0.0	4.9	4.9	23.3	51.9	19.9	71.8
	자영업	101	0.0	7.9	7.9	20.5	48.8	22.9	71.7
	블루칼라	174	0.5	9.1	9.7	30.2 ▲	43.3	16.9	60.1
	화이트칼라	466	0.8	11.1	11.9	24.7	50.6	12.7 ▽	63.4
	공무원/군인	30	3.1	6.1	9.2	6.0 ▽	65.1	19.8	84.9 ▲
	전업주부	217	0.0	4.3 ▽	4.3 ▽	22.8	52.7	20.2	72.9 ▲
	학생	74	1.6	12.5	14.1	25.3	44.6	15.9	60.5
	무직/기타	130	0.7	14.7 ▲	15.4 ▲	17.3	47.6	19.6	67.2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알고 있다	395	0.0	8.9	8.9	21.7	53.1	16.2	69.3
	모른다	813	1.0	9.9	10.9	24.5	47.7	17.0	64.7
위험경고 확인 여부	확인한다	222	0.0	4.8 ▽	4.8 ▽	17.7 ▽	57.1 ▲	20.3	77.5 ▲
	확인하지 않는다	147	0.0	14.8 ▲	14.8	28.5	46.9	9.8 ▽	56.7 ▽
책임보험상품 선택 여부	선호한다	742	0.5	2.9 ▽	3.5 ▽	16.5 ▽	56.2 ▲	23.8 ▲	80.0 ▲
	선호하지 않는다	50	1.9	42.4 ▲	44.3 ▲	33.6	22.1 ▽	0.0 ▽	22.1 ▽
	상관없다	416	0.7	17.5 ▲	18.2 ▲	34.9 ▲	40.7 ▽	6.2 ▽	46.9 ▽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81	0.3 ▽	9.1	9.4 ▽	22.7 ▽	50.3	17.6 ▲	67.9 ▲
	반대	127	3.3 ▲	13.8	17.1 ▲	30.9 ▲	42.2	9.8 ▽	52.0 ▽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76	0.6	9.2	9.7	23.4	50.0	16.9	66.9
	반대	132	1.4	13.0	14.5	25.0	45.2	15.4	60.6

〈부록 표 II-14〉 제조물 안전 문제에 관한 정보의 접촉 빈도

주요 분야별		사례수	거의 접하지 못함	연 1~2회	연 3~4회	연 4회 이상
전체		1,208	56.0	28.3	9.2	6.5
성별	남성	600	56.7	26.9	9.3	7.1
	여성	608	55.2	29.7	9.2	5.9
연령	20대 이하	193	51.7	32.9	8.4	7.0
	30대	220	62.2 ▲	23.7	8.4	5.7
	40대	252	60.4	26.0	8.0	5.6
	50대	246	53.1	30.7	8.4	7.9
	60세 이상	296	52.8	28.7	12.2 ▲	6.3
최종학력	중졸 이하	30	62.6	28.8	8.7	0.0
	고졸	322	57.7	27.3	8.3	6.7
	대졸	740	56.1	28.8	9.0	6.1
	대학원졸 이상	116	48.8	28.0	13.4	9.8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599	54.2	29.1	9.6	7.0
	중소도시	519	57.0	26.9	9.5	6.6
	읍면부	90	61.8	31.3	4.7	2.2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44	57.6	29.7	7.6	5.1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26	63.9	24.8	8.9	2.4 ▽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209	57.7	26.7	11.9	3.7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45	54.0	33.3	5.4 ▽	7.4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223	54.3	28.6	9.3	7.7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144	55.2	24.6	9.2	11.0 ▲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73	52.0	30.6	14.9	2.4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56	60.8	18.3	7.7	13.3 ▲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37	46.5	37.8	12.0	3.6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17	46.8	30.5	11.8	10.9
직업	월평균1,000만원이상	33	57.8	27.7	9.4	5.1
	농/임/어/축산	16	47.0	45.6	0.0	7.4
	자영업	101	51.6	30.2	9.5	8.7
	블루칼라	174	52.9	30.9	13.1	3.2
	화이트칼라	466	57.7	27.1	7.8	7.4
	공무원/군인	30	58.6	20.8	13.5	7.1
	전업주부	217	54.6	30.3	8.6	6.5
	학생	74	54.6	26.8	7.5	11.2
	무직/기타	130	60.9	24.9	11.1	3.1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알고 있다	395	33.4 ▽	38.4 ▲	15.1 ▲	13.1 ▲
	모른다	813	67.0 ▲	23.4 ▽	6.4 ▽	3.3 ▽
위험경고 확인 여부	확인한다	222	20.7 ▽	39.5 ▲	20.0 ▲	19.7 ▲
	확인하지 않는다	147	46.6 ▽	40.0 ▲	8.5	5.0
책임보험상품 선호 여부	선호한다	742	47.9 ▽	31.4 ▲	11.8 ▲	8.9 ▲
	선호하지 않는다	50	44.2	40.8 ▲	15.0	0.0
	상관없다	416	71.8 ▲	21.3 ▽	3.9 ▽	3.0 ▽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81	55.5	28.3	9.3	6.9
	반대	127	60.0	28.5	8.3	3.2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76	55.7	29.0	8.9	6.4
	반대	132	58.1	22.7	12.1	7.1

〈부록 표 II-15〉 제조물 구입 시 제조물책임보험 가입내용 확인 여부

주요 분야별		사례수	확인한다	확인하지 않는다
전체		1,208	17.2	82.8
성별	남성	600	16.2	83.8
	여성	608	18.2	81.8
연령	20대 이하	193	8.7 ▽	91.3 ▲
	30대	220	13.9	86.1
	40대	252	19.0	81.0
	50대	246	17.0	83.0
	60세 이상	296	23.7 ▲	76.3 ▽
최종학력	중졸 이하	30	9.7	90.3
	고졸	322	17.2	82.8
	대졸	740	15.7	84.3
	대학원졸 이상	116	28.4 ▲	71.6 ▽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599	18.4	81.6
	중소도시	519	15.2	84.8
	읍면부	90	20.8	79.2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44	24.4	75.6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26	9.9 ▽	90.1 ▲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209	14.3	85.7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45	15.9	84.1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223	22.9 ▲	77.1 ▽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144	15.9	84.1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73	23.2	76.8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56	15.0	85.0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37	18.2	81.8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17	21.9	78.1
직업	월평균1,000만원이상	33	16.7	83.3
	농/임/어/축산	16	55.8	44.2
	자영업	101	19.4	80.6
	블루칼라	174	18.2	81.8
	화이트칼라	466	15.8	84.2
	공무원/군인	30	20.2	79.8
	전업주부	217	21.0	79.0
	학생	74	6.0 ▽	94.0 ▲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무직/기타	130	13.6	86.4
	알고 있다	395	30.9 ▲	69.1 ▽
위험경고 확인 여부	모른다	813	10.5 ▽	89.5 ▲
	확인한다	222	50.5 ▲	49.5 ▽
책임보험상품 선호 여부	확인하지 않는다	147	4.8 ▽	95.2 ▲
	선호한다	742	24.5 ▲	75.5 ▽
	선호하지 않는다	50	25.8	74.2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상관없다	416	3.1 ▽	96.9 ▲
	찬성	1,081	18.1 ▲	81.9 ▽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반대	127	9.0 ▽	91.0 ▲
	찬성	1,076	17.1	82.9
	반대	132	18.1	81.9

〈부록 표 II-16〉 제조물 구입 시 제조물책임보험 가입내용 미확인 이유

주요 분야별	사례수	제조물책임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서	구매하는 제품이 크게 위험한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용 표시를 찾기 어려워서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제품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시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전체	1,001	30.9	19.9	16.5	15.4	14.5	2.9
성별	남성	503	27.3 ▽	19.9	17.5	17.7 ▲	2.1
	여성	497	34.5 ▲	19.9	15.4	13.1 ▽	3.7
연령	20대 이하	176	47.7 ▲	14.7	15.5	8.9 ▽	4.1
	30대	189	31.6	19.5	15.2	13.1	3.8
	40대	204	29.5	18.2	16.4	17.8	0.9
	50대	205	25.0 ▽	23.4	16.8	19.3	2.9
	60세 이상	226	23.6 ▽	22.5	18.0	16.7	3.1
최종학력	중졸 이하	27	32.7	14.9	42.5	10.0	0.0
	고졸	266	36.3 ▲	18.7	17.3	13.1	4.3
	대졸	623	28.3 ▽	19.9	15.2	16.9 ▲	2.7
	대학원졸 이상	83	32.1	24.9	14.3	13.1	0.9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489	32.6	19.5	16.3	14.7	2.7
	중소도시	441	28.4	21.3	16.3	17.0	2.8
	읍면부	71	33.7	13.3	18.6	9.8	5.5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33	28.1	16.1	29.7 ▲	12.8	0.0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14	34.0	14.8	17.8	18.6	5.6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179	34.4	22.1	16.0	10.8	4.2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06	34.8	19.9	17.6	14.0	0.6 ▽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172	23.4 ▽	22.6	13.0	18.5	2.7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122	21.8 ▽	17.2	16.3	23.2 ▲	5.2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56	35.7	20.7	14.1	9.9	5.8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47	34.0	19.1	14.2	9.8	0.0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30	37.5	19.4	12.9	15.9	0.0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13	35.8	22.5	8.0	24.4	0.0
직업	월평균1,000만원이상	28	29.9	23.2	27.9	7.7	0.0
	농/임/어/축산	7	40.1	11.9	37.5	10.4	0.0
	자영업	81	21.8	17.2	15.5	22.0	1.2
	블루칼라	142	26.5	25.9	17.5	16.5	5.7 ▲
	화이트칼라	393	29.3	15.3 ▽	16.7	18.9 ▲	2.9
	공무원/군인	24	26.9	20.9	25.1	13.6	0.0
	전업주부	172	33.4	24.0	14.7	11.5	3.8
	학생	69	47.5 ▲	17.3	16.8	6.7 ▽	3.5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무직/기타	113	34.4	25.5	14.2	9.0 ▽	0.0
	알고 있다	273	9.3 ▽	22.0	20.2	23.8 ▲	3.9
위험경고 확인 여부	모른다	727	39.0 ▲	19.1	15.1	12.2 ▽	2.6
	확인한다	110	5.8 ▽	19.5	25.3 ▲	20.7	4.4
	확인하지 않는다	140	11.5 ▽	26.1 ▲	13.1	28.1 ▲	2.5
책임보험상품 선택 여부	선호한다	560	27.4 ▽	15.5 ▽	18.8 ▲	16.3	2.4
	선호하지 않는다	37	16.2	4.9 ▽	28.7 ▲	24.8	3.1
	상관없다	403	37.0 ▲	27.3 ▲	12.1 ▽	13.2	3.7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885	30.4	19.7	16.0	15.3	3.0
	반대	116	34.1	21.0	20.1	16.3	2.0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892	31.2	20.1	15.5 ▽	15.4	3.1
	반대	108	27.6	17.9	24.1 ▲	14.8	1.7

〈부록 표 II-17〉 제조물 구입 시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된 상품 선호도

주요 분야별		사례수	선호한다	선호하지 않는다	상관없다
전체		1,208	61.4	4.2	34.4
성별	남성	600	57.2 ▽	6.3 ▲	36.6
	여성	608	65.6 ▲	2.1 ▽	32.3
연령	20대 이하	193	46.5 ▽	4.2	49.3 ▲
	30대	220	54.6 ▽	4.4	41.0 ▲
	40대	252	65.0	3.8	31.2
	50대	246	61.9	5.1	33.1
	60세 이상	296	72.7 ▲	3.7	23.6 ▽
최종학력	중졸 이하	30	49.8	7.9	42.3
	고졸	322	56.8 ▽	3.2	40.0 ▲
	대졸	740	63.5	4.3	32.1 ▽
	대학원졸 이상	116	63.5	5.1	31.3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599	62.9	4.0	33.0
	중소도시	519	59.8	3.8	36.4
	읍면부	90	60.5	7.2	32.3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44	49.2	8.9	42.0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26	55.1	7.3	37.6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209	50.3 ▽	4.7	45.0 ▲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45	61.6	4.4	34.0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223	67.3 ▲	3.8	28.9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144	67.0	2.9	30.1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73	71.8	0.0	28.2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56	59.5	2.8	37.8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37	63.0	5.1	31.9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17	73.7	0.0	26.3
직업	월평균1,000만원이상	33	79.2 ▲	2.0	18.8
	농/임/어/축산	16	70.2	14.2	15.6
	자영업	101	66.4	6.4	27.2
	블루칼라	174	58.5	6.2	35.3
	화이트칼라	466	60.9	4.5	34.5
	공무원/군인	30	66.6	2.0	31.4
	전업주부	217	67.8 ▲	2.2	30.0
	학생	74	45.1 ▽	0.0	54.9 ▲
	무직/기타	130	59.4	3.5	37.1
	알고 있다	395	70.4 ▲	6.3 ▲	23.3 ▽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모른다	813	57.0 ▽	3.2 ▽	39.8 ▲
위험경고 확인 여부	확인한다	222	83.1 ▲	3.9	13.1 ▽
	확인하지 않는다	147	53.6 ▽	8.8 ▲	37.6
책임보험상품 선호 여부	선호한다	742	100.0 ▲	0.0 ▽	0.0 ▽
	선호하지 않는다	50	0.0 ▽	100.0 ▲	0.0 ▽
	상관없다	416	0.0 ▽	0.0 ▽	100.0 ▲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81	63.4 ▲	3.5 ▽	33.2 ▽
	반대	127	44.9 ▽	10.1 ▲	45.0 ▲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76	62.0	3.5 ▽	34.5
	반대	132	56.4	9.7 ▲	33.8

〈부록 표 II-18〉 제조물의 안전사용과 경고표시가 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

주요 분야별		사례 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이다	영향없음	보통이다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편이다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있음
전체		1,208	1.9	14.8	16.8	29.5	39.9	13.9	53.8
성별	남성	600	3.0 ▲	16.3	19.2 ▲	30.8	38.1	12.0	50.0 ▽
	여성	608	0.9 ▽	13.4	14.4 ▽	28.2	41.7	15.8	57.5 ▲
연령	20대 이하	193	1.8	26.4 ▲	28.2 ▲	31.3	31.7 ▽	8.9 ▽	40.6 ▽
	30대	220	4.8 ▲	12.0	16.8	35.8 ▲	36.6	10.8	47.4 ▽
	40대	252	1.5	15.2	16.7	29.0	42.9	11.4	54.3
	50대	246	1.6	13.3	14.9	29.6	39.4	16.2	55.6
	60세 이상	296	0.6	10.3 ▽	10.9 ▽	23.9 ▽	45.6 ▲	19.6 ▲	65.2 ▲
최종학력	중졸 이하	30	3.1	14.7	17.8	52.3 ▲	19.9 ▽	10.0	29.9 ▽
	고졸	322	1.1	13.6	14.7	29.8	41.3	14.2	55.5
	대졸	740	1.8	15.3	17.1	29.2	40.1	13.6	53.7
	대학원졸 이상	116	5.0 ▲	15.2	20.2	24.0	40.0	15.8	55.8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599	2.6	14.9	17.5	29.0	39.5	14.0	53.5
	중소도시	519	1.2	13.5	14.7	30.6	40.4	14.3	54.7
	읍면부	90	2.1	22.0 ▲	24.2	25.8	39.5	10.5	50.1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44	0.0	12.7	12.7	40.9	28.2	18.1	46.3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26	1.7	14.2	15.9	35.3	37.8	11.0	48.8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209	1.5	20.2 ▲	21.7 ▲	32.4	34.1	11.8	45.9 ▽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45	1.6	14.5	16.1	31.3	39.8	12.8	52.6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223	2.4	11.5	13.9	27.2	44.6	14.3	58.9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144	1.7	16.2	18.0	25.0	44.4	12.6	57.0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73	1.7	17.0	18.6	20.8	45.4	15.1	60.6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56	0.0	15.4	15.4	20.7	41.0	22.9	64.0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37	6.8 ▲	9.1	15.9	26.5	37.9	19.7	57.6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17	0.0	0.0	0.0	33.6	44.4	22.0	66.4
	월평균1,000만원이상	33	7.3 ▲	13.8	21.1	29.1	35.6	14.1	49.7
직업	농/임/어/축산	16	0.0	11.6	11.6	29.8	29.1	29.5	58.6
	자영업	101	0.0	16.6	16.6	25.9	38.9	18.6	57.5
	블루칼라	174	1.1	12.3	13.5	34.7	36.4	15.5	51.9
	화이트칼라	466	3.0 ▲	15.4	18.4	31.1	38.8	11.7	50.5
	공무원/군인	30	6.8	13.5	20.3	6.9 ▽	65.0 ▲	7.8	72.8 ▲
	전업주부	217	0.0 ▽	11.3	11.3 ▽	31.4	41.6	15.7	57.3
	학생	74	1.6	28.6 ▲	30.2 ▲	24.4	39.1	6.3	45.4
	무직/기타	130	3.2	13.5	16.8	24.1	42.6	16.5	59.1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알고 있다	395	0.7 ▽	12.4	13.0 ▽	25.3 ▽	43.7	18.0	61.7 ▲
	모른다	813	2.6 ▲	16.0	18.6 ▲	31.5 ▲	38.1	11.9	49.9 ▽
위험경고 확인 여부	확인한다	222	0.5	6.6 ▽	7.1 ▽	21.4 ▽	46.5 ▲	25.0	71.5 ▲
	확인하지 않는다	147	0.5	21.9 ▲	22.4	27.1	40.5	10.1	50.5
책임보험상품 선호 여부	선호한다	742	1.0 ▽	6.8 ▽	7.8 ▽	20.8 ▽	50.1 ▲	21.3	71.4 ▲
	선호하지 않는다	50	1.9	45.1 ▲	47.0 ▲	43.3 ▲	9.8 ▽	0.0	9.8 ▽
	상관없다	416	3.6 ▲	25.5 ▲	29.1 ▲	43.3 ▲	25.3 ▽	2.3	27.6 ▽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81	1.7	14.1 ▽	15.8 ▽	28.9	40.3	15.0	55.3 ▲
	반대	127	3.9	21.2 ▲	25.2 ▲	34.1	36.6	4.2	40.8 ▽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76	1.9	14.1 ▽	16.0 ▽	29.4	40.7	13.8	54.5
	반대	132	2.2	20.7 ▲	22.9 ▲	29.6	33.2	14.4	47.5

〈부록 표 II-19〉 제조물 구입 시 안전인증마크 부착 확인 여부

주요 분야별		사례수	확인하고 구매한다	확인하지만, 부착여부 상관없이 구매한다	확인하지 않고 구매한다
전체		1,208	28.0	43.4	28.6
성별	남성	600	22.3 ▽	44.8	32.9 ▲
	여성	608	33.6 ▲	42.0	24.3 ▽
연령	20대 이하	193	14.8 ▽	41.7	43.5 ▲
	30대	220	27.5	46.0	26.6
	40대	252	27.4	42.3	30.3
	50대	246	29.5	45.2	25.3
	60세 이상	296	36.3 ▲	42.1	21.7 ▽
최종학력	중졸 이하	30	23.8	36.5	39.7
	고졸	322	27.8	44.7	27.5
	대졸	740	27.0	44.1	28.9
	대학원졸 이상	116	35.6	37.5	26.9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599	26.7	42.8	30.5
	중소도시	519	29.0	44.4	26.6
	읍면부	90	30.9	41.9	27.3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44	25.0	46.0	29.0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26	22.9	42.4	34.7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209	29.5	38.5	32.0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45	23.2	47.3	29.5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223	30.2	44.3	25.4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144	30.3	45.0	24.8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73	40.6 ▲	36.3	23.1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56	28.4	47.0	24.7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37	36.2	29.7	34.1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17	10.2	77.4	12.5
직업	월평균1,000만원이상	33	23.3	41.3	35.4
	농/임/어/축산	16	43.5	40.9	15.6
	자영업	101	26.3	47.6	26.1
	블루칼라	174	30.7	46.1	23.2
	화이트칼라	466	25.5	46.5	28.0
	공무원/군인	30	20.2	32.6	47.2 ▲
	전업주부	217	37.8 ▲	38.2	24.0
	학생	74	11.5 ▽	42.2	46.3 ▲
	무직/기타	130	27.5	37.6	34.8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알고 있다	395	37.9 ▲	47.0	15.2 ▽
	모른다	813	23.2 ▽	41.7	35.1 ▲
위험경고 확인 여부	확인한다	222	53.4 ▲	39.9	6.7 ▽
	확인하지 않는다	147	18.7 ▽	55.8 ▲	25.4
책임보험상품 선택 여부	선호한다	742	38.9 ▲	41.1 ▽	20.0 ▽
	선호하지 않는다	50	12.7 ▽	63.3 ▲	24.1
	상관없다	416	10.4 ▽	45.2	44.4 ▲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81	29.3 ▲	43.4	27.3 ▽
	반대	127	16.7 ▽	43.6	39.7 ▲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76	27.5	43.4	29.1
	반대	132	31.9	43.5	24.5

〈부록 표 II-20〉 소비자 또는 소비자 가족이 신체·재산상 피해 입은 경우

주요 분야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1,208	13.4	86.6
성별	남성	600	10.1 ▽	89.9 ▲
	여성	608	16.6 ▲	83.4 ▽
연령	20대 이하	193	14.1	85.9
	30대	220	10.5	89.5
	40대	252	15.3	84.7
	50대	246	13.8	86.2
	60세 이상	296	13.0	87.0
최종학력	중졸 이하	30	7.7	92.3
	고졸	322	11.8	88.2
	대졸	740	14.5	85.5
	대학원졸 이상	116	12.1	87.9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599	13.8	86.2
	중소도시	519	12.1	87.9
	읍면부	90	17.8	82.2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44	6.7	93.3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26	13.2	86.8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209	9.4	90.6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45	10.4	89.6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223	14.5	85.5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144	15.8	84.2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73	22.1 ▲	77.9 ▽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56	26.9 ▲	73.1 ▽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37	11.9	88.1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17	24.5	75.5
	월평균1,000만원이상	33	5.8	94.2
직업	농/임/어/축산	16	0.0	100.0
	자영업	101	10.9	89.1
	블루칼라	174	15.3	84.7
	화이트칼라	466	15.2	84.8
	공무원/군인	30	23.2	76.8
	전업주부	217	11.7	88.3
	학생	74	14.0	86.0
	무직/기타	130	8.2	91.8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알고 있다	395	13.2	86.8
	모른다	813	13.4	86.6
위험경고 확인 여부	확인한다	222	13.5	86.5
	확인하지 않는다	147	11.9	88.1
책임보험상품 선호 여부	선호한다	742	15.1 ▲	84.9 ▽
	선호하지 않는다	50	6.1	93.9
	상관없다	416	11.2	88.8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81	13.3	86.7
	반대	127	14.0	86.0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76	13.6	86.4
	반대	132	11.3	88.7

〈부록 표 II-21〉 제조물사고 피해의 심각성

주요 분야별		사례 수	아주 심각 하였다	어느 정도 심각한 편이었다	심각함	보통 이었다	별로 심각하지 않는 편이었다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심각하지 않음
전체		162	1.3	14.5	15.8	26.6	47.8	9.8	57.6
성별	남성	61	1.5	14.2	15.7	25.1	54.3	4.9	59.2
	여성	101	1.2	14.6	15.8	27.5	43.9	12.8	56.7
연령	20대 이하	27	4.4	2.7	7.1	24.4	47.0	21.5	68.5
	30대	23	0.0	32.4	32.4	19.5	32.3	15.8	48.1
	40대	39	0.0	16.2	16.2	24.8	50.7	8.3	59.0
	50대	34	0.0	16.8	16.8	18.7	58.8	5.8	64.5
	60세 이상	38	2.4	8.4	10.8	41.0▲	45.1	3.1	48.2
최종학력	중졸 이하	2	0.0	0.0	0.0	47.8	52.2	0.0	52.2
	고졸	38	0.0	8.7	8.7	23.9	57.9	9.5	67.4
	대졸	107	2.0	16.5	18.5	25.9	45.1	10.5	55.6
	대학원졸 이상	14	0.0	17.1	17.1	35.6	40.2	7.1	47.3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83	1.1	15.9	17.0	25.1	53.2	4.6 ▽	57.8
	중소도시	63	1.9	12.5	14.4	29.7	40.6	15.4	55.9
	읍면부	16	0.0	14.9	14.9	21.6	48.4	15.1	63.5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3	0.0	0.0	0.0	59.0	41.0	0.0	41.0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7	0.0	9.9	9.9	46.6	36.2	7.2	43.4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20	6.1	23.7	29.8	23.8	40.3	6.1	46.4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5	0.0	0.0	0.0	39.3	46.4	14.3	60.7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32	0.0	12.5	12.5	18.5	59.7	9.4	69.1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23	0.0	21.6	21.6	13.3	60.9	4.2	65.1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16	0.0	7.5	7.5	33.7	43.9	14.9	58.8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15	0.0	30.0	30.0	28.1	33.9	8.1	42.0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4	0.0	13.6	13.6	0.0	59.2	27.2	86.4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4	0.0	44.6	44.6	0.0	55.4	0.0	55.4
직업	월평균1,000만원이상	2	47.4	0.0	47.4	0.0	0.0	52.6	52.6
	자영업	11	0.0	18.8	18.8	36.3	45.0	0.0	45.0
	블루칼라	27	0.0	11.8	11.8	24.9	58.8	4.5	63.3
	화이트칼라	71	0.0	17.4	17.4	25.9	44.2	12.5	56.7
	공무원/군인	7	13.0	17.4	30.4	45.3	24.3	0.0	24.3
	전업주부	25	0.0	11.5	11.5	21.0	58.0	9.5	67.5
	학생	10	11.7	0.0	11.7	7.8	47.0	33.5	80.4
	무직/기타	11	0.0	16.6	16.6	44.3	39.1	0.0	39.1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알고 있다	52	4.0 ▲	22.5 ▲	26.5 ▲	26.6	42.8	4.1	46.9
	모른다	109	0.0 ▽	10.7 ▽	10.7 ▽	26.6	50.2	12.6	62.8
위험경고 확인 여부	확인한다	30	7.0 ▲	20.5	27.5	34.9	34.4	3.2	37.6 ▽
	확인하지 않는다	18	0.0	26.6	26.6	12.6	53.9	6.9	60.7
책임보험상품 선택 여부	선택한다	112	1.9	16.1	18.0	28.0	43.8	10.2	54.0
	선택하지 않는다	3	0.0	0.0	0.0	65.9	34.1	0.0	34.1
	상관없다	47	0.0	11.6	11.6	20.5	58.4	9.5	67.9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44	1.5	15.8	17.3	25.5	47.8	9.4	57.2
	반대	18	0.0	3.9	3.9	34.8	47.7	13.6	61.3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47	1.4	13.4	14.8	27.1	47.9	10.2	58.1
	반대	15	0.0	25.7	25.7	21.3	46.6	6.4	53.0

〈부록 표 II-22〉 제조물사고 피해 발생 원인

주요 분야별		사례수	제품자체나 경고 표시내용에 는 문제가 없었으나 본인이 부주의하여	제품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사용방법이나 위험에 대한 경고표시내용 등이 미흡해서 (경고상 결함)	제품자체의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설계상 결함)	제품 제조과정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해서 (제조상 결함)	기타	유통과정 중에서 결함이 발생해서 (유통상 결함)
전체		162	38.8	37.2	22.7	17.7	3.6	2.3
성별	남성	61	37.7	37.6	22.0	23.3	4.7	1.7
	여성	101	39.5	36.9	23.1	14.3	2.9	2.7
연령	20대 이하	27	57.2	26.0	21.3	23.9	4.4	2.7
	30대	23	45.2	28.6	18.0	20.3	3.0	5.3
	40대	39	38.3	40.5	27.7	12.2	5.1	4.7
	50대	34	28.5	45.3	14.7	13.3	2.8	0.0
	60세 이상	38	31.7	39.7	28.5	21.4	2.4	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2	0.0	52.2	47.8	47.8	0.0	0.0
	고졸	38	44.5	45.0	24.8	12.7	2.4	0.0
	대졸	107	37.7	32.6	20.6	17.6	3.4	2.4
	대학원졸 이상	14	38.4	48.1	28.9	27.0	8.2	8.5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83	28.9 ▽	39.8	29.9 ▲	17.5	5.6	2.7
	중소도시	63	48.6 ▲	35.9	13.2 ▽	18.1	1.9	1.2
	읍면부	16	51.8	28.3	22.6	17.4	0.0	5.0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3	31.6	27.3	41.0	0.0	0.0	0.0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7	38.4	39.5	27.4	23.1	0.0	0.0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20	41.1	35.1	16.3	24.8	4.1	5.1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5	44.1	24.0	31.6	15.4	2.7	3.2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32	35.0	44.3	18.6	18.6	0.0	0.0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23	27.5	55.0	12.5	10.2	5.1	3.2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16	31.4	31.5	28.4	31.6	5.8	0.0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15	60.1	15.7	25.1	4.6	0.0	0.0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4	64.8	31.8	0.0	13.6	21.6	0.0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4	14.9	70.3	59.5	29.7	29.7	29.7
직업	월평균1,000만원이상	2	47.4	52.6	0.0	0.0	0.0	0.0
	자영업	11	9.8	54.2	36.1	8.8	0.0	0.0
	블루칼라	27	36.6	32.1	22.7	32.1	7.9	0.0
	화이트칼라	71	44.3	35.7	20.4	14.6	3.5	3.1
	공무원/군인	7	30.4	41.6	27.9	27.9	0.0	0.0
	전업주부	25	28.0	49.1	22.1	15.9	0.0	3.2
	학생	10	80.4	31.3	11.7	11.7	0.0	0.0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무직/기타	11	29.2	16.4	32.1	15.5	11.4	6.8
	알고 있다	52	32.8	40.9	30.3	29.1 ▲	4.1	4.2
	모른다	109	41.7	35.4	19.0	12.3 ▽	3.3	1.4
위험경고 확인 여부	확인한다	30	28.8	38.0	33.7	28.7	3.2	4.0
	확인하지 않는다	18	44.5	39.3	25.9	25.3	6.6	5.7
책임보험상품 선택 여부	선택한다	112	37.0	36.3	23.2	18.3	2.6	2.4
	선택하지 않는다	3	65.9	39.3	34.1	0.0	0.0	0.0
	상관없다	47	41.4	39.1	20.7	17.6	6.0	2.2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44	36.7	39.0	23.5	16.1	2.7	2.1
	반대	18	55.8	22.8	16.1	31.0	10.6	4.1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47	38.2	38.2	21.9	18.6	3.9	2.6
	반대	15	45.5	27.4	30.6	9.3	0.0	0.0

〈부록 표 II-23〉 손해배상청구 시 제조사와의 논쟁 여부 및 유형

주요 분야별		사례 수	제품결함이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결함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한 입증책임 논쟁이 있었다	피해내용과 제품결함이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제품결함내용이 제조당시 기술수준의 한계에 의해 나타났다는 논쟁이 있었다	논쟁이 전혀 없었다
전체		162	6,5	5,3	3,6	3,5	81,1
성별	남성	61	4,7	10,4 ▲	2,1	4,8	77,9
	여성	101	7,6	2,2 ▽	4,5	2,7	82,9
연령	20대 이하	27	4,4	4,4	0,0	13,6	77,5
	30대	23	5,3	9,8	15,8	0,0	69,2
	40대	39	11,5	0,0	3,3	0,0	85,2
	50대	34	3,1	11,4	0,0	2,8	82,8
	60세 이상	38	6,9	3,1	2,4	2,6	84,9
최종학력	중졸 이하	2	0,0	0,0	0,0	0,0	100,0
	고졸	38	2,9	4,4	0,0	2,1	90,5
	대졸	107	7,8	5,3	3,8	2,5	80,6
	대학원졸 이상	14	7,4	8,5	12,8	15,4	55,9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83	2,7 ▽	6,2	6,2	2,7 ▽	80,3
	중소도시	63	8,1	3,6	1,1	8,1	85,3
	읍면부	16	19,9	7,5	0,0	19,9	68,0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3	0,0	0,0	0,0	0,0	72,7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7	5,6	13,4	0,0	5,6	76,6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20	14,4	3,3	0,0	14,4	82,2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5	9,1	4,8	2,4	9,1	83,8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32	6,5	0,0	0,0	6,5	83,6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23	5,1	4,6	0,0	5,1	86,1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16	0,0	6,4	20,7	0,0	72,9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15	7,8	15,7	4,6	7,8	71,9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4	0,0	0,0	0,0	0,0	100,0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4	0,0	0,0	29,7	0,0	70,3
직업	월평균1,000만원이상	2	0,0	0,0	0,0	0,0	100,0
	자영업	11	0,0	11,0	0,0	0,0	80,2
	블루칼라	27	4,2	0,0	4,5	4,2	79,3
	화이트칼라	71	6,4	5,7	6,6	6,4	80,2
	공무원/군인	7	13,0	32,3	0,0	13,0	54,7
	전업주부	25	4,6	4,1	0,0	4,6	91,3
	학생	10	0,0	0,0	0,0	0,0	92,2
	무직/기타	11	26,4	0,0	0,0	26,4	73,6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알고 있다	52	6,2	7,9	6,6	6,2	71,4 ▽
	모른다	109	6,7	4,1	2,2	6,7	85,7 ▲
위험경고 확인 여부	확인한다	30	10,8	7,5	11,4 ▲	10,8	63,0 ▽
	확인하지 않는다	18	0,0	10,6	0,0	0,0	83,6
책임보험상품 선택 여부	선호한다	112	9,4 ▲	7,6 ▲	5,2	9,4 ▲	74,6 ▽
	선호하지 않는다	3	0,0	0,0	0,0	0,0	60,7
	상관없다	47	0,0 ▽	0,0	0,0	0,0 ▽	97,8 ▲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44	7,3	5,2	3,6	7,3	80,7
	반대	18	0,0	5,8	3,9	0,0	83,5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47	7,2	5,1	3,5	7,2	81,1
	반대	15	0,0	6,9	4,6	0,0	80,3

〈부록 표 II-24〉 제조물사고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주요 분야별		사례수	받았다	받지 못했다
전체		162	9.6	90.4
성별	남성	61	19.2 ▲	80.8 ▼
	여성	101	3.8 ▼	96.2 ▲
연령	20대 이하	27	15.1	84.9
	30대	23	15.0	85.0
	40대	39	1.8	98.2
	50대	34	8.9	91.1
	60세 이상	38	11.0	89.0
최종학력	중졸 이하	2	0.0	100.0
	고졸	38	2.4	97.6
	대졸	107	10.6	89.4
	대학원졸 이상	14	22.8	77.2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83	11.2	88.8
	중소도시	63	6.8	93.2
	읍면부	16	12.3	87.7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3	0.0	100.0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7	5.6	94.4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20	8.3	91.7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5	9.5	90.5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32	9.8	90.2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23	12.0	88.0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16	16.8	83.2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15	4.6	95.4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4	0.0	100.0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4	29.7	70.3
월평균1,000만원이상		2	0.0	100.0
직업	자영업	11	8.8	91.2
	블루칼라	27	15.4	84.6
	화이트칼라	71	10.0	90.0
	공무원/군인	7	14.9	85.1
	전업주부	25	0.0	100.0
	학생	10	0.0	100.0
	무직/기타	11	22.3	77.7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알고 있다	52	16.7 ▲	83.3 ▼
	모른다	109	6.2 ▼	93.8 ▲
위험경고 확인 여부	확인한다	30	22.6 ▲	77.4 ▼
	확인하지 않는다	18	5.7	94.3
책임보험상품 선호 여부	선호한다	112	11.9	88.1
	선호하지 않는다	3	0.0	100.0
	상관없다	47	4.7	95.3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44	9.2	90.8
	반대	18	13.2	86.8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47	10.1	89.9
	반대	15	4.6	95.4

〈부록 표 II-25〉 제조물사고피해에 대한 배상 경로

주요 분야별		사례수	상품 제조사	유통사 (마트, 쇼핑몰)	제조사 혹은 유통사에 연락하였으나 배상을 받지 못해 소비자보호 기관에 신고 후 해결
전체		16	69.0	23.2	7.8
성별	남성	12	69.3	30.7	0.0
	여성	4	68.2	0.0	31.8
연령	20대 이하	4	70.6	29.4	0.0
	30대	3	65.0	0.0	35.0
	40대	1	100.0	0.0	0.0
	50대	3	65.7	34.3	0.0
	60세 이상	4	68.0	32.0	0.0
최종학력	고졸	1	100.0	0.0	0.0
	대졸	11	68.3	31.7	0.0
	대학원졸 이상	3	62.4	0.0	37.6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9	65.9	21.1	13.0
	중소도시	4	61.5	38.5	0.0
	읍면부	2	100.0	0.0	0.0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	100.0	0.0	0.0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2	63.3	36.7	0.0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	50.0	50.0	0.0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3	100.0	0.0	0.0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3	61.9	38.1	0.0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3	72.5	27.5	0.0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1	100.0	0.0	0.0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1	0.0	0.0	100.0
직업	자영업	1	100.0	0.0	0.0
	블루칼라	4	70.6	29.4	0.0
	화이트칼라	7	57.4	25.4	17.2
	공무원/군인	1	100.0	0.0	0.0
	무직/기타	2	74.5	25.5	0.0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알고 있다	9	65.8	20.4	13.8
	모른다	7	73.2	26.8	0.0
위험경고 확인 여부	확인한다	7	55.9	26.3	17.8
	확인하지 않는다	1	100.0	0.0	0.0
책임보험상품 선택 여부	선택한다	13	72.9	18.0	9.1
	선택없다	2	45.5	54.5	0.0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3	63.5	27.3	9.2
	반대	2	100.0	0.0	0.0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5	67.6	24.3	8.2
	반대	1	100.0	0.0	0.0

〈부록 표 II-26〉 손해배상 시 제조사 또는 보험사가 제시한 피해 발생 원인

주요 분야별		사례 수	제품 제조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해서(제조상 결함)	제품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사용방법이나 위험에 대한 경고표시내용 등이 미흡해서 (경고상 결함)	제품자체의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설계상 결함)	유통과정 중에서 결함이 발생해서 (유통상 결함)	제품자체나 경고 표시내용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본인이 부주의하여	기타
전체		16	50.0	18.8	12.5	6.7	6.0	6.0
성별	남성	12	66.2	14.6	10.3	8.9	0.0	0.0
	여성	4	0.0	31.8	19.1	0.0	24.5	24.5
연령	20대 이하	4	29.4	23.5	47.1	0.0	0.0	0.0
	30대	3	65.0	35.0	0.0	0.0	0.0	0.0
	40대	1	100.0	0.0	0.0	0.0	0.0	0.0
	50대	3	65.7	0.0	0.0	34.3	0.0	0.0
	60세 이상	4	38.2	17.7	0.0	0.0	22.1	22.1
최종학력	고졸	1	0.0	0.0	0.0	0.0	0.0	100.0
	대졸	11	59.1	6.6	17.0	9.2	8.2	0.0
	대학원졸 이상	3	32.4	67.6	0.0	0.0	0.0	0.0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9	45.4	31.5	13.0	0.0	0.0	10.1
	중소도시	4	58.6	0.0	17.0	24.4	0.0	0.0
	읍면부	2	52.8	0.0	0.0	0.0	47.2	0.0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	0.0	0.0	0.0	0.0	100.0	0.0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2	100.0	0.0	0.0	0.0	0.0	0.0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	50.0	0.0	50.0	0.0	0.0	0.0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3	100.0	0.0	0.0	0.0	0.0	0.0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3	0.0	35.4	26.5	38.1	0.0	0.0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3	38.2	27.5	0.0	0.0	0.0	34.3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1	100.0	0.0	0.0	0.0	0.0	0.0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1	0.0	100.0	0.0	0.0	0.0	0.0
직업	자영업	1	0.0	100.0	0.0	0.0	0.0	0.0
	블루칼라	4	77.3	0.0	0.0	0.0	0.0	22.7
	화이트칼라	7	27.0	27.8	17.2	14.8	13.2	0.0
	공무원/군인	1	100.0	0.0	0.0	0.0	0.0	0.0
	무직/기타	2	69.4	0.0	30.6	0.0	0.0	0.0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알고 있다	9	30.3	33.4	13.8	11.9	10.6	0.0
	모른다	7	75.5	0.0	10.7	0.0	0.0	13.8
위험경고 확인 여부	확인한다	7	10.2	43.0	17.8	15.3	13.7	0.0
	확인하지 않는다	1	100.0	0.0	0.0	0.0	0.0	0.0
책임보험상품 선택 여부	선호한다	13	41.6	22.0	14.5	7.8	7.0	7.0
	상관없다	2	100.0	0.0	0.0	0.0	0.0	0.0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3	53.6	22.2	9.2	7.9	7.1	0.0
	반대	2	29.4	0.0	30.9	0.0	0.0	39.7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5	47.6	19.7	13.0	7.0	6.3	6.3
	반대	1	100.0	0.0	0.0	0.0	0.0	0.0

〈부록 표 II-27〉 제조물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만족도

주요 분야별		사 례 수	매우 만족 하였다	어느 정도 만족 하였다	만족	그저 그렇다	약간 불만족 하였다	불만족
전체		16	4.5	48.2	52.6	33.4	14.0	14.0
성별	남성	12	5.9	49.6	55.5	36.2	8.3	8.3
	여성	4	0.0	43.6	43.6	24.5	31.8	31.8
연령	20대 이하	4	0.0	47.1	47.1	29.4	23.5	23.5
	30대	3	0.0	35.0	35.0	30.0	35.0	35.0
	40대	1	100.0	0.0	100.0	0.0	0.0	0.0
	50대	3	0.0	34.3	34.3	65.7	0.0	0.0
	60세 이상	4	0.0	77.9	77.9	22.1	0.0	0.0
최종학력	고졸	1	0.0	100.0	100.0	0.0	0.0	0.0
	대졸	11	6.1	48.4	54.5	45.5	0.0	0.0
	대학원졸 이상	3	0.0	32.4	32.4	0.0	67.6	67.6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9	0.0	42.0	42.0	34.5	23.5	23.5
	중소도시	4	16.2	59.4	75.6	24.4	0.0	0.0
	읍면부	2	0.0	52.8	52.8	47.2	0.0	0.0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	0.0	0.0	0.0	100.0	0.0	0.0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2	0.0	100.0	100.0	0.0	0.0	0.0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	0.0	50.0	50.0	50.0	0.0	0.0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3	0.0	69.8	69.8	30.2	0.0	0.0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3	0.0	26.5	26.5	38.1	35.4	35.4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3	0.0	61.8	61.8	38.2	0.0	0.0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1	100.0	0.0	100.0	0.0	0.0	0.0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1	0.0	0.0	0.0	0.0	100.0	100.0
직업	자영업	1	0.0	0.0	0.0	0.0	100.0	100.0
	블루칼라	4	0.0	76.7	76.7	23.3	0.0	0.0
	화이트칼라	7	9.8	27.8	37.6	45.2	17.2	17.2
	공무원/군인	1	0.0	0.0	0.0	100.0	0.0	0.0
	무직/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알고 있다	9	7.9	20.0	27.9	47.3	24.8	24.8
	모른다	7	0.0	84.7	84.7	15.3	0.0	0.0
위험경고 확인 여부	확인한다	7	10.2	11.0	21.1	46.8	32.0	32.0
	확인하지 않는다	1	0.0	100.0	100.0	0.0	0.0	0.0
책임보험상품 선택 여부	선호한다	13	5.2	39.5	44.7	38.9	16.4	16.4
	상관없다	2	0.0	100.0	100.0	0.0	0.0	0.0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3	0.0	44.2	44.2	39.3	16.5	16.5
	반대	2	29.4	70.6	100.0	0.0	0.0	0.0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5	0.0	50.4	50.4	34.9	14.7	14.7
	반대	1	100.0	0.0	100.0	0.0	0.0	0.0

〈부록 표 II-28〉 제조물사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한 이유

주요 분야별		사례수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피해배상을 신청하지 않아서	나의 잘못 이어서	현행제도상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기타	제조자의 잘못인데도 배상을 하지 않아서	제조자를 찾지 못해서	제조자의 잘못이었으 나 나의 잘못이라고 우겨서
전체		146	58.9	26.3	8.3	3.6	1.4	0.8	0.8
성별	남성	49	56.4	31.4	10.2	1.9	0.0	0.0	0.0
	여성	97	60.1	23.6	7.3	4.5	2.1	1.1	1.2
연령	20대 이하	23	57.7	37.1	0.0	5.2	0.0	0.0	0.0
	30대	20	56.6	33.8	9.6	0.0	0.0	0.0	0.0
	40대	38	60.8	15.0	16.0	5.2	0.0	0.0	3.1
	50대	31	57.5	29.5	6.2	6.8	0.0	0.0	0.0
	60세 이상	34	60.0	24.2	6.6	0.0	6.0	3.2	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2	0.0	52.2	0.0	0.0	0.0	47.8	0.0
	고졸	37	64.4	29.3	0.0	3.3	3.0	0.0	0.0
	대졸	96	60.3	22.4	12.1	3.0	1.0	0.0	1.2
	대학원졸 이상	11	39.6	44.2	5.5	10.7	0.0	0.0	0.0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73	56.5	26.0	7.7	4.0	2.8	1.5	1.6
	중소도시	59	64.8	24.2	9.0	2.0	0.0	0.0	0.0
	읍면부	14	46.6	36.2	8.6	8.6	0.0	0.0	0.0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3	72.7	27.3	0.0	0.0	0.0	0.0	0.0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6	54.8	22.9	7.7	7.7	0.0	7.0	0.0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18	47.9	34.9	12.8	4.4	0.0	0.0	0.0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3	53.7	33.8	2.6	5.0	4.8	0.0	0.0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29	65.1	20.9	14.0	0.0	0.0	0.0	0.0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20	73.7	9.9	10.6	5.8	0.0	0.0	0.0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13	69.7	23.3	0.0	0.0	6.9	0.0	0.0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14	45.6	33.6	12.7	0.0	0.0	0.0	8.1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4	27.2	51.2	0.0	21.6	0.0	0.0	0.0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3	78.8	21.2	0.0	0.0	0.0	0.0	0.0
직업	월평균1,000만원이상	2	52.6	47.4	0.0	0.0	0.0	0.0	0.0
	자영업	10	78.4	0.0	21.6	0.0	0.0	0.0	0.0
	블루칼라	22	47.6	33.1	4.3	5.2	4.9	4.9	0.0
	화이트칼라	64	59.8	26.7	7.4	4.7	1.5	0.0	0.0
	공무원/군인	6	48.9	35.7	15.3	0.0	0.0	0.0	0.0
	전업주부	25	57.4	24.8	13.2	4.5	0.0	0.0	0.0
	학생	10	68.7	31.3	0.0	0.0	0.0	0.0	0.0
	무직/기타	8	58.2	27.7	0.0	0.0	0.0	0.0	14.1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알고 있다	44	42.6	32.4	12.9	4.9	4.7	2.5	0.0
	모른다	102	65.8	23.6	6.4	3.1	0.0	0.0	1.1
위험경고 확인 여부	확인한다	23	42.8	29.6	9.9	4.1	8.8	4.8	0.0
	확인하지 않는다	17	39.3	39.4	14.3	7.0	0.0	0.0	0.0
책임보험상품 선택 여부	선호한다	98	62.9	24.2	8.9	.8	2.1	0.0	1.2
	선호하지 않는다	3	26.6	73.4	0.0	0.0	0.0	0.0	0.0
	상관없다	44	52.2	27.6	7.6	10.1	0.0	2.5	0.0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31	58.2	26.7	9.3	3.3	1.6	0.0	0.9
	반대	15	64.3	22.3	0.0	6.2	0.0	7.2	0.0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32	59.9	25.3	8.3	3.1	1.5	0.8	0.9
	반대	14	48.9	34.9	8.1	8.1	0.0	0.0	0.0

〈부록 표 II-29〉 피해액 대비 배상 정도

주요 분야별		사 례 수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체		16	7.8	67.6	10.7	14.0	83.4
성별	남성	12	10.3	71.2	0.0	18.5	87.0
	여성	4	0.0	56.4	43.6	0.0	72.3
연령	20대 이하	4	29.4	52.9	17.6	0.0	70.5
	30대	3	0.0	65.0	0.0	35.0	91.0
	40대	1	0.0	100.0	0.0	0.0	80.0
	50대	3	0.0	68.5	0.0	31.5	112.6
	60세 이상	4	0.0	77.9	22.1	0.0	69.2
최종학력	고졸	1	0.0	0.0	100.0	0.0	101.0
	대졸	11	10.6	63.9	6.4	19.1	87.7
	대학원졸 이상	3	0.0	100.0	0.0	0.0	63.0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9	13.0	66.6	10.1	10.3	81.1
	중소도시	4	0.0	54.7	17.0	28.3	93.9
	읍면부	2	0.0	100.0	0.0	0.0	71.1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	0.0	100.0	0.0	0.0	50.0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2	0.0	100.0	0.0	0.0	77.5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	50.0	50.0	0.0	0.0	69.5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3	0.0	31.7	0.0	68.3	133.3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3	0.0	73.5	26.5	0.0	65.4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3	0.0	65.7	34.3	0.0	86.1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1	0.0	100.0	0.0	0.0	80.0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1	0.0	100.0	0.0	0.0	50.0
직업	자영업	1	0.0	100.0	0.0	0.0	50.0
	블루칼라	4	0.0	54.0	22.7	23.3	111.0
	화이트칼라	7	17.2	65.7	0.0	17.2	73.4
	공무원/군인	1	0.0	100.0	0.0	0.0	70.0
	무직/기타	2	0.0	69.4	30.6	0.0	84.7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알고 있다	9	13.8	75.3	0.0	10.9	71.4
	모른다	7	0.0	57.6	24.5	17.9	98.9
위험경고 확인 여부	확인한다	7	17.8	82.2	0.0	0.0	56.4
	확인하지 않는다	1	0.0	100.0	0.0	0.0	50.0
책임보험상품 선호 여부	선호한다	13	9.1	62.2	12.5	16.3	84.5
	상관없다	2	0.0	100.0	0.0	0.0	76.7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3	9.2	74.4	0.0	16.4	81.3
	반대	2	0.0	29.4	70.6	0.0	94.8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5	8.2	66.1	11.2	14.6	83.5
	반대	1	0.0	100.0	0.0	0.0	80.0

〈부록 표 Ⅱ-30〉 보험금 지급 관련 서비스 만족도

주요 분야별		사례 수	어느 정도 만족하였다	만족	보통이다	약간 불만족하였다	불만족
전체		16	33.1	33.1	32.8	34.1	34.1
성별	남성	12	35.9	35.9	29.2	34.9	34.9
	여성	4	24.5	24.5	43.6	31.8	31.8
연령	20대 이하	4	0.0	0.0	76.5	23.5	23.5
	30대	3	35.0	35.0	0.0	65.0	65.0
	40대	1	100.0	100.0	0.0	0.0	0.0
	50대	3	31.5	31.5	0.0	68.5	68.5
	60세 이상	4	54.1	54.1	45.9	0.0	0.0
최종학력	고졸	1	100.0	100.0	0.0	0.0	0.0
	대졸	11	37.0	37.0	44.7	18.3	18.3
	대학원졸 이상	3	0.0	0.0	0.0	100.0	100.0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9	28.4	28.4	36.9	34.6	34.6
	중소도시	4	58.6	58.6	17.0	24.4	24.4
	읍면부	2	0.0	0.0	47.2	52.8	52.8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	0.0	0.0	100.0	0.0	0.0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2	36.7	36.7	0.0	63.3	63.3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	0.0	0.0	100.0	0.0	0.0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3	68.3	68.3	31.7	0.0	0.0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3	0.0	0.0	26.5	73.5	73.5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3	61.8	61.8	0.0	38.2	38.2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1	100.0	100.0	0.0	0.0	0.0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1	0.0	0.0	0.0	100.0	100.0
직업	자영업	1	0.0	0.0	0.0	100.0	100.0
	블루칼라	4	46.0	46.0	54.0	0.0	0.0
	화이트칼라	7	37.6	37.6	30.4	32.0	32.0
	공무원/군인	1	0.0	0.0	0.0	100.0	100.0
	무직/기타	2	25.5	25.5	30.6	43.9	43.9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알고 있다	9	27.3	27.3	35.9	36.7	36.7
	모른다	7	40.6	40.6	28.6	30.8	30.8
위험경고 확인 여부	확인한다	7	21.1	21.1	31.5	47.3	47.3
	확인하지 않는다	1	0.0	0.0	100.0	0.0	0.0
책임보험상품 선호 여부	선호한다	13	38.6	38.6	21.5	39.8	39.8
	상관없다	2	0.0	0.0	100.0	0.0	0.0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3	26.7	26.7	33.1	40.2	40.2
	반대	2	69.1	69.1	30.9	0.0	0.0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5	30.0	30.0	34.3	35.7	35.7
	반대	1	100.0	100.0	0.0	0.0	0.0

〈부록 표 II-31〉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제조물 구매 의향

주요 분야별		사례 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의향있음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의향없음
전체		1,208	7.2	36.7	43.9	42.2	12.2	1.7	13.9
성별	남성	600	6.6	33.6 ▽	40.2 ▽	45.1 ▲	12.2	2.5 ▲	14.7
	여성	608	7.9	39.6 ▲	47.5 ▲	39.4 ▽	12.2	0.8 ▽	13.1
연령	20대 이하	193	4.7	30.2 ▽	34.9 ▽	41.2	20.7 ▲	3.3	24.0 ▲
	30대	220	5.4	33.6	39.0	48.6 ▲	9.8	2.5	12.4
	40대	252	8.9	36.3	45.2	42.9	11.0	0.9	11.9
	50대	246	6.8	37.0	43.8	42.5	12.5	1.2	13.7
	60세 이상	296	9.3	43.1 ▲	52.4 ▲	37.3	9.4	0.9	10.3 ▽
최종학력	중졸 이하	30	5.3	16.1 ▽	21.4 ▽	62.5 ▲	13.4	2.7	16.1
	고졸	322	5.9	37.2	43.1	41.3	12.8	2.8	15.6
	대졸	740	6.8	36.8	43.6	42.4	12.6	1.4	14.0
	대학원졸 이상	116	14.1 ▲	39.6	53.6 ▲	38.2	8.2	0.0	8.2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599	7.8	37.1	44.9	42.2	11.2	1.7	12.9
	중소도시	519	6.4	37.5	43.9	41.8	13.0	1.3	14.3
	읍면부	90	8.2	28.7	36.9	45.1	15.1	2.9	18.0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44	4.4	23.9	28.2 ▽	50.2	18.8	2.7	21.6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26	4.8	28.4 ▽	33.2 ▽	48.4	15.2	3.2	18.4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209	4.4	37.9	42.3	43.9	10.7	3.1	13.7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45	5.7	34.8	40.5	44.0	13.6	1.9	15.5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223	9.3	36.7	46.0	44.6	9.4	0.0 ▽	9.4 ▽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144	6.8	43.9	50.6	36.1	12.7	0.7	13.3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73	10.3	44.3	54.6	33.5	10.3	1.7	11.9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56	11.9	40.6	52.5	34.1	10.6	2.9	13.4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37	14.9	36.7	51.5	33.2	15.3	0.0	15.3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17	16.4	55.6	72.1	16.1	11.8	0.0	11.8
직업	월평균1,000만원이상	33	9.7	26.1	35.8	51.1	13.1	0.0	13.1
	농/임/어/축산	16	22.1	34.0	56.2	29.3	14.5	0.0	14.5
	자영업	101	7.4	44.6	51.9	38.9	9.2	0.0	9.2
	블루칼라	174	11.1 ▲	30.6	41.7	46.1	12.2	0.0	12.2
	화이트칼라	466	7.1	36.1	43.1	41.6	13.0	2.2	15.2
	공무원/군인	30	15.7	37.1	52.8	31.9	12.5	2.8	15.3
	전업주부	217	4.4	44.2 ▲	48.6	42.5	8.3	0.5	8.9 ▽
	학생	74	1.6	27.4	29.0 ▽	46.7	19.7 ▲	4.6 ▲	24.3 ▲
제조물책임 법 인지 여부	무직/기타	130	6.6	33.6	40.1	42.6	14.0	3.2	17.2
	알고 있다	395	10.2 ▲	43.2 ▲	53.5 ▲	37.6 ▽	7.9 ▽	1.0	9.0 ▽
위험경고 확인 여부	모른다	813	5.8 ▽	33.4 ▽	39.2 ▽	44.5 ▲	14.4 ▲	1.9	16.3 ▲
	확인한다	222	13.5 ▲	46.7 ▲	60.2 ▲	36.7	3.0 ▽	0.0 ▽	3.0 ▽
	확인하지 않는다	147	7.0	38.7	45.7	37.2	14.3	2.8	17.1
책임보험 상품 선호 여부	선호한다	742	10.7 ▲	45.8 ▲	56.5 ▲	36.8 ▽	6.3 ▽	.4 ▽	6.7 ▽
	선호하지 않는다	50	2.0	37.2	39.1	43.0	16.3	1.6	17.9
	상관없다	416	1.7 ▽	20.3 ▽	22.0 ▽	51.8 ▲	22.4 ▲	3.8 ▲	26.2 ▲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81	8.0 ▲	38.4 ▲	46.4 ▲	41.2 ▽	11.2 ▽	1.2 ▽	12.3 ▽
	반대	127	0.5 ▽	21.6 ▽	22.1 ▽	50.8 ▲	21.5 ▲	5.6 ▲	27.2 ▲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76	7.4	36.5	43.8	42.7	12.0	1.5	13.4
	반대	132	6.2	38.0	44.2	38.1	14.5	3.1	17.7

〈부록 표 II-32〉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제조물 구매 시 지불 가능한 가격 범위

주요 분야별		사례 수	0%	10% 미만	10% 이상 30% 미만	30% 이상 50% 미만	50% 이상 70% 미만	70% 이상
전체		1,208	18.0	25.7	37.1	5.7	7.7	5.8
성별	남성	600	18.7	28.8 ▲	33.1 ▽	5.7	8.4	5.3
	여성	608	17.4	22.5 ▽	41.0 ▲	5.7	7.1	6.3
연령	20대 이하	193	23.3 ▲	15.5 ▽	37.8	9.0 ▲	8.4	6.1
	30대	220	15.8	26.4	40.0	7.7	7.0	3.0
	40대	252	14.5	27.4	36.5	5.5	9.5	6.6
	50대	246	18.3	32.0 ▲	32.1	3.8	8.6	5.2
	60세 이상	296	19.0	25.0	39.0	3.8	5.5	7.6
최종학력	중졸 이하	30	18.2	27.3	37.0	3.2	14.3	0.0
	고졸	322	18.8	18.9 ▽	40.7	6.4	7.7	7.6
	대졸	740	18.6	27.2	36.1	5.7	7.6	4.9
거주지역 구분	대학원졸 이상	116	12.3	34.1 ▲	33.5	4.5	7.2	8.4
	대도시	599	16.9	26.9	36.5	6.9	7.1	5.8
	중소도시	519	20.1	24.0	36.9	4.5	9.5 ▲	5.1
	읍면부	90	13.8	27.4	41.9	5.0	1.5 ▽	10.4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44	19.0	22.4	26.5	5.5	15.3	11.4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26	25.5 ▲	17.4 ▽	35.2	5.9	9.4	6.6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209	22.6	19.6 ▽	34.8	8.9 ▲	10.6	3.5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45	17.7	25.3	36.8	5.4	8.4	6.4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223	12.5 ▽	30.6	42.9 ▲	4.4	4.2 ▽	5.5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144	15.7	32.9 ▲	35.7	5.6	5.6	4.4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73	14.3	24.6	45.8	1.0	6.2	8.1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56	20.0	29.4	37.0	4.7	5.5	3.4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37	14.3	25.9	42.8	0.0	9.1	7.9
직업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17	13.3	18.2	22.9	14.6	7.3	23.7
	월평균1,000만원이상	33	21.3	36.6	22.6	10.4	6.7	2.5
	농/임/어/축산	16	19.3	11.6	22.9	5.3	7.4	33.5
	자영업	101	13.7	24.0	42.5	5.4	7.7	6.6
	블루칼라	174	18.0	23.0	34.5	7.9	11.5 ▲	5.2
	화이트칼라	466	18.2	28.9 ▲	34.0	5.7	8.5	4.8
	공무원/군인	30	11.6	24.0	48.9	6.4	1.3	7.8
	전업주부	217	16.6	25.2	42.6	4.5	5.6	5.5
	학생	74	19.1	20.1	48.7 ▲	6.3	1.6 ▽	4.1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무직/기타	130	24.0	25.0	30.5	4.7	8.3	7.4
	알고 있다	395	13.8 ▽	28.4	37.5	6.0	6.3	7.9 ▲
위험경고 확인 여부	모른다	813	20.1 ▲	24.3	36.8	5.6	8.4	4.8 ▽
	확인한다	222	13.4 ▽	19.5 ▽	42.5	7.8	6.5	10.4 ▲
	확인하지 않는다	147	12.5	41.0 ▲	32.6	3.8	6.5	3.6
책임보험상품 선택 여부	선호한다	742	12.9 ▽	26.9	39.9 ▲	5.6	6.7	8.0 ▲
	선호하지 않는다	50	17.9	24.9	18.7 ▽	12.9 ▲	15.9 ▲	9.7
	상관없다	416	27.3 ▲	23.5	34.2	5.0	8.6	1.4 ▽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81	17.6	25.4	37.3	5.6	7.9	6.2
	반대	127	21.9	27.9	34.7	6.8	6.0	2.8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76	17.5	24.9	37.9	5.1 ▽	8.3 ▲	6.4 ▲
	반대	132	22.6	31.9	30.2	10.9 ▲	3.2 ▽	1.2 ▽

〈부록 표 II-33〉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찬반

주요 분야별		사례수	찬성	반대
전체		1,208	89.5	10.5
성별	남성	600	88.3	11.7
	여성	608	90.7	9.3
연령	20대 이하	193	88.5	11.5
	30대	220	89.2	10.8
	40대	252	90.1	9.9
	50대	246	88.7	11.3
	60세 이상	296	90.5	9.5
최종학력	중졸 이하	30	69.5 ▽	30.5 ▲
	고졸	322	87.4	12.6
	대졸	740	90.6	9.4
	대학원졸 이상	116	93.4	6.6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599	88.6	11.4
	중소도시	519	91.1	8.9
	읍면부	90	85.5	14.5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44	82.6	17.4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26	86.1	13.9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209	89.6	10.4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45	90.6	9.4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223	88.5	11.5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144	90.1	9.9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73	92.5	7.5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56	93.1	6.9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37	84.7	15.3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17	100.0	0.0
직업	월평균1,000만원이상	33	93.8	6.2
	농/임/어/축산	16	92.6	7.4
	자영업	101	90.5	9.5
	블루칼라	174	88.3	11.7
	화이트칼라	466	91.2	8.8
	공무원/군인	30	84.6	15.4
	전업주부	217	87.7	12.3
	학생	74	82.8	17.2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무직/기타	130	91.4	8.6
	알고 있다	395	91.2	8.8
위험경고 확인 여부	모른다	813	88.7	11.3
	확인한다	222	91.4	8.6
	확인하지 않는다	147	90.4	9.6
책임보험상품 선호 여부	선호한다	742	92.3 ▲	7.7 ▽
	선호하지 않는다	50	74.6 ▽	25.4 ▲
	상관없다	416	86.2 ▽	13.8 ▲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81	100.0 ▲	0.0 ▽
	반대	127	0.0 ▽	100.0 ▲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76	90.9 ▲	9.1 ▽
	반대	132	77.6 ▽	22.4 ▲

〈부록 표 Ⅱ-34〉 안전사고위험 가능성 큰 제조물의 보험 가입 의무화 찬반

주요 분야별		사례수	찬성	반대
전체		1,208	89.1	10.9
성별	남성	600	88.2	11.8
	여성	608	89.9	10.1
연령	20대 이하	193	89.1	10.9
	30대	220	88.9	11.1
	40대	252	86.9	13.1
	50대	246	87.0	13.0
	60세 이상	296	92.8 ▲	7.2 ▽
최종학력	중졸 이하	30	70.8 ▽	29.2 ▲
	고졸	322	90.1	9.9
	대졸	740	89.3	10.7
	대학원졸 이상	116	89.7	10.3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599	87.5	12.5
	중소도시	519	91.4 ▲	8.6 ▽
	읍면부	90	85.9	14.1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44	86.7	13.3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26	85.2	14.8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209	89.3	10.7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45	90.0	10.0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223	92.0	8.0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144	89.5	10.5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73	84.5	15.5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56	87.4	12.6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37	94.3	5.7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17	91.0	9.0
직업	월평균1,000만원이상	33	82.0	18.0
	농/임/어/축산	16	81.0	19.0
	자영업	101	91.3	8.7
	블루칼라	174	87.7	12.3
	화이트칼라	466	87.2	12.8
	공무원/군인	30	94.9	5.1
	전업주부	217	89.7	10.3
	학생	74	88.5	11.5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무직/기타	130	94.7 ▲	5.3 ▽
	알고 있다	395	88.7	11.3
위험경고 확인 여부	모른다	813	89.2	10.8
	확인한다	222	88.4	11.6
	확인하지 않는다	147	89.5	10.5
책임보험상품 선호 여부	선호한다	742	89.9	10.1
	선호하지 않는다	50	74.5 ▽	25.5 ▲
	상관없다	416	89.2	10.8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81	90.5 ▲	9.5 ▽
	반대	127	76.7 ▽	23.3 ▲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76	100.0 ▲	0.0 ▽
	반대	132	0.0 ▽	100.0 ▲

〈부록 표 II -35〉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의 소비자 권익보호와 제조물의
안전향상에 미칠 도움 정도

주요 분야별		사례수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됨	보통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도움되지 않음
전체		1,208	33.6	54.7	88.3	10.1	1.5	0.2	1.6
성별	남성	600	35.5	53.2	88.8	10.0	0.9	0.3	1.3
	여성	608	31.6	56.2	87.8	10.2	2.0	0.0	2.0
연령	20대 이하	193	23.0 ▽	60.8	83.8 ▽	15.0 ▲	1.3	0.0	1.3
	30대	220	28.6	52.3	80.8 ▽	17.6 ▲	1.5	0.0	1.5
	40대	252	35.3	55.4	90.7	6.9	2.5	0.0	2.5
	50대	246	36.0	55.6	91.6	7.6	0.0 ▽	0.8 ▲	0.8
	60세 이상	296	40.6 ▲	51.2	91.9 ▲	6.1 ▽	2.0	0.0	2.0
최종학력	중졸 이하	30	15.5 ▽	51.3	66.8 ▽	30.1 ▲	0.0	3.1 ▲	3.1
	고졸	322	31.7	55.4	87.1	10.4	2.6	0.0	2.6
	대졸	740	34.3	54.9	89.2	9.3	1.3	0.1	1.4
	대학원졸 이상	116	38.5	52.4	91.0	9.0	0.0	0.0	0.0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599	35.7	52.5	88.2	10.1	1.5	0.2	1.7
	중소도시	519	32.2	56.7	89.0	10.2	0.8	0.0	0.8
	읍면부	90	26.9	57.7	84.6	9.1	5.2 ▲	1.0 ▲	6.3 ▲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44	29.3	46.5	75.8 ▽	22.5 ▲	1.7	0.0	1.7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26	28.5	49.9	78.4 ▽	16.2 ▲	4.7 ▲	0.7	5.4 ▲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209	29.8	55.3	85.1	12.3	2.6	0.0	2.6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45	31.1	55.6	86.7	12.1	1.2	0.0	1.2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223	35.3	57.4	92.7 ▲	6.3 ▽	1.1	0.0	1.1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144	35.3	56.0	91.3	8.1	0.0	0.7	0.7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73	35.0	62.5	97.4 ▲	2.6 ▽	0.0	0.0	0.0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56	42.8	51.8	94.6	5.4	0.0	0.0	0.0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37	47.5	43.7	91.2	8.8	0.0	0.0	0.0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17	39.3	42.5	81.8	14.6	3.6	0.0	3.6
직업	월평균1,000만원이상	33	43.8	56.2	100.0 ▲	0.0	0.0	0.0	0.0
	농/임/어/축산	16	41.5	36.1	77.6	13.2	9.2	0.0	9.2
	자영업	101	39.2	48.9	88.1	10.0	1.9	0.0	1.9
	블루칼라	174	36.5	50.3	86.9	10.9	1.7	0.5	2.2
	화이트칼라	466	31.9	56.5	88.3	10.5	1.0	0.2	1.2
	공무원/군인	30	51.0 ▲	49.0	100.0 ▲	0.0	0.0	0.0	0.0
	전업주부	217	29.5	60.7 ▲	90.3	8.0	1.8	0.0	1.8
	학생	74	24.3	54.9	79.3 ▽	17.5 ▲	3.3	0.0	3.3
	무직/기타	130	38.2	52.3	90.4	8.8	0.8	0.0	0.8
	제조물 책임보험 인지 여부	395	39.4 ▲	51.8	91.2 ▲	7.9	0.8	0.0	0.8
제조물 책임보험 인지 여부	모른다	813	30.7 ▽	56.1	86.8 ▽	11.1	1.8	0.2	2.0
	확인한다	222	42.6 ▲	50.4	93.0 ▲	6.5 ▽	0.5	0.0	0.5
	확인하지 않는다	147	36.7	54.1	90.7	8.8	0.5	0.0	0.5
	선택한다	742	43.4 ▲	50.1 ▽	93.6 ▲	5.8 ▽	0.7 ▽	0.0	0.7 ▽
선택 여부	선택하지 않는다	50	4.8 ▽	59.2	64.0 ▽	23.0 ▲	11.2 ▲	1.9 ▲	13.0 ▲
	상관없다	416	19.5 ▽	62.3 ▲	81.7 ▽	16.3 ▲	1.8	0.2	2.0
	찬성	1,081	36.8 ▲	53.9	90.7 ▲	8.7 ▽	0.6 ▽	0.0 ▽	0.6 ▽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반대	127	5.8 ▽	61.7	67.5 ▽	21.6 ▲	9.3 ▲	1.5 ▲	10.8 ▲
	찬성	1,076	33.4	56.5 ▲	89.9 ▲	9.3 ▽	0.8 ▽	0.0 ▽	0.8 ▽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반대	132	34.8	40.2 ▽	75.0 ▽	16.4 ▲	7.2 ▲	1.4 ▲	8.6 ▲
	찬성	1,076	33.4	56.5 ▲	89.9 ▲	9.3 ▽	0.8 ▽	0.0 ▽	0.8 ▽

〈부록 표 II -36〉 피해자의 제조업자의 보험회사 손해배상금 직접 청구 인지도

주요 분야별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		1,208	23.9	76.1
성별	남성	600	24.1	75.9
	여성	608	23.6	76.4
연령	20대 이하	193	16.2 ▽	83.8 ▲
	30대	220	20.3	79.7
	40대	252	23.2	76.8
	50대	246	25.8	74.2
	60세 이상	296	30.4 ▲	69.6 ▽
최종학력	중졸 이하	30	21.0	79.0
	고졸	322	22.1	77.9
	대졸	740	23.0	77.0
	대학원졸 이상	116	34.6 ▲	65.4 ▽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599	25.7	74.3
	중소도시	519	22.3	77.7
	읍면부	90	20.8	79.2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44	25.8	74.2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26	16.2 ▽	83.8 ▲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209	16.9 ▽	83.1 ▲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45	27.1	72.9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223	26.2	73.8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144	20.7	79.3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73	31.5	68.5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56	32.9	67.1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37	34.0	66.0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17	23.5	76.5
직업	월평균1,000만원이상	33	24.3	75.7
	농/임/어/축산	16	49.4	50.6
	자영업	101	27.0	73.0
	블루칼라	174	24.2	75.8
	화이트칼라	466	23.0	77.0
	공무원/군인	30	31.5	68.5
	전업주부	217	24.8	75.2
	학생	74	19.5	80.5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무직/기타	130	19.9	80.1
	알고 있다	395	39.9 ▲	60.1 ▽
위험경고 확인 여부	모른다	813	16.0 ▽	84.0 ▲
	확인한다	222	53.1 ▲	46.9 ▽
	확인하지 않는다	147	24.5	75.5
책임보험상품 선호 여부	선호한다	742	29.0 ▲	71.0 ▽
	선호하지 않는다	50	37.3 ▲	62.7 ▽
	상관없다	416	13.0 ▽	87.0 ▲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81	24.7 ▲	75.3 ▽
	반대	127	16.7 ▽	83.3 ▲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76	24.3	75.7
	반대	132	19.9	80.1

〈부록 표 II -37〉 제조물배상책임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의향

주요 분야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1,208	91.2	8.8
성별	남성	600	90.9	9.1
	여성	608	91.5	8.5
연령	20대 이하	193	90.1	9.9
	30대	220	89.2	10.8
	40대	252	91.8	8.2
	50대	246	90.6	9.4
	60세 이상	296	93.3	6.7
최종학력	중졸이하	30	79.3 ▽	20.7 ▲
	고졸	322	92.3	7.7
	대졸	740	90.6	9.4
	대학원졸 이상	116	94.5	5.5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599	91.2	8.8
	중소도시	519	92.0	8.0
	읍면부	90	86.0	14.0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44	84.6	15.4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26	86.0 ▽	14.0 ▲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209	88.8	11.2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45	92.1	7.9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223	94.6 ▲	5.4 ▽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144	92.0	8.0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73	90.2	9.8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56	93.6	6.4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37	93.6	6.4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17	92.7	7.3
직업	월평균1,000만원이상	33	94.2	5.8
	농/임/어/축산	16	84.1	15.9
	자영업	101	95.5	4.5
	블루칼라	174	91.6	8.4
	화이트칼라	466	88.8 ▽	11.2 ▲
	공무원/군인	30	100.0	0.0
	전업주부	217	93.1	6.9
	학생	74	92.6	7.4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무직/기타	130	90.4	9.6
	알고 있다	395	91.4	8.6
위험경고 확인 여부	모른다	813	91.1	8.9
	확인한다	222	94.9 ▲	5.1 ▽
	확인하지 않는다	147	88.3	11.7
책임보험상품 선호 여부	선호한다	742	95.5 ▲	4.5 ▽
	선호하지 않는다	50	58.8 ▽	41.2 ▲
	상관없다	416	87.4 ▽	12.6 ▲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81	92.4 ▲	7.6 ▽
	반대	127	80.3 ▽	19.7 ▲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찬성	1,076	92.1 ▲	7.9 ▽
	반대	132	83.5 ▽	16.5 ▲

〈부록 표 Ⅱ-38〉 징벌적 손해배상금제도 도입 시 배상금 배상 주체

주요 분야별		사례수	제조물의 제조자(사)	제조자(사)가 책임보험을 가입한 보험사
전체		1,208	47.5	52.5
성별	남성	600	50.6 ▲	49.4 ▼
	여성	608	44.6 ▼	55.4 ▲
연령	20대 이하	193	52.0	48.0
	30대	220	52.9	47.1
	40대	252	46.3	53.7
	50대	246	44.9	55.1
	60세 이상	296	44.0	56.0
최종학력	중졸 이하	30	35.9	64.1
	고졸	322	48.2	51.8
	대졸	740	47.7	52.3
	대학원졸 이상	116	47.9	52.1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599	49.8	50.2
	중소도시	519	45.7	54.3
	읍면부	90	42.9	57.1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44	52.8	47.2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126	48.4	51.6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209	45.1	54.9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245	48.1	51.9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223	45.7	54.3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144	51.5	48.5
	월평균600만원~700만원미만	73	50.5	49.5
	월평균700만원~800만원미만	56	40.2	59.8
	월평균800만원~900만원미만	37	33.3	66.7
	월평균900만원~1,000만원미만	17	56.6	43.4
직업	월평균1,000만원이상	33	61.4	38.6
	농/임/어/축산	16	65.8	34.2
	자영업	101	41.8	58.2
	블루칼라	174	50.7	49.3
	화이트칼라	466	49.0	51.0
	공무원/군인	30	52.2	47.8
	전업주부	217	39.4 ▼	60.6 ▲
	학생	74	45.2	54.8
제조물책임법 인지 여부	무직/기타	130	53.9	46.1
	알고 있다	395	48.0	52.0
위험경고 확인 여부	모른다	813	47.3	52.7
	확인한다	222	51.6	48.4
책임보험상품 선호 여부	확인하지 않는다	147	42.0	58.0
	선호한다	742	50.2 ▲	49.8 ▼
	선호하지 않는다	50	43.2	56.8
전 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상관없다	416	43.3 ▼	56.7 ▲
	찬성	1,081	47.8	52.2
위험제조물 보험의무화 찬반 여부	반대	127	45.0	55.0
	찬성	1,076	46.6 ▼	53.4 ▲
	반대	132	55.6	44.4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 · 윤성훈 · 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 · 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 · 강성호 ·
 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 · 최장훈 · 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 · 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 이해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 장동식 ·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 이경희 ·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 ·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 이창우 ·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 ·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 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이태열 · 신종협 · 황진태 · 유진아 · 김세환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 · 이민환 · 유경원 · 최영목 · 최형선 · 최 원 · 이경아 ·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 김경환 ·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황진태 · 변혜원 · 이경희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 변혜원 ·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김대환 · 이경희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 안철경 · 변혜원 · 최영목 · 최형선 · 김경환 · 이상우 · 박정희 ·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 김경환 ·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 · 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 류건식 · 오영수 · 조용운 · 진 익 · 유진아 ·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황진태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 이기형 ·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 변혜원 ·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 유진아 ·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 임준환 · 김해식 · 이경희 · 조영현 ·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 김대환 ·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전용식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 · 오병국 ·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 김해식 ·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전용식 · 최 원 · 김세중 ·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 강민규 · 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 김해식 · 김석영 2014.3
- 2014-3 공 · 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 강성호 · 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김석영 · 김진억 · 최 원 · 채원영 · 이아름 · 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 · 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 · 김경환 · 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 · 조재린 · 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김석영 · 김진억 · 최 원 · 채원영 · 이아름 · 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 · 정봉은 · 김유미 2016.2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 · 이정택 · 김혜란 2016.11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 한상용 2009.3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 · 유시용 · 이정아 2009.3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 최 원 2009.6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 권오경 2010.2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 김경환 2010.2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 이창우 · 이상우 2010.3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 정책연구실 · 동향분석실 2010.6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 재무연구실 2010.6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 · 장동식 · 서성민 2010.4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 · 최영목 · 김소연 · 장동식 · 서성민 2010.10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 변혜원 · 서성민 2011.1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 김소연 · 김동겸 2011.2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 황진태 2011.3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 기승도 · 권오경 2011.5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 정인영 2011.6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 황진태 · 김미화 2011.8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 김대환 · 이상우 2011.9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 류건식 · 이상우 2011.10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 전용식 ·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 · 김동겸 ·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 김석영 · 김세영 ·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 류건식 ·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 황진태 · 권용재 ·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 조용운 · 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 · 정봉은 · 황인창 · 이해은 · 김혜란 · 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 · 황인창 · 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 김진익 · 지재원 · 박정희 ·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 기승도 ·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 이상우 ·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 이정환 · 최이섭 · 정중영 ·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 · 김상수 · 김종훈 · 변귀영 · 유시용

-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 전선애 · 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 오영수 ·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 이민환 ·
윤건용 · 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 김세환 ·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
최형선 · 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 서대교 ·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 · 김해식 · 유진아 ·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 이창우 ·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 황진태 ·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 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 · 김해식 ·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 변혜원 · 이승준 ·
김경환 ·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 전용식 · 윤상호 · 기승도 ·
이상우 · 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 황진태 · 변혜원 · 정원석 ·

- 박선영 · 이상우 · 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 황진태 ·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 변혜원 ·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 ·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 강성호 ·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 박선영 · 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 · 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 · 윤성훈 · 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 · 오승연 · 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 · 강민규 · 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 변혜원 · 정원석 · 박선영 · 오승연 · 이상우 · 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 · 김세중 · 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 · 조영현 · 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 · 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 조재린 · 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최창희 · 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 · 황진태 · 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 · 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 · 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 · 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 · 김세중 · 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 · 송윤아 · 채원영 2016.4
- 2016-5 금융 · 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 · 임 준 · 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 · 황인창 · 이정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 · 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 · 김해식 · 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 · 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 · 김혜란 2016.9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 · 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 · 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 · 정원석 · 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 · 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 · 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 · 박춘원 · 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 · 박선영 · 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 · 김미화 2015.5
-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 · 김혜란 2015.12

■ 연차보고서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 영문발간물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7
제 6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 이상우 ·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 ·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 전용식 · 전성주 ·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 윤성훈

-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 조재린 ·
황진태 · 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 · 황인창 · 이해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 · 류건식 ·
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 · 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 · 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 · 이태열 2017.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 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9113, 9080 팩스 : (02) 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자약력

이기형

국민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kihlee@kiri.or.kr)

이규성

한양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1401ho@kiri.or.kr)

연구보고서 2017-12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발행일 2017년 9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02) 3775-9000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63-3 94320

979-11-85691-50-3 (세트)

정가 10,000원